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金璟培

教育自治制度에 대한 初等教師의 認識과
役割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Perception and Role of the Primary
School Teacher in the Educational Autonomy System

1995年2月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教育行政學科

教育行政專攻

張

榮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金璟培

教育自治制度에 대한 初等教師의 認識과
役割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Perception and Role of the Primary
School Teacher in the Educational Autonomy System

위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1994年 11月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教育行政學科

教育行政專攻

張

榮


張 榮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4年 12 月 日

審查 委員長

曹 英 煥 

審 查 委 員

李 溶 傑 

審 查 委 員

金 際 培 

目 次

| | |
|----------------------------------|----|
| I. 序 論 ----- | 1 |
| 1. 研究의 必要性 ----- | 1 |
| 2. 研究의 目的 ----- | 2 |
| 3. 研究의 內容 ----- | 2 |
| 4. 研究의 制限點 ----- | 3 |
| II. 理論的 背景 ----- | 4 |
| 1. 教育自治制度의 概念 ----- | 4 |
| 2. 教育自治制度의 原理 ----- | 5 |
| 3. 外國의 教育自治制度의 比較 分析 ----- | 8 |
| 4. 現行 教育自治制度의 分析 ----- | 34 |
| 5. 外國과 韓國 교육자치제도의 比較 分析 要約 ----- | 39 |
| 6. 先行研究의 考察 ----- | 42 |
| III. 研究의 方法 및 節次 ----- | 46 |
| 1. 研究의 方法 ----- | 46 |
| 2. 研究對象 및 標集 ----- | 46 |
| 3. 道具 ----- | 46 |

| | |
|----------------------------------|-----|
| 4. 資料의 處理 ----- | 47 |
| IV. 結果 및 解釋 ----- | 48 |
| 1. 教育自治制度의 實施에 대한 初等敎師의 反應 ----- | 48 |
| 2. 教育自治制度 研修의 實態와 方向 ----- | 55 |
| 3. 教育自治制度에 대한 初等敎師들의 認識程度 ----- | 60 |
| 4. 教育自治制度의 實施에 따른 初等敎師의 참여 ----- | 76 |
| 5. 教育自治制度의 實施에 따른 初等敎師의 役割 ----- | 77 |
| 6. 住民參與의 範圍 ----- | 83 |
| 7. 單位學校 自治에 대한 見解 ----- | 85 |
| 8. 教育自治制度의 展望 ----- | 86 |
| V. 要約 및 結論 ----- | 88 |
| 1. 要約 ----- | 88 |
| 2. 結論 ----- | 92 |
| 3. 提言 ----- | 94 |
| 參考文獻 ----- | 95 |
| 附錄 ----- | 97 |
| 國文要約 ----- | 105 |
| 英文抄錄 ----- | 108 |

表 目 次

| | |
|--|----|
| 〈표 1〉 미국 초. 중등학교 교육비 부담의 구성비 ----- | 15 |
| 〈표 2〉 프랑스의 지방교육행정기구 ----- | 20 |
| 〈표 3〉 일본의 지방교육행정의 단위 ----- | 26 |
| 〈표 4〉 일본의 지방교육행정의 기초단위 ----- | 27 |
| 〈표 5〉 외국의 주요 4개국과 한국교육자치제도의 비교 분석표 ----- | 40 |
| 〈표 6〉 설문지의 배부 및 회수 현황 ----- | 46 |
| 〈표 7〉 설문지의 영역별 내용 구성 ----- | 47 |
| 〈표 8〉 교육자치제의 실시 이후 교육현장에서의 변화 여부 ----- | 49 |
| 〈표 9〉 교육자치제의 실시를 알게된 동기 ----- | 50 |
| 〈표10〉 교육자치제의 실시 구역 범위 ----- | 52 |
| 〈표11〉 교육자치제에서 강조되어야 할 사항 ----- | 53 |
| 〈표12〉 교육자치제에 대한 견해 ----- | 55 |
| 〈표13〉 교육자치제의 실시 이후 관련 연수 실태 ----- | 56 |
| 〈표14〉 교육자치제에 대한 연수 ----- | 58 |
| 〈표15〉 교육자치제에 대한 중점적 연수내용 ----- | 59 |
| 〈표16〉 교육위원 성격에 대한 인식 ----- | 61 |
| 〈표17〉 예. 결산등 일부사항의 지방의회에서의 최종 의결에 대한 의견 | 62 |
| 〈표18〉 교육위원 후보의 자격요건에 대한 견해 ----- | 64 |
| 〈표19〉 교육위원회 활동에 대한 주민 및 교육현장에서의 인식정도 -- | 65 |
| 〈표20〉 교위의 주민청원 처리기능에 대한 주민반응에 대한 견해 ---- | 66 |
| 〈표21〉 교육위원 선출에 있어서 이중 간선제에 대한 인식 ----- | 68 |

| | |
|---|----|
| <표22> 교육위원회에 대한 시.도의회 감사 조사 여부 ----- | 69 |
| <표23> 교육감의 선출방법에 관한 의견 ----- | 71 |
| <표24> 부교육감제도에 대한 의견 ----- | 72 |
| <표25> 교위와 지방의회의 이중적 구조로 재정지원이 지연되는 사례 | 74 |
| <표26> 교육재정 조달재원으로 지방교육세 신설에 대한 의견 ----- | 75 |
| <표27> 교육자치제의 실시에 따른 교사 참여 여부 ----- | 76 |
| <표28> 교육자치제의 실시에 따른 교사의 역할에 대한 의견 ----- | 78 |
| <표29> 교사의 역할이 큰 이유에 대한 의견 ----- | 79 |
| <표30> 교사의 역할이 별로 없다는 이유 ----- | 81 |
| <표31> 교사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 순위 ----- | 82 |
| <표32> 교육자치제의 실시에 따른 주민참여 범위 ----- | 84 |
| <표33> 단위학교 자치에 대한 의견 ----- | 85 |
| <표34> 교육자치제의 실시에 따른 앞으로의 전망 ----- | 87 |

I. 緒 論

1. 研究의 必要性

教育自治制란 일반적으로 教育에 관한 行政을 教育기관이 자치적으로 행하는 制度이다. 다시 말하면 教育자치제는 教育 본래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教育의 自主性을 보장하고 教育행정 民主化를 실현하며 나아가서 專門性과 特殊性을 살리기 위한 것으로 民主주의를 國家 理念으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教育제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教育자치제도는 1949년에 제정된 教育法에 관련 조항이 설정됨으로써 法制化 되었고, 1952년에 그 역사적인 施行을 보게 되었으나 5.16 군사 쿠데타 이후 1980년대 후반까지 중단상태에 있어왔다.

1988년 4월 6일 教育법을 개정하여 시·도와 시·군까지 확대 실시하도록 하고 이에 근거하여 1991년 3월 8일 지방자치제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고 동시행령이 1991년 4월 23일 공포되어 教育·학예에 관한 사무를 199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하므로써 教育자치제는 명실공히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教育자치제는 教育行政의 民主化와 국민 教育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堡壘가 되기 때문에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教育자치제도에 敏感해야 할 教師들의 반응이 微弱하며 受動的인 態度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재의 實情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教育의 主體인 교사들이 현행 教育자치제도를 어떻게 認識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은 큰 意義를 갖는다.

지금까지 教育자치제도에 관한 연구는 제도상의 問題點과 그 개선 方案에

관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교육자치제도에 대한 교사의 認識度에 관한 연구는 별로 없었다. 또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教育行政家나 專門家를 위주로 이루어 졌으며 一線에서 직접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이 前面에 浮刻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었다. 따라서 교육의 主體인 現場 教師들의 교육자치제도에 대한 理解의 程度 및 見解 등을 調査 分析하여 보다 나은 교육자치제도의 실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方案을 모색할 必要性이 있다.

2. 研究의 目的

교육자치제의 原理에 비추어 우리나라 교육자치제도의 特徵을 알아보고, 현행 교육자치제도에 대한 初等 教師의 意見과 認識 程度를 調査 한다.

구체적인 研究의 目的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자치제도에 관련된 文獻들을 分析하여 교육자치제도의 成立 過程과 法制的 측면을 考察한다

둘째, 교육자치제도에 대한 初等 教師의 認識 程度와 見解를 조사, 分析한다.

셋째, 교육자치제도의 바람직한 發展에 一助할 수 있는 資料를 제공한다.

3. 研究의 內容

본 研究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 내용을 設定하였다.

첫째, 교육자치제도의 概念과 原理를 살펴보고 외국의 교육자치제도와 先行 研究를 比較 分析해 본다.

둘째, 교육자치제도의 실시에 대한 初等 教師의 關心과 認識 程度는 어떠한지를 알아본다.

셋째, 교육자치제도에 대한 關心과 認識의 정도를 初等 敎師들의 背景 變因(성별, 연령별, 직위별, 경력별, 설립별, 근무지별)에 따라 알아본다.

넷째, 한국 교육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한 초등 교사의 認識과 役割을 높일 수 있는 方案을 모색한다.

4. 研究의 制限點

본 연구는 교육자치제도에 대한 理論을 考察한 다음 설문지에 의하여 초등 교사들의 意見을 調査 分析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研究의 制限을 두었다.

첫째, 본 연구의 調査 對象은 서울 및 경기도 지역의 초등 교사를 조사 대상으로 局限하였다.

둘째, 교육자치제도에 대해서 초등 교사의 認識과 役割로 범위를 局限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설문지에만 依存하였기 때문에 설문지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分析이 어렵다.

II. 理論的 背景

1. 教育自治制의 概念

교육자치제란 교육행정이 일반 행정으로부터 分離 獨立됨과 동시에 지방 교육이 중앙 교육으로부터 분리 독립됨을 뜻하나 우리가 보통 말하는 교육 자치제는 후자인 지방교육자치제를 의미한다. 지방교육자치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의 自主性을 보장하고 교육행정의 民主化를 실현하며 나아가서 교육행정의 專門性과 特殊性을 살리기 위해서이다.¹⁾

孫在植은 지방자치가 일정 지역을 단위로 주민들의 意思에 따라 구성된 단체에 의해서 그 지역의 政治와 行政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국가 또는 중앙 정부로부터 통치권과 행정 기능이 配分 委任되며, 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주민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듯이²⁾ 교육자치 역시 같은 原理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교육자치는 일정 구역인 教育區를 단위로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구성된 교육자치단체에 의하여 그 教育區의 教育, 學藝에 관한 사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교육자치란 ①일정한 지역인 教育區와 그 教育區內의 주민이 선출한 교육자치단체(公法人)가 ②教育區內의 教育 學藝에 관한 事務를 관장하여 ③ 스스로의 機能과 責任하에 즉 자치권을 가지며(독자적 기능과 중앙감독의 제한) ④주민이 부담한 租稅를 바탕으로 한 자주적 財源을 가지고(교육재정의 자주성과 독자적 예산회계) ⑤주민이 선정한 자신의 機關에 의하여 (독자적인 교육행정기

1) 조병효, '한국교육자치제도연구', (서울: 교육과학사, 1988), p. 39.

2) 손재식, '현대지방행정론', (서울: 박영사, 1983) pp. 27-28.

관, 의결기관, 자주조직권) ⑥교육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주민의 교육행정 참여와 교육행정 통제)執行하고 實現하는 것을 말한다. 3)

따라서 교육자치제도란 교육행정에 있어서 地方分權主義를 원칙으로 하고 교육행정은 일반 행정으로부터 分離 獨立시켜 教育 學藝에 관한 事務의 자치권을 가지고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와 교육정책의 집행기관인 教育監制를 설치하고 자주적인 財政과 人事를 통하여 주민의 참여와 전문적인 교육행정을 통하여 교육의 自主性, 專門性, 政治的 中立性을 保障하려는 제도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고찰한 교육자치제의 概念을 통해 볼 때,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질적인 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교육행정의 일반 행정으로부터의 분리 및 지방 교육행정의 중앙 교육행정으로부터의 독립을 보장하는 自主性 둘째, 지방 주민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해 그 지역의 교육을 행해 나가는 民主性 셋째, 교육 활동에서 전문가인 교육자의 판단과 결정이 존중되는 교육의 自律性을 확보하는 專門性 넷째,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운영되어야 하며 政治的 派黨的 기타 개인적 偏見의 宣傳을 위한 방편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政治的 中立性 다섯째, 중앙 정부의 일방적인 統制를 止揚하고 지역의 자율적인 교육행정을 실시하는 지역 특수성을 들 수 있다.

2. 教育自治制度의 原理

교육자치제도의 概念은 국가별로 혹은 論者에 따라서도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우리 나라에서 교육자치제도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다

3)서정화 외, '교육행정제도개선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80), pp. 74-75.

4)조병효, 전게서, p. 41.

섯 가지 基本 原理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첫째, 地方 分權의 原理이다.

교육행정에 있어 중앙 정부의 劃一的인 統制와 處理를 止揚하고 지방의 실정에 附屬되는 교육행정을 이루려 하는 것이다. 지역의 특수성을 살림으로써 궁극적으로 多樣性을 土臺로 한 통일성을 추구하고 지역 주민이 교육 활동에 自律的 自治的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원리이다.⁵⁾ 다시 말하면 지방의 특수성을 살림으로써 다양성을 토대로 하는 統一性(Diversity in unity)을 指向할뿐만 아니라 지방 주민들의 교육 활동을 통한 自律 自治 정신을 培養하려는데 그 뜻이 있다.⁶⁾

둘째, 住民 參與의 原理이다.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그들의 대표를 통하여 교육정책을 심의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민주국가에 있어서 대의정치와 이념과 맥락을 같이한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교육자치단체는 주민이 직접 선거를 한다던가 또는 公選된 기관에 의하여 선임되는 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⁷⁾

셋째, 教育行政 獨立의 原理이다.

교육활동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그 자율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 독립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행정이 일반행정의 한 부분으로 예속되어 있는 한 교육행정의 독립성과 특수성을 보장받기 어렵게 된다. 교육은 본질적으로 가치 창조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외부

5)이찬교, '교육자치제도의 변천과 발달', 「한국방송통신대학논문집제14집」(1992), p. 477.

6)김종철, '교육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1988), p. 174.

7)김보현 외,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법문사, 1982), p. 266.

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를 거부한다.8) 이와 같은 특수성 때문에 헌법 제 31조 제 4항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법 제 5조에서는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기하여 운영 실시되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 파당적 기타 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넷째, 專門的 經營의 原理이다.

이는 교육 활동의 本質과 特殊性을 理解하고 교육행정 기술면의 訓練을 쌓은 전문가의 손에 의하여 교육행정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9)

즉 교육 활동의 特殊性에 대한 理解를 가지고 복잡한 교육행정 기술면의 훈련을 쌓음으로써 교육 활동을 효과적으로 支援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도 力量을 가진 인사들에 의하여 교육행정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自主的 財政의 原理이다.

지방자치제의 실행에 있어서 그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의 하나가 바로 지방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현행 지방 교육재정의 자립도는 서울특별시와 직할시를 제외하고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90년 현재 교육비 특별회계의 수입 중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국고에 의해 지원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부담금으로 지방교육재정 총규모의 약 73%를 차지하고 자체수입은 사용료와 수수료 등으로 약 13%에 지나지 않고 있어 아직도 중앙정부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10)

以上の 원리에 비추어 볼 때 교육자치제도는 교육행정에 있어서 地方分權의 原則下에 교육에 관한 議決機關으로서의 교육위원회와 교육위원회의 사

8) 윤정일 외, '한국의 교육정책', (서울: 교육과학사, 1991), p. 436.

9) 김종철, '교육행정의 이론과 실제', 3판(서울: 교육과학사, 1983), pp. 174-175.

10) 이득기, '교육행정과 교육경영' (서울: 집문당, 1994), p. 478.

무장격으로 또는 교육정책의 집행기관으로서의 教育監制를 두어 민주적 통제와 전문적 지도 사이에 調和와 均衡을 이루며 人事와 財政을 비롯하여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 독립시킴으로써 행정의 制度 組織面에서 교육의 自主性을 보장하려는 制度이다¹¹⁾

3. 外國의 教育自治制度 比較 分析

한국교육자치제도의 특징을 보다 분명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Cramer와 Browne이 구분한 유형에 따라 세계 주요 국가중 교육행정의 성격이 뚜렷하게 다른 미국(地方分權形), 영국(中央과 지방의 責任分擔形), 프랑스(中央集權形)¹²⁾ 및 일본(地方分權形 --> 中央과 地方의 責任分擔形)을 선정하여 비교 比較하기로 한다.

1) 美國의 教育自治制度

(1) 地方分權

(가) 교육자치단체의 규모

州의 입법부에 의해서 교육행정의 권한을 부여받은 州교육위원회(State Board of Education)가 교육제도를 직접 운영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나 州는 학교, 기타 교육기관을 설치, 유지, 관리, 운영하는 교육의 직접적인 통제권을 각 教育區(School district)에 위임하고 있다. 教育區는 대체로 基礎教育區

11) 이형행, '신교육행정론', (서울: 문음사, 1986), p. 48.

12) John F. Cramer and George S. Borwne, contemporary Education: A comparative Study of National Systems, Second Edition (New York: Harcourt, Brace and World, Inc., 1965), pp. 35-37.

(asic unit of school administration)와 中間教育區(intermediate unit of school administration)로 대별된다. 前者는 말단 교육행정구를 말하며 後者는 州와 基礎教育區와 中間教育區에서 州의 감독하에 소관지구내의 기초교육구를 지휘. 감독하는 行政區를 말한다. 이들을 詳述하면 다음과 같다.

① 基礎教育區

기초교육구는 ㉠市교육구 ㉡郡교육구 ㉢邑.面교육구와 ㉣普通교육구로 구분된다. 이와 같이 교육구 중에는 일반 지역행정단위와 지리적 區劃이 일치되는 것도 있으나 제도적으로는 모든 교육구가 일반 지방행정단위에서 독립된 교육행정을 위한 자치단체이다.¹³⁾

② 中間教育區

중간교육구란 두 개이상의 기초교육구를 포함한 구역을 가지고 이 기초교육구에 대하여 특정의 감독. 지도를 담당하는 단위의 교육구이다. 각 州의 중간교육구는 대체로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첫째, 郡 들째, 聯合獎學區 셋째, 邑이다.

㉠ 郡 (county)

27개 州에서는 郡이 중간교육구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 주에는 郡교육장이 있고 그 중 13개 州에는 대부분의 郡에 郡교육위원회도 있다.

㉡ 聯合獎學區 (supervisory union)

연합장학구는 2개 이상의 기초학구가 組음을 형성하고 이에 약간의 管理的 기능과 指導的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 邑 (township)

소수의 州에서는 읍이 중간적 교육행정 단위가 되는 예가 있다. 그러나 이들

13) 小山俊也, '教育制度 序說', (東京: 明治大學 出版部, 1979), p. 154.

은 위에서 말한 郡 중간 교육구나 연합 장학구와 비교할 만한 것은 못된다. 14)

(나) 聯邦政府 및 州와 지방교육위원회와의 機能의 配分

① 聯邦政府

연방정부의 교육부의 기능은 ㉠교육정보의 출판 ㉡교육에 관심 있는 집단과 기구와의 협동적 작업관계 수립 ㉢교육연구추진 ㉣교육문제에 관한 지도 상담, 의견교환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15)

② 州

교육은 州의 기능이다. 그러나 州는 초등 중등학교의 설치 유지 관리의 권리를 지방교육위원회에 위임하고 지방교육위원회의 교육 계획을 감독한다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16)

③ 中間教育區

중간교육구는 두 개 이상의 기초교육을 포함하는 구역을 가지고 管内 기초학구에 대하여 감독 지도 원조를 담당하는 교육구이다. 중간교육구에는 교육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때는 교육장이 감독 지도의 책임을 담당한다. 17)

④ 基礎教育區

기초적 지방교육행정단위로서의 기초교육구에는 교육위원회와 교육장을 두고 있다. 교육구 교육위원회는 州에서 위임된 교육행정의 대부분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갖고 학교와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 유지 관리 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다.

14)유향산, '교육행정원론', (서울:동화문화사, 1978), pp. 145-147.

15)서정화외, '주요국가의 교육행정제도', (서울:한국교육개발원, 1980), p. 70.

16)조병효, 전게서, p. 106.

17)文部省, '各國の 教育行政', (東京:文部省調査局調査課, 1956), p. 67.

(2) 住民參與

(가) 州교육위원회의 조직. 운영

① 州교육위원회

미국의 州교육위원회는 州헌법과 州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州의 일반행정과는 독립하여 公敎育의 구체적 실무정책을 결정 또는 집행하는 합의제 집행기관이다.

② 지방교육위원회

敎育區교육위원회는 州法에 의해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이다. 교육위원의 수는 대개 5-7명이지만 농촌교육구에서는 3-5명의 예도 많다. 위원의 임기는 3-6년이 보통이다. 위원의 선출방법은 州교육위원과는 달리 公選制가 압도적이며 그 비율은 95% 이상에 달하고 있고 거의가 非政黨的 基盤에서의 선거제를 채용하고 있다. 選任資格은 교육구의 시민 또는 주민이어야 하고 교육에 관하여는 비전문가에 한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州교육위원의 경우와 같이 위원의 임기는 經驗의 連續性 유지를 위해 약간씩 중복되도록 배려하고 있다.¹⁸⁾

(나) 교육위원회와 교육감과의 관계

① 州교육위원회와 교육감

州교육위원회(State Board of Education)는 複數의 위원에 의해 구성된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초·중등단계의 공립학교에 관한 정책결정 및 규칙제정 등을 담당하고 州敎育監(State 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은 교육위원회의 事務長格으로서 교육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을 집행한다. 의결기관은 물론 州議會이다.¹⁹⁾

州교육감의 기능은 대체로 ㉠州교육위원회의 집행관 ㉡州교육국의 사무장

18) 上原貞夫, 'アメリカ合衆國州憲法の敎育規定', (東京: 風間書房, 1981) p. 26.

19) 조병효, 전거서, p. 109.

㉔교육에 관한 법률 규정 및 규칙의 집행장이다. 그는 州内の 교육계획, 교육정책의 개발, 교육요구의 평가, 교육목표의 설정 등에 중대한 역할을 한다. 20)

② 지방교육위원회와 교육장

교육구에는 교육위원회 및 교육장을 둔다.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민간인(Layman)으로 구성된 교육위원회에 의한 통제(Layman control)와 교육행정에 관한 전문적 학식, 경험을 갖는 전문가(expert)에 의한 전문적 경영(expert management)의 배합이 미국 지방교육행정제도의 전통적인 특색이다. 21) 州교육위원회는 州法에 의해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로서 공립학교 행정을 위한 일반 방침 결정 및 규칙 제정 등을 관장하는 의결기관이며 교육장은 의결된 사항을 구현하는 집행기관이다.

교육장의 주요기능은 교육위원회의 집행장으로서 ㉕관내 제학교의 교육계획을 지도하는 일 ㉖교직원 임명을 위한 선발 추천과 교직원의 현장 교육을 지도하는 일 ㉗교육 예산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채택후 그것을 집행하는 일 ㉘校舎의 수요를 확정하고 校舎建築計劃을 집행하는 일 ㉙교육개선을 위하여 위원회 사무국 및 지역사회의 지도자로서 봉사하는 일 등이다. 22)

(3) 教育行政의 獨立

(가) 교육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① 州單位

州헌법과 州의회는 교육행정 정책에 관한 일반적 원칙 즉 公敎育의 조직

20) Thomas J. Landers and Judith G. Myers, Essentials of School Management, (Philadelphia: W. B. Saunders, 1977), p. 60.

21) 小山俊也, 전계서, p. 155.

22) Thomas J. Landers and Judith G. Myers, op. cit., p. 110.

公教育범위와 年限의 변경, 州정부의 지방교육재정지원을 위한 방침 결정, 고등교육기관의 憲章授與 등에 관한 기본 방침에만 관여하고 교육에 관한 세부기준이나 기술적 제조건에 관해서는 주교육위원회에 위임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23)

② 教育區 單位

교육구교육위원회는 州法에 의해 설치된 교육자치단체이며 일반지방자치단체와는 별개의 법인체로서 지방교육에 관한 독립행정권을 행사하는 기초적 교육행정단위이다.

교육구교육위원회는 의결기관으로 일반자치단체의 長에 從屬할 필요없이 주를 대항하여 구역내의 교육행정을 책임지는 독립기관이다. 교육위원도 거의 주민의 선거로 선출되고 임명제를 채택하는 곳은 극히 적다.

(나) 장학행정의 조직. 운영

州교육위원회와 교육구교육위원회의 조직은 교육구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주교육위원회와 교육구교육위원회에 장학담당자(장학관, 장학사)가 배치되어 장학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즉 州의 장학담당자는 州內 교원의 연수계획, 교육자료 및 정보에 관한 교류 등이 주요한 업무이고 직접적으로 현장의 교원을 지도하는 일은 드물다. 24)

(4) 專門的 經營

(가) 교육전문직 요원의 자격요건

미국의 州행정기관은 장학담당자로서의 자격으로서 교육행정학 석사학위를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그와 같은 학위가 대체로 장학행정 경력의 행로를 위

23) 서정화외, 전게서, pp. 73-74.

24) 조병효, 전게서, pp. 112-113.

해 가장 적절한 준비가 되기 때문이다.

(나) 교육전문직 요원의 양성 및 연수체제

교육전문직요원이 되려면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육행정을 전공한 석사학위를 받아야 하며 이어서 교육행정 전문 免許狀이나 교육행정을 전공한 박사학위를 취득해야 한다. 수년간의 행정경험을 갖고 학위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더욱 뜻깊고 유익하다. 전공분야를 담당하는 기관(예컨대, 직업교육)에서 행정단위를 원하는 자는 그 전공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다음 박사과정에서의 專攻은 行政 부전공은 전문 분야 또는 전공은 전문 분야 부전공은 행정을 履修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전문직요원의 연수체제를 소개하면 공식학위를 취득하기 전이나 동시에 교육행정경력을 갖고 싶은 자는 현직 연수의 기회를 이용할 수 있다. 많은 교육구에서는 행정실습계획을 제공하여 행정분야에 결원이 생기면 훈련된 사람으로 보충한다. 이러한 계획에 선발된 교사나 장학담당자는 유능한 교장의 지도 밑에 1년간 有給으로 실습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계획은 행정기능을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는 훌륭한 현장 훈련의 기회를 마련해 준다.²⁵⁾

(5) 自主的 財政

(가) 교육재정의 확보

교육구는 教育費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교육세의 과세권을 가지며, 교육세는 재산세를 주요 稅源으로 하여 왔으나 재산세만으로는 稅源에 편중이 생겨 근년에는 차차 소득세, 기타에 稅源을 구하게 되었다.

教育區간의 재정력의 격차를 시정하기 위하여 소규모 교육구의 정리 통합

25) 조병호, 전게서, p. 115.

을 행함과 동시에 거의 모든 주가 교육구의 교육비에 대한 주의 平衡交付金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거의 모든 주가 주의 교육보조금(State school fund)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떤 형태이건 平衡交付的인 방식에 의해 배분하도록 되어 있다. 26) 소규모 교육구의 교육비의 재원은, 교육구의 자주재원에서 차차 주세에 의한 州教育平衡交付金 쪽으로 비중이 옮겨가고 있다.

참고로 미국 초. 중등학교 교육비의 부담관계는 다음의 <표1>과 같다.

<표1> 미국 초. 중등학교 교육비 부담의 구성비(1960-1977)

| 구분 \ 년도 | 1960 | 1970 | 1975 | 1976 | 1977 |
|---------|-------|-------|-------|-------|-------|
| 공. 사립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연방 | 3.9 | 7.4 | 8.7 | 8.5 | 7.8 |
| 주 | 31.1 | 34.6 | 37.1 | 37.6 | 37.9 |
| 지방 | 52.8 | 47.5 | 43.2 | 43.2 | 43.2 |
| 기타 | 12.2 | 10.5 | 11.0 | 10.7 | 11.1 |

[자료] 小山俊也, 전계서, p. 133.

(나) 교육재산의 취득, 처분권 및 예산의 편성, 집행권

교육구 예산의 편성과 승인은 교육위원회의 중요한 책임에 속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교육감과 그의 직원이 예산을 편성하고 法的으로는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을 교육위원회가 승인 거부 또는 수정한다. 그리고 그 예산을 충족하는데 필요한 세금을 징수한다. 대부분의 경우 어떤 타 기관에서 이 예산안을 재검토하는 일은 없다. 또한 교육구교육위원회는 州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구 예산을 집행할 완전한 자주권을 갖고 있다. 따라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교육위원회가 主的으로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26) 小山俊也, 전계서, p. 157.

2) 英國의 교육자치제도

(1) 地方分權

(가) 교육자치단체의 규모

영국은 '1963년 런던 자치법(London Act, 1963)'과 '1972년 지방자치법(Local Government Act, 1972)'에 의거 지방행정구획의 재편성이 이루어 졌으며 동시에 지방교육행정단위의 개혁이 이루어졌다. 교육행정단위는 일반지방행정단위를 기초로 하고 있으나 지방교육행정단위에서 非都市縣區域에 있어서는 교육을 縣의 업무로 보고 각 縣(인구 28만-143만)이 교육행정단위로 되었고, 새로이 설정된 6개의 도시 縣 구역(인구 120만-280만)에 있어서는 교육을 縣下의 都市區의 업무로 보고 각 都市區(인구 17만-110만)가 교육행정단위로 되었다.²⁷⁾

(나) 중앙정부. 지방행정당국. 교육전문직간의 機能 配分

영국 교육행정체제의 특징은 중앙정부, 지방교육당국 그리고 교육전문직간에 철저한 책임과 분담이 이루어져 있는 점이다. 중앙의 敎育科學部는 지역 교육전문위원회나 교직원종사자들에 대한 통제 역할보다는 주요 관련 교육문제에 대한 운영 또는 조정자의 역할을 하는데 있다.

(2) 住民參與

(가) 교육전문위원회의 조직. 운영

지방교육행정단위로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최고 기관으로서 참사회(Council)가 있다. 교육전문위원회는 參事會의 委任을 받아 교육에 관한 참

27) 조병호, 전게서, p. 119.

사회 권능이 일부 또는 대부분을 대행한다. 의원의 定數는 교육행정구역의 규모에 따라 다르나 縣에 있어서는 31-60명의 縣이 많고 특별시에 있어서는 21-40명이 대부분이며 그 중 參事會議員이 과반수이다. 교육위원으로서의 참사회 의원은 먼저 참사회 의원으로서 주민에 의해 선거되어야 하고 그 중에서 참사회의 연차 총회에 의해 임명된다. 참사회 의원의 任期는 3년이다. 28)

(나) 교육전문위원회와 교육감, 교육감과 학교와의 관계

영국의 교육전문위원회는 교육법에 의해 지방교육당국으로 法定되어 있는 참사회의 전문분과위원회로서 의결기관임과 동시에 집행기관이고, 교육감은 그 사무집행을 위해 설치된 교육청의 사무장으로서 교육전문위원회 사무의 집행장이다.

영국에서는 개개 學校와 교사의 역할이 교육행정의 핵심부분이다. 학교는 모조될 수 없는 그 자체의 생명을 갖고 있고 학교가 교육의 중심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이같은 시각에서 교육감은 교육과정, 학습지도요강 교수방법 등은 학교장과 교사에게 위임하며 중앙과 지방교육당국간의 협조적 동반자관계는 지방교육당국과 학교간에 있어서도 똑같이 추구되고 있다.

(3) 教育行政의 獨立

(가) 교육전문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영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장이 所管하는 후생 위생 재무 토목 등에 관한 사무는 교육 경찰 등의 사무관계와 함께 모두가 參事會의 권한이며 그 중의 각종 분과위원회가 각각 분담하여 처리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편으로는 행정위원회 방식이 철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통합되어 지방

28) 文部省, 전게서, p. 117, P. 122.

행정의 一元化를 기하고 있는 점이 特色이라 할 수 있다. 교육에 관하여 지방교육행정의 책임당국은 참사회이지만 실제의 행정의 집행은 교육전문위원회가 참사회의 위임을 받아 스스로 집행에 임하고 있다.

(나) 장학행정의 조직. 운영

지방교육행정기구로서의 지방교육당국은 參事會산하에 교육전문위원회가 있고 교육감산하에 교육청이 설치되어 있다. 교육청의 조직은 역시 지방교육당국에 따라서 구구하여 多樣性을 특징으로 하나 教育次長을 1-3명 정도 두고, 그 밑에 學校課(Schools division), 繼續教育課 등과 같이 분야별로 조직되는 부서와 개발 및 財政課(Development and finance division)을 두는 경우가 전형적인 사례이다.

(4) 專門的 經營

(가) 교육전문직 요원의 자격요건

교육감 자격을 정한 법률은 없으나 교육전문가이어야 하며 대학을 졸업한 자로 교사 교장 장학사 지방교육당국의 幹事職 경험을 가진 자가 된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현장의 교육과 교육행정가간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視學官, 장학사 등의 교육전문직은 교사 교장직을 歷任한 비교적 성공한 교직원에서 선정 보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 교육전문직 요원의 양성체제

교육전문직은 교사, 교장 등 교직원에서 발탁 기용되고 학력에 제한이 없다고는 하나 현실적으로는 대학졸업자가 임명되는 것이 通例로 되어 있다. 또한 1960년대에 와서는 대학에서의 교육행정가 양성과정이 도입되었고, 1970년대에는 25개 대학이 이와 같은 과정을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29)

(5) 自主的 財政

(가) 교육재정의 확보

영국의 최근의 교육비는 약 60%를 중앙정부가 40%를 지방당국이 부담하여 왔다. 중앙정부는 세금(수입세, 판매세 등)을 통해 세입을 조달하고 지방당국은 지방세(재산세)에 全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는 지방교육당국의 재정능력 등을 근거로 均等하게 배분한다. 그리고 지방교육당국이 지출하는 교육비 중 교원급여비를 포함한 全經常經費의 약 2/3 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一般 財源으로서 교부되는 국가의 교부금-지방세 지원 교부금(Rate Support Grant)에 의해 충당되고 있다.

(나) 교육재산의 취득, 처분권 및 예산의 편성, 집행권

영국에서는 국가가 직접으로 설치, 유지하는 학교 등은 없고 9할 이상의 초등, 중등학교 대부분의 계속 교육기관 2/3의 교원양성기관, 종합대학 이외의 대부분의 고등교육기관 주로 지방교육당국이 설치 유지하고 있다. (국가는 綜合大學, 私立敎員養成機關 및 일부의 사립학교를 직접 보조하고 있다)

교육전문위원회의 예산에 있어서는 세입, 세출 예산 및 起償의 결정권은 참사회에 從屬하고 예산안은 교육전문위원회와 재무전문위원회의 협의에 의해 작성되고 참사회의 승인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와 같이 영국의 교육전문위원회는 법적으로 재정적 독립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상당한 縣區域에서 교육전문위원회는 예산 승인을 취한 후 재정의 독자성을 누리고 있다.

29) 김종철, '교육행정신강', (서울:세영사), p. 389.

3) 프랑스의 교육자치제도

(1) 地方分權

(가) 지방교육행정의 규모

프랑스의 지방행정의 區劃. 組織은 기본적으로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프랑스의 지방교육행정기구

| [國家] | [大學區] | [縣 區域] | [初等教育 視學區] |
|--------|----------|-----------|------------|
| 교육부 장관 | - 대학구 총장 | - 대학구 시학관 | - 초등교육 시학관 |
| | 25 | 95 | 약 700 |

註: 數字는 1975년 현재수 [자료] 小山俊也, 전게서, p.188.

전국을 25개의 區劃(1개 區劃은 평균 4縣)으로 나눈 대학구는 지방교육행정을 위한 區劃이기는 하지만 大學區에는 국가의 교육행정기관으로서의 大學區總長(recteur)이 있다. 대학구총장은 대학구에 있어 教育部長官의 권한을 代行하는 자로서 대학구내의 초등, 중등, 고등교육의 전반에 걸쳐 통괄 감독하는 최고의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다.

大學區內의 각 縣(모두 95현)에는 국가의 지방교육행정기관으로서의 대학구시학관이 배치되어 있다. 大學區視學官은 대학구총장에 직속하여 대학구총장을 보좌하는 대학구의 총장의 권한을 대행하며 각 縣 구역에 있어서의 교육행정의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초등교육행정을 위한 각 縣은 몇 개의(평균 7, 전국에 약 700)초등교육시학구로 나누어지고, 초등교육시학관이 각 1명 씩 배치되어 있다.

(나) 중앙정부, 大學區, 縣區域 및 初等教育視學區간의 기능의 배분

대통령제하의 중앙정부에는 교육부, 교육부 장관 및 대학부, 대학부 장관을 두고 있다. 교육제도, 학교의 조직, 편제, 교원자격, 교육과정의 기준 및 그 편성상의 細目 교육지도방법 등은 국가(대통령령, 부령 등)에 의해 전국에 일률적으로 정해진다.

교육부에는 전문적 분담을 갖는 다수의 總括 視學官을 두고 있다. 대학구 총장은 就學前 교육,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 관련된 사항은 교육부로부터의 지시를 그리고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은 대학부장관으로부터 또한 성인교육과 청소년의 체육교육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 체육, 餘暇部長官의 지시를 받는다. 대학구의 縣 담당 視學官은 대학구총장의 職權 밑에서 교육부장관과 대학구총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관할하는 각급학교에 訓令과 施策을 전달하고 그 실시 상황을 감독하며 사범학교의 운영을 감독하고 사립학교의 설립을 허가하는 등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다.³⁰⁾ 초등시학관은 대개 큰 국민학교의 一室에 주재하여 소관 학교를 순회하면서 교육 내용, 방법, 기타 교육 운영을 시찰, 지도, 조언, 감독하고 교원의 근무, 인사에 관한 評定, 所見을 대학구시학관에게 상신 한다.³¹⁾

(2) 住民參與

(가) 評委員會의 組織, 運營

프랑스의 교육행정조직에는 국가적 단계, 대학구, 縣의 수준에 많은 심의 자문기관이 설치되어 있다. 각 부분의 전문가, 교원, 학부모 등 국민 각계 각

30) 서정화 외, 전게서, pp. 36-38.

31) 조병효, 전게서, p. 134.

층으로부터 대표가 참가함으로써 교육행정당국의 政策立案과 조정, 그리고 집행에 대해서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나) 評委員會와 大學區 總長, 대학구 視學官과의 관계

대학구총장은 대학구평위원회의 議長인 동시에 대학구의 長으로서 중앙교육 행정 권력을 대표하여 管下의 중등교육, 사범교육, 직업교육을 지휘, 감독한다. 대학구 평위원회는 중등교육단계의 학교 관리문제에 관하여 심의와 조언을 하며, 공. 사립 중등 및 고등교육기관의 교수활동을 위시해서 행정, 회계 등의 상황에 관해서 연차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는 대학구총장의 자문기관이다. 32)

대학구시학관은 그가 주재하는 縣에 있어 고등교육을 제외한 모든 교육에 관하여 위임에 의해 대학구총장의 權力을 대행한다. 특히 초등교육에 관하여는 사실상 縣의 教育主宰者인 지위에서 학교시찰을 행하고 학교의 설치, 학교 학급의 폐지에 관여하며, 교원인사에 관하여도 助敎員을 위촉, 전임, 해임할 수 있는 등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다. 33)

(3) 教育行政의 獨立

(가) 대학구총장, 대학구시학관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프랑스의 교육행정은 두 개의 영역 즉 ①교육내용 방법 및 교원에 관한 행정과 ②학교시설, 설비, 교구 등의 물질조건에 관한 사무로 나누어지고 ①은 교육부장과->대학구총장->대학구시학관->초등교육시학관이라는 교육행정을 위한 중앙, 지방의 행정조직을 통하여 중앙집권적으로 행해지며 ②는 교육부장관(내무부장관) -> 縣知事 -> 市邑面長이라는 일반지방행정의 계통을 통하여 일반지방행정의 일환으로서 행하여지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32) 서정화 외, 전계서, pp. 37-38.

33) 조병효, 전계서, p. 136.

교육에 관한 기능은 공립학교의 시설, 설비, 교구 등 주로 재정적인 측면에 한정되며, 지방자치단체 기관(현지사, 시읍면장, 의회)의 교육행정에 대한 關係는 극히 제한된 범위에 한정되어 있다. 34)

(나) 장학행정의 운영. 조직

프랑스의 교육행정에서는 시학관제도가 조직적으로 되어 있어 학교를 지도하고 교직원의 직무를 지도, 감독하며 성적을 평정하고, 학교교육의 결함인 불만을 보고하는 등 극히 有效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존재이다. 교육부 시학실에는 교육시찰 총괄시학관과 관리시찰 총괄시학관 등 각 분야에 걸쳐 배치되어 교육활동의 학사관계와 관리관계의 시찰을 담당한다. 이러한 각 분야의 시학관은 2년 동안의 임기로 장관이 임명하나 계속 重任 하는 것이 통례이다.

(4) 專門的 經營

(가) 교육전문직 요원의 자격요건

대학구총장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대개 대학교수 중에서 문교부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정년인 70세까지 특정한 임기는 없고 대통령은 언제든지 그를 解任할 수 있다. 대학구총장은 대학구에 있어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로서 초등, 중등, 고등교육의 전반에 걸쳐 통할감독는 최고 責任과 權限을 갖는 동시에 대학구내의 쏠 대학의 총장(chancelier)으로서의 職務를 담당하고 있다.

대학구시학관은 교육부장관의 지명에 의거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학구시학관의 자격요건은 그 수준이 매우 높다. 대체로 박사학위나 이와 동등한 학위의 所持者라야 하고 대학 또는 리세(lycee)에서의 교육경력, 교장 또는 시학

34) 小山俊也, 전계서, p. 187.

관 등의 교육행정경력을 갖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대개가 리세의 교육경험자, 일부는 초등교육시학관 등에서 선정된다.

초등교육시학관은 교원자격 또는 학사학위를 갖는 교직경험자로서 초등교육시학관, 사범학교장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엄격한 경쟁시험(筆記, 口述, 實地)을 치러 선발한다.

(나) 교육전문직 요원의 양성체제

국민교육제도에서 교사로서 근무하는 교원은 국가가 시행하는 엄격한 공개 경쟁시험에 의존하기 때문에 자격요건과 양성 및 훈련은 歐美의 다른 나라와 차이가 없다. 교육행정사무에 종사할 고급행정관은 2개의 보급원에서 充員된다. 즉 교육계와 일반 행정계이다. 일반적으로 관리 또는 경영의 임무를 맡은 직원은 국립행정대학원에서 훈련된다. 한편 중앙의 교육부와 대학부 및 대학구에 근무하는 교육행정관들은 거의 교육계출신으로 주요 국장들은 대학구 총장 또는 대학교수의 경력을 가진 사람이 된다. 교육부의 총괄시학관, 대학구의 시학관 및 縣 담당 시학관은 적어도 교수임용 자격을 갖는 중등학교 교원 중에서 선정된다.³⁵⁾

(5) 自主的 財政

(가) 교육재정의 확보

프랑스에서는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세가 없기 때문에 公教育費는 국가의 일반회계예산에 의존하고 있다. 1978년의 정부예산은 총 4120억 프랑으로 국내 총생산의 21.9%에 해당되며 이 중 교육과 문화활동에 관한 예산이 25.2%로 제일 많고 복지사업에 18.6% 국방에 17.5%를 배당하고 있다. 중등교

35)서정화외, 전게서, p. 40.

육단계에 있어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조하는 액수는 규모와 상황에 따라 다르다. 중등교육단계에서 일정액의 운영비는 시읍면의 예산에서 지출되며 나머지는 縣의 예산에서 부담한다. 36)

(나) 교육재산의 취득, 처분권 및 예산의 편성, 집행권

中央集權的인 프랑스의 교육제도하에서는 중앙정부가 모든 교직원의 인건비를 負擔하고 있다. 교육에 관한 행정에서 학교의 시설, 설비, 교구 등의 물적 조건에 관한 사무는 일반지방행정에서 담당하고 있다. 市邑面은 국민학교 기타의 의무교육학교 및 유아원 또는 유아학급의 설치 의무가 있고, 縣은 사범학교의 설치 의무가 있는 외에 중등학교를 任意 설치한다. 그리고 학교의 설치 유지자인 이들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공립학교의 시설, 설비, 비품, 교재, 교구 등의 物的條件을 정비, 관리할 의무를 갖는다. 공립학교의 물적 조건의 설치, 유지, 정비, 관리를 위한 경비는 각각 설치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액을 훨씬 上廻하는 국고보조금에 의해 그 경비의 큰 부분이 충당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기능은 財政的인 側面에 한정되며 교육운영에 대한 關與는 할 수 없다. 37)

4) 日本의 교육자치제도

(1) 地方分權

(가) 지방교육행정의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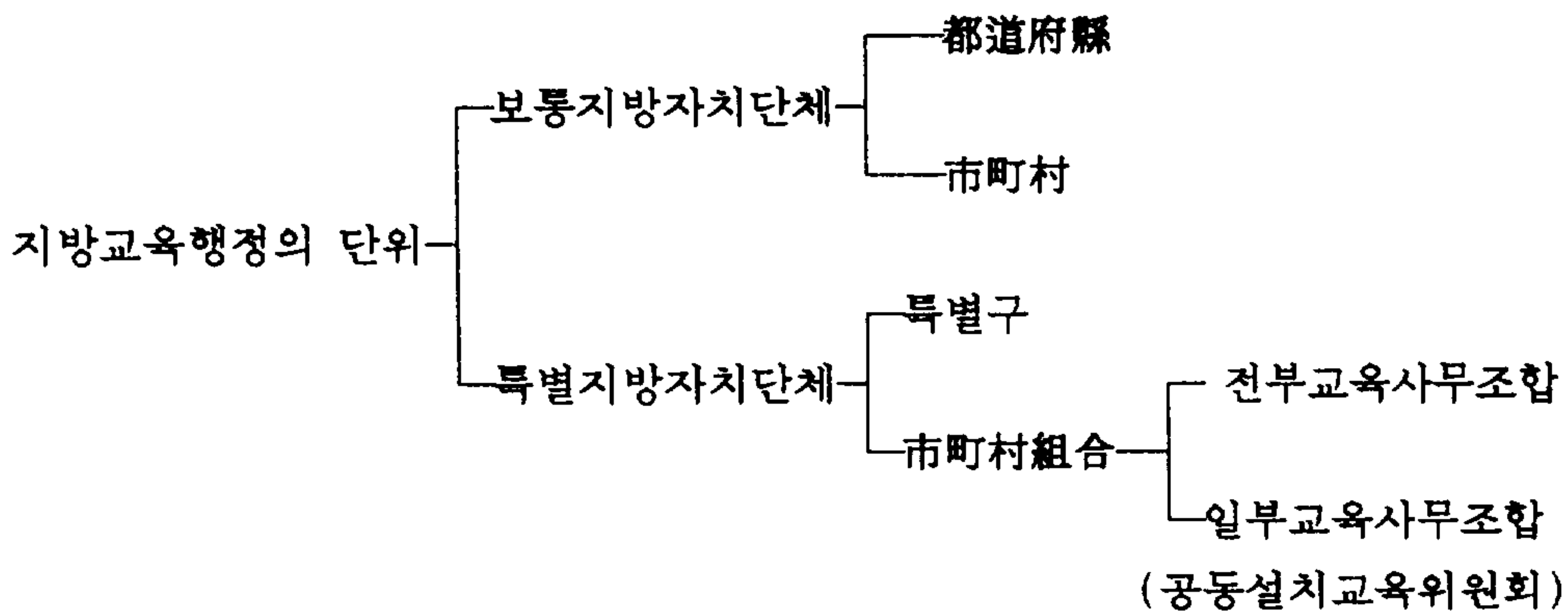
다음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교육행정의 主體가 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보통지방자치단체인 都道府縣 및 市町村外에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

36) 조병호, 전계서, p. 140.

37) 小山俊也, 전계서, p. 187.

의 특별구 및 지방자치단체의 組合이 있다. 특별구는 東京都의 區로 他府縣의 시에 유사한 기능을 갖는다. 교육사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합에는 ①市町村의 교육에 관한 사무의 전부를 공동처리하기 위한 전부교육사무조합과, ②市町村의 교육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공동 처리하기 위한 일부교육사무조합이 있다.

<표 3> 일본의 지방교육행정의 단위



[자료] 小山俊也, 전계서, p. 115.

이상의 都道府縣, 市(특별구 포함)町村 및 교육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 처리하는 市町村의 組合에는 모두 교육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그밖에 複數의 시정촌이 공동으로 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예도 있으나, 이 경우 법적으로 이 교육위원회는 單數로 각 市町村의 겸하게 되어 관계 市町村에 각각 교육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취급되고 있다.³⁸⁾ 都道府縣을 제외한 지방교육행정의 단위(지방교육행정의 기초단위)의 수는 1976년 현재 다음 <표 4>와 같다.

38) 小山俊也, 전계서, pp. 115-117.

〈표 4〉 일본의 지방교육행정의 기초단위 (1976년)

| 단위의 종류 | | 수 |
|-------------|-----------|-------|
| 市町村: 인구 | 10만인 이상 | 195 |
| " | 3만 ~10만인 | 464 |
| " | 8천인 ~ 3만인 | 1,428 |
| " | 8천인 이하 | 1,140 |
| | 계 | 3,337 |
| 전부 교육 사무 조합 | | 1 |
| 일부 교육 사무 조합 | | 198 |
| 공동설치 교육위원회 | | 14 |

[자료] 小山俊也, 전계서, p. 117.

위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6년 현재 인구 3만명 이하의 市町村이 전체의 8할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 市町村 교육위원회사무국의 직원 수는 2.8~8명이다. 교육위원회를 모든 市町村에 설치하고 있는 것은 교육행정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趣旨에 의거한 것이지만, 교육행정의 能率性, 計劃性의 보장이라는 見地에서는 문제가 많다. 39)

(나) 중앙과 지방과의 기능의 배분

교육행정기구로서는 중앙에 文部省 지방에는 都道府縣 교육위원회와 市町村교육위원회가 있다. 문부성과 도도부현 교육위원회와 시정촌교육위원회와의 權限상의 관계를 알기 쉽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文部省의 권한

문부성 설치법 제5조에 문부성 권한에 속하는 사항 몇 가지만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위원회, 도도부현지사,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기

39) 조병효, 전계서, p. 145.

관에 대하여 교육, 학예, 문화, 종교에 관한 행정조직 운영에 관하여 지도, 조언, 권고를 한다.

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위원회에 대하여 교육, 학예, 문화, 종교의 사무와 관리, 집행이 위법이고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을 때 그 시정조치를 강구토록 요구한다.

㉕ 都道府縣 교육위원회의 교육장임명에 대하여 승인을 한다.

㉖ 교육위원회, 도도부현지사,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기관과 대학, 고등전문학교에게 보고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都道府縣 교육위원회

㉗ 시정촌교육위원회교육장 승인 ㉘ 공립 초, 중, 고등학교의 설립 및 학기제정 ㉙ 교직원 검정으로 교직원 면허장 발급 ㉚ 교직원의 특정정당지원 선동금지, 규정위반자의 처벌요구 ㉛ 교과용 도서 채택에 있어서 시정촌교육위원회, 학교장의 지도, 조언, 원조. ㉜ 시정촌 의무학교의 학급, 아동 수의 기준, 학급편제 허가 ㉝ 각종 진흥법에 따른 국고보조의 신청 및 교부 등이다.

③ 市町村교육위원회

㉞ 학령부작성, 취학의무의 유예, 면제에 관한 사무. ㉟ 교직원의 특정정당지지, 선동금지, 규정위반자의 처벌요구 ㊱ 각종 진흥법에 따른 給付受領, 도도부현교육위원회에게 하는 교과서수요의 보고 등이다.

‘지방교육행정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이를 다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㊲ 학령아의 취학, 입. 전학 ㊳ 교육기관의 직원인사 ㊴ 학교법인 ㊵ 학교 및 교육기관의 설립 및 관리 ㊶ 校舎 시설에 관한 사항 ㊷ 교과서 및 교재의 취급 ㊸ 학교급식 등이다. 40)

다음은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戰前에는 국가의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과의 사이에는 상급, 하급의 관계가 있었지만, 현행제도하에서는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國家, 都道府縣, 시정촌의 행정기관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상급, 하급의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2) 住民의 參與

(가) 주민의 참여

교육위원회는 合議制의 집행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長인 知事, 市町村長으로부터 독립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행정사무의 대부분을 집행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管掌하는 일부의 교육관계 사무를 제외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 있어서의 교육, 학술, 문화에 관한 사무의 대부분을 관리 집행하는 권한을 가지며, 법령 또는 條例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교육위원회 규칙을 정할 수 있고 교육위원회의 규칙이 정한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 또는 임시로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교육위원회는 교육에 대한 지역주민의 關心, 利害를 대변하는, 교육에 관한 학식경험자인 민간인(Layman)에 의하여 구성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일정한 독립성을 보장받는 합의제 집행기관이다. 교육위원회의 민간인인 교육위원이 교육행정의 기본적인 방침과 중요사항을 결정(Layman Control)하고, 교육행정사무의 전문가인 교육장이 모든 교육사무를 구체적으로 관리, 집행, 처리(expert management)함으로써 지방교육행정에 있어서의 민주성, 자주성,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제도이다. 41)

40) 서정화의, 전계서, pp. 90-93.

(나) 교육위원회와 교육장과의 관계

合議體의 교육위원회는 교육의 非專門家로 구성되는 곳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교육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책임자로서 교육장을 두고 있다. 교육장은 교육행정사무의 전문가일 것이 要求되고 있다. 그는 교육위원회의 지휘, 감독 아래 교육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교육 사무의 구체적인 처리를 담당하고 있다. 市町村교육위원회의 教育長은 都道府縣교육위원회의, 그리고 都道府縣教育委員會의 教育長은 文部大臣의 승인을 얻어서 당해 교육위원회가 임명한다. 다만 시정촌교육장은 교육위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當該 교육위원으로서 임기 중 재임한다. 이른바 '위원교육장제'는 시정촌의 행정기구의 간소화를 위해 취한 조치이다.

교육장은 일반직의 常勤公務員이면서 教育公務員이지만(교육공무원 특별법 제2조 1항) 교육장의 급여, 근무시간, 기타 근무조건에 관하여는 타의 일반직에 속하는 지방공무원과는 별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條例로 정한다. 교육장은 교육위원회에 속하는 사무국의 책임자로서 모든 회의에 출석하여 議事에 조언한다. 교육위원회 사무국직원의 임명에 있어 특정한 경우에는 교육장의 조언 추천 없이는 교육위원회는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3) 教育行政의 獨立

(가) 교육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교육위원회는 ①소관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 관리 및 폐지 ②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교육재산의 관리 ③교육위원회 및 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직원의 임면, 기타의 인사 ④학생의 취학, 전 퇴학 ⑤학교의 조직편제, 교육과

41) 小山俊也, 전계서, pp. 118-119.

정. 학습지도. 특활지도 및 직업지도 등 19개 사항에 관한 교육사무를 관리. 집행한다(지교행법 제23조).

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長은 ①대학에 관한 사항 ②사립학교에 관한 사항 ③교육재산의 취득 및 처리 ④교위소관사항의 계약체결 ⑤교위소관의 예산집행 등 교육사무를 관리. 집행한다(동법 제24조).

교육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長은 교육사무를 관리. 집행함에 있어 법령, 條例,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정하는 규칙 및 규정에 의거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방자치단체의 長은 앞서 열거한 교육사무를 관리 집행함에 있어 교육재산은 지방자치의 장의 總括下에 교육위원회가 관리하도록 하며 교육재산의 취득은 교육위원회의 신청에 의거 행하고 取得 즉시 교육위원회에 인계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사무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건의 議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안된다.

(나) 장학행정의 조직. 운영

都道府縣교육위원회와 市町村교육위원회의 조직은 도도부현과 시정촌에 따라 다르다. 教育委員會事務局에 장학담당자로서 指導主事を 둔다. 지도주사는 교장 및 교원에게 전문적인 지도와 조언을 하는 특별한 교육행정직이다. 지도주사는 上司의 命을 받아 학교에 있어서의 교육과정, 학습지도 기타 학교교육에 관한 전문적 사항의 지도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지도주사에는 교육위원회 사무국원으로서의 지도주사와 학교에 籍을 둔 교원 신분의 지도주사가 있는데 前者를 '專任指導主事' 後者를 '兼務指導主事' 라 부른다. 지도주사는 국어, 사회, 수학 등 교과목 중에서 전공과목을 담당해야 하며, 또

한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평가, 학교, 학급경영, 진로지도, 시청각교육, 육아교육, 특수교육 등 교육영역 중에서 어떤 영역을 담당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방문시 또는 연구 수업, 연구회, 연수회 등에서 지도 조언한다.

(4) 專門的 經營

(가) 교육전문직 요원의 자격요건

都道府縣교육위원회의 教育長은 도도부현교육위원회가 文部大臣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市町村교육위원회의 교육장은 도도부현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되 시정촌교육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명해야 한다. 위원 중에서 임명된 시정촌 교육장은 당해 위원으로서의 임기중 재임하는 것으로 한다. 따라서 위원직을 떠날 경우에는 교육장의 신분을 상실하게 된다. 교육장은 都道府縣이거나 市町村이거나 일반직에 속하는 常勤의 지방공무원이지만 급여, 근무시간 등 기타 근무조건에 관하여는 他意 지방공무원과는 별개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다. 指導主事の 임용방법에는 다음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교육위원회의 추천과 면접으로 결정하는 推薦制이고 둘째는 선발시험에 의한 방법이며 셋째는 敎頭(교감)시험 합격자중에서 선발하는 방법이다. 어느 방법이건 공통적인 관점도 교과 또는 교육영역에서 전문적 교양과 지도성을 갖는 교사를 제일 조건으로 선정한다는 것이다.

(나) 교육전문직 요원의 양성 및 연수체제

교육전문직 요원의 양성은 특별한 기관이 있는 것은 아니고 指導主事の 경우 대개 20년 이상의 교직 경험을 가진 敎諭, 敎頭, 校長 중에서 임용된다. 이들 중 敎諭에서 많이 임용되고 敎頭, 校長은 그 수가 적다. 교육위원회의 과장, 부장, 교육차장급의 간부직은 대체로 敎諭, 敎頭, 校長의 경력과 지도주사

등 교육위원회의 경력을 가진 者가 기용된다.

교육전문직의 연수기회는 매우 稀少하다. 문부성이나 都道府縣 주최의 연수회에 참가하는 것 이외에는 거의 없다. 指導主事 등이 비교적 많이 참가할 수 있는 연수회는 제1위가 文部省주최의 연수회, 제2위가 都道府縣교육위원회주최의 연수회이다. 이러한 연수회에는 교육과정전달강습회, 校長. 敎頭연수강좌, 생도지도강좌, 교육과정연구발표회, 도덕교육연구발표회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수회에도 참가할 수 있는 指導主事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장기연수제도로는 ①초. 중. 고등학교의 해외 파견, ②현직의 해외 유학, ③대학원 석사과정에서의 연수 등이 있다. 42)

(5) 自主的 財政

(가) 교육재정의 확보

1956년 교육위원회의 제도가 개정되어 教育財政상의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移讓되고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의 종합 재정적 구조가 강하게 되어 지방교육재정문제는 교육위원회의 재정적 독립강화 보다는 중앙의 재정에 의한 강력한 보조와 교육재정을 지방재원에 일원화하는 방식으로 그 기본 방침이 전환되었다.

國家, 都道府縣, 市町村간의 自主財源에 의한 行政費에 대한 自主支出 教育費를 기초로 하여 국가. 도도부현. 시정촌 3 者가 어떤 비율로 公財政支出教育費를 부담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중앙이 35%, 도도부현이 40%, 시정촌이 25%로 되어 있다. 43)

42) 서정화 외, 전계서, p. 98.

43) 상계서, p. 105.

(나) 교육재산의 취득 처분권 및 예산의 편성 집행권

교육재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일은 지방자치단체의 長의 권한이며, 교육재산은 교육위원회의 신청에 의거 長이 취득하되 신속히 교육위원회에 인계하여 長의 總括하에 교육위원회가 관리한다. 교육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관한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長이 집행하며, 교육에 관한 예산. 條例안의 작성은 長이 행하지만 長은 세입 세출 예산 중 교육에 관계되는 부분 및 교육관계의 의회 제출 의안의 작성에 있어서는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안된다.

현행 地敎行法에서는 교육위원회는 교육행정상의 見地에서 필요한 교육재산이나 계약의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長에게 신청하고, 長은 재정 행정상의 입장에서 구체적인 취득. 締結을 행하며, 또한 교육에 관한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교육위원회가 長에게 지출 명령을 發하도록 요구하게 된다. 44)

4. 現行 敎育自治制度의 分析

우리나라에 지방교육자치제도가 실시된 것은 1949년 12월 31일 교육법 제정과 더불어 1952년 4월 24일 교육법 시행령 제정으로 1952년 6월 4일 처음으로 지방교육자치제가 실시되었지만 1962년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2년간 중단되었으며, 1964년 1월 1일 재개하였지만 역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1988년 4월 6일 교육법을 개정하여 시. 도와 시. 군까지 확대 실시하도록 하고 이에 근거하여 1991년 3월 8일 지방자치제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고 동 시행령이 1991년 4월 23일 공포되어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1991년 3월 26

44) 小山俊也, 전거서, pp. 123-124.

일부터 시행하므로써 교육자치제는 명실공히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91년 개정 이후 교육자치제의 조직 단위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韓國의 教育自治制度

(1). 地方分權

(가) 교육자치단체의 규모

개정된 교육자치제에서는 제15조(교육위원회의 설치)에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학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시, 직할시, 도와 시, 군 및 자치구에 교육위원회를 둔다'⁴⁵⁾ 라고 하여 과거 소교육구, 대교육구와는 달리 2계층에 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각각 위임형 의결기관으로 하고 있다.

(나)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

개정된 교육자치제에서는 시, 도와 시, 군, 구에 위임형 의결기관으로서의 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권한의 위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쏟고 있으며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이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2) 住民自治

(가) 교육위원회의 성격

과거 小教育區期(1952-1961년)에서는 군교육위원회만이 의결기관이었고, 大教育區期(1964-1991년 개정 이전)에서는 시, 도교육위원회가 합의제 집행기관에 머물렀으나 새로 개정된 교육자치제에서는 시, 도 및 시, 군, 구에 비

45) 법제 연구원, '문교법전', (서울: 법제연구원, 1988), p. 90.

록 위임형이기는 하나 의결기관의 성격으로 교육위원회가 설치되었음은 자치를 위해 진일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 교육위원회의 조직·운영

교육위원의 정수에 관하여 현행 교육법 제 16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시·도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정수는 특별시는 15인, 직할시 및 도는 11인으로 한다. 다만 제주도는 9인으로 한다. ② 시·군 및 자치구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정수는 인구 7만 이하의 시·군 및 자치구는 5인으로 하고, 인구 7만을 초과하는 시·군 및 자치구는 7인으로 한다'. 46) 교육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자격은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로서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어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하며 교육위원 정수의 2분의 1 이상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교육위원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각 1인을 둔다. 의장과 부의장은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의장은 교육위원회를 대표하고 議事를 정리한다. 교육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47)

(3) 教育行政의 獨立

(가) 교육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과거와 달리 개정된 자치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육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는 동시에 당연직 의장이 되는 조항이 삭제되고, 의장은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하며 교육위원도 지방의회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법 제 26조 제 2항에서 '교육장은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 중

46)상계서, p. 90.

47)상계서, p. 91.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의안을 교육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주민의 재정적 부담이나 의무 부과에 관한 조례안. ②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 관련되는 사항' 제 3항에서 '교육위원회 의장은 교육위원이 제 2항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의안을 발의할 때는 이를 의결하기 전에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8) 고 규정하고 있다.

(나) 장학행정의 조직. 운영

대표적인 지방의 장학행정조직은 교육위원회의 집행기관인 교육청이 있다. 시.도 교육청 기구 중에서 초등교육국과 중등교육국에 각각 초등장학과와 중등장학과가 설치되어 있다. 서울특별시의 교육청에는 사회교육체육국을 증설하여 장학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의 下級교육청과 인구 50만 이상의 下級교육청에는 학무국 산하의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그리고 사회교육체육과를 설치하여 장학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의 9개 교육청의 학무과, 사회체육과, 그리고 인구 30만 미만의 교육청의 학무과 역시 장학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장학행정조직의 특징은 장학행정을 직접 담당하는 해당 부서가 있는 교육청이 있는 반면에 학무국이나 학무과에서 장학행정을 관장하는 교육청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시.도교육청에는 시.도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교육감이 있고 교육감 밑에는 교육담당관을 부교육감 밑에 기획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 담당관 각 1인을 두고 있다. 49)

48)상계서, p. 91.

49)이득기, 전계서, p. 485.

(4) 專門的 管理

(가) 교육장의 자격

개정된 교육법에서는 제 45조에서 교육장의 자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교육장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② 교육장은 교육경력 또는 교육전문직 경력이 20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20년 이상 있는 자이어야 한다. 50) 여기에서 특기할 만한 점은 전과 달리 黨籍을 불허했다는 점과 자격 요건으로서 일반직 출신의 교육전문직으로서의 교육장 진출의 길을 제한했다는 점이다.

(나) 교육전문직 요원의 양성 및 연수

현행 교육자치제도에 있어서도 교육전문직 요원의 양성을 위한 직전 교육이나 현직 교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 양성 과정 등의 제한은 없으며 다만 교장, 교감, 교사를 전직시켜 장학관, 교육연구원 또는 장학사, 연구사로 임명하고 있다.

(5) 自主的 財政

(가) 교육재정의 확보

현행 지방교육자치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육 학예에 관한 경비는 교육에 관한 특별부과금, 수수료, 사용료 기타 교육 학예에 관한 재산 수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타 교육 학예에 속하는 수입으로 충당하며 의무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의 보수와 기타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국가와 그 설치, 운영하

50) 법제연구원, 전거서, p. 92.

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나) 교육재산의 취득, 처분권 및 예산의 편성, 집행권

교육재정과 관련된 교육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으로는 시·도 의회의 제출할 예산안 및 결산 시·도 의회에 제출할 특별부과금,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기본재산 또는 적립금의 설치, 관리, 처분 등이며, 예산안의 편성, 결산서의 작성, 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특별부과금,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기채, 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기본재산 적립금에 관한 사항 등은 교육감의 관장 사무로 되어 있다. 단, 교육감이 주민의 재정적 부담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조례안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관련 사항을 교육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와의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5. 外國과 韓國 教育自治制度의 比較 分析 要約

이상과 같이 외국의 주요 4개국과 한국의 교육자치제도를 비교, 분석하였는바 그 내용을 간추려 요약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1> 외국의 주요 4개국과 한국교육자치제도의 비교표

| 주요국 기준 | 미 국 | 영 국 | 프 랑 스 | 일 본 | 한 국 |
|------------------------|---|---|---|---|--|
| 교육자 자치단체의 규모 | 1) 주교위- 50 2) 기초교육구 16, 194 3) 중간교육구 2개이상의 기초교육구를지도, 원조함 4) 미국인구 약 2억 2천 2백만으로 각 교육구교위 평균인구는 13, 700명 | 1) 大런던 이외의 구역-현 39, 도시구 36 2) 영국인구 약 5천 5백 80만으로 각 교육전문위원의 평균인구는 58만명 | 1) 대학구-25 2) 현구역-95 3) 프랑스의 인구는 5천 3백 50만 으로서 각 대학구의 평균인구는 약 56만, 각 초등학교의 평균인구는 약 76, 000 | 1) 보통지방자치단체-도도부현 47, 시정촌 3, 227 2) 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구, 시정촌조합 199 3) 일본인구는 1억 1천 700만으로 각 도도부현의 평균인구는 249만, 각 시정촌 평균인구는 3만 6천 | 1) 교육위원회-특별시, 직할시, 도와시, 군 및 자치구의 2계층에 교육위원회를 설치 |
| 지방분권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 | 1) 공교육책임은 주정부와 주민에게 귀속 2) 학교 운영상의 책임-교육구에 위임 3) 교육구교위-일반자치단체와 구별되는 법인체, 독자적 지방행정을 주관 | 1) 지방교육당국-교육운영 관장 2) 중앙과 지방과의 기본적인 구조-상호협력적 관계 3) 종합대학이외는 중앙에서 직접 설치, 유지하는 학교는 거의 없음 4) 교과서편찬, 발간, 배부, 교육과정내용, 교수요령에 관해 중앙에서 관여 없음 | 1) 교육제도, 학교제도, 편제, 교원자격, 교육과정기준 및 세목, 교육지도방법, 대학입무등은 중앙에서 관장 2) 대학구총장은 초, 중등교육, 기술, 직업교육등 학교에 대한 교육행정관장 3) 대학구시학관 각 현구역의 책임자로서 초등교육행정을 관장 | 1) 후기 중, 고등교육에 관한 사무는 도도부현교위가 관장 2) 초, 중학교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무는 시정촌교위가 관장 3)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지도, 조언, 원조, 권고라는 비권력적 형태의 관계임 | 1) 중앙집권적 교육행정체제에서 시, 도와시, 군, 구에 위임형의 결기관으로서의 교육위원회를 설치-권한의 위임을 위해 노력 |
| 주민의 참여 | 1) 대부분의 주교위-위원정수 7-11명, 임기-4-6년, 자격-비전문가, 선출방법-주지사가 임명 2) 대부분의 교육구교위-위원정수 5-7명, 임기 3-6년, 자격-비전문가, 선출방법-주민직선 | 1) 참사회에 교육사무를 관장하는 교육전문위원을 설치함 2) 교육전문위원수 20-30명 | 1) 대학구평위원회 총장이 의장 시학관(현담당시학관), 공립중등 및 고등교육대표자, 대학행정책임자 2) 현교육평위원회 현지사: 의장 평위원회선출 4명, 동료교사선출-초등교사 4명, 현내의 사범학교장, 초등시학 2명, 사립학교대표 | 1) 도도부현교위위원정수 5명, 임기 4년, 자격: 인격고결, 학술, 문화에 식견을 가진 자, 선출방법-지방자치단체의장이 회의의 동의를 얻어 임명 2) 시정촌교위위원정수 3-5명, 임기 4년, 자격은 도도부현과 같음, 위원장-위원중에서 선거 | 1) 교육위원정수 특별시 15명, 직할시 및 도: 11명, 제주도 9명 2) 시, 군, 자치구 인구 7만 이하 5명, 7만 초과 7명, 임기 4년, 자격: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자 3) 의장, 부의장 각 1인, 교위에서 선출, 교위대표, 교위원선출-지방의회에서 선출 |
| 교위와 교육감과의 관계 | 1) 주교위는 합의제 집행관, 주의회는 의결기관, 사무장격으로 교육감을 돕. 2) 교육구 교위는 의결기관, 교육감은 집행기관 | 1) 참사회는 의결기관인 동시에 집행기관 2) 교육사무 관장위해 교육전문위원을 설치 3) 교육전문위에 교육감을 두며, 교육감은 교육전문위원 소속 교육청의 사무장이 됨 | 1) 대학구평위원회 대학구총장의 자문기관, 대학구총장이 의장됨 2) 현교육평위원회 대학구시학관의 자문기관 현지사-의장 대학구시학관-부의장, 실질적 권한 행사함 | 1) 도도부현 교위 합의제 집행기관 도도부현의회-의결기관, 사무장격으로 교육감을 돕 2) 시정촌 교위 합의제 집행기관 시정촌의회-의결기관, 사무장격으로 교육감을 돕 | 1) 교육위원회-위임형의 결기구 특별시, 직할시, 도, 시, 군 및 자치구에 교육위원회 설치 |

〈표 5-2〉 외국의 주요 4개국과 한국교육자치제도의 비교표

| 주요국 기준 | 미 국 | 영 국 | 프 랑 스 | 일 본 | 한 국 | |
|----------|-------------------------------|--|---|--|--|---|
| 교육행정의 독립 | 교 위 와 지 방 단 체 와 의 관 계 | 1)교육위원회 독자적으로 지방 교육행정을 주관 2)지방자치단체장 교육위원을겸임 하지않음 3)교육구 교위 별개의 지방단체 독립적 행정권 행사 | 1)참사회 지방자치단체의 최고기관, 지방당국 2)교육행정단위가 되는 지방자치단체 의 참사회는 지방 교육당국 | 1)교육내용, 방법 교원행정:교육부 ->대학구청장->대학구시학관->초등 교육시학관이담당 2)교육행정을 위한 지방기구는 일반 지방행정기구와 완전 분리 | 1)교위는 위원중에서 위원장선거 2)교위는 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재산관리, 인사, 생활지도 등 관장 3)지방자치단체장 대학, 사립학교, 교육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하 사무관리동 관장 | 1)교위 의장-교위에 서 선출, 교위원-지방의회서 선출 2)교육, 학예에관한 의안제출-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 |
| | 장 학 행 정 의 조 직 운 영 | 1)주교위 장학담당자-주내의 교육연수계획, 교육자료및 정보교류 관장 2)교육구교위담당자-지역교원에대 한 연수계획수립 운영및교원에 대 한 지도, 조언 | 1)책임시학관-교육 내용, 방법등에 관한 기획, 연구지도, 조언담당 2)전국을10개지구로 나누어 지구시학관 과 지방시학이 학 교교육에관해 지도, 조언 | 1)교육부 시학실에 교육시찰총괄시학관, 관리시찰총괄시 학관 등이, 전국의 교육활동지도 2)대학구청장->대학 구시학관이 현교육행정에 관해 총장권한개행 | 1)교위사무국에 장학 담당자로서, 지도주 사를 들 2)지도주사는 학교에 있어서의 교육과정, 학습지도 기타 학교 교육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지도 | 1)지방장학행정조직 교육청의 각 기구 에서 장학업무담당 2)인구30만이상, 50 만미만의9개 교육 청의 학무과, 사회 체육과에서 장학업 무 담당 |
| 전문적 경영 | 교 육 전 문 직 요 원 의 자 격 요 건 | 1)주 교육감 임기4년, 석, 박사 학위소지자, 선출 주교위에서임명 2)교육구교육감 임기4년, 석, 박사 학위 소지자로 3 년이상 교육경력 자, 선출-교육구 교위에서 임명 3)부교육감등 전 문직도 위와같음 | 1)교육감자격 대졸, 교사, 교장, 시 학, 지방교육당국의 간부경력자인 교육 행정전문가, 선출-참사회에서 임명 2)차장, 차장보, 시학 관등의 자격-대졸, 교사, 교장, 시학, 지방교육당국 행정경 력자 | 1)대학구청장자격 박사학위, 대학교 수, 선출-교육부장 관추천, 대통령임명 2)대학구시학관 박사학위, 교장, 초 등교육시학관경력 자, 선출-위와같음 3)초등시학관자격 교장자격증, 경쟁시 험합격자 | 1)도도부현교육장 임기4년, 자격-자치 조례로정함. 선출-교 위선임-> 장관의 승 인요함 2)시정촌교육장 임기4년, 자격-위와 같음, 선출-교위선임 ->도도부현 승인요함 3)차장, 국장, 과장 등 의 자격-敎職, 지도 주사경력 | 1)교육장의자격 학식, 덕망높고 지방의회피선거권, 비 정당원, 교육경력, 전문직경력 20년이 상 2)자격요건 일반직 출신의 교 육전문직으로서의 교육장진출의 길을 제한 |
| | 교 육 전 문 연 직 수 요 체 원 계 의 양 성 및 | 1)양성-대학원, 교 육대학원 석, 박사 과정에서 교육 행정전공 2)연수-학교행정 가연구소(NASE), 중등행정가훈련 소(NISSA)등에서 실시 | 1)양성-경력과 능력 위주, 교사, 교장, 시 학, 지방교육당국 근무경력 등을 통 해 양성 | 1)양성-고등사범학 교를 통해서 2)초등시학관, 사범 학교장자격증-자격 시험으로취득, 응시 자격-25세이상, 교 원자격증이나 학사 학위를 가지고, 공 립학교에서 5년이 상의 교직경력자 | 1)양성-경력과 능력 위주, 교유, 교두, 지 도주사, 교장, 교위근 무경력 등을 통해 양성 2)연수-교육부, 도도 부현 주최, 지도주사 연수회, 지도주사 연 락협의회 활용 | 1)양성-교장, 교감, 교사를 전직시켜, 장학관, 교육연구 관, 장학사, 연구사 로 임명 |

〈표 5-3〉 외국의 주요 4개국과 한국교육자치제도의 비교표

| 주요국 기준 | 미 국 | 영 국 | 프 랑 스 | 일 본 | 한 국 |
|------------|--|--|--|--|---|
| 교육재정의 확보 | 1)교육구교위 과세권있음,지방세의 세원 결정 2)교육세 3)교육구간의 재정 격차를 줄이기위해 平衡交付적, 교부방식에 의거 州가 보조금지급 | 1)최근 교육비 약 60%-중앙정부 40%-지방교육당국이 부담함 2)지방교육당국의 교원급여를 포함한 전경상비의 3/2는 국가의교부금-지방세지원교부금에서 충당 | 1)교육비 국가의 일반회계에 산에 의존 2)총교육비의 67.8%를 국가가 16.6%를 지방자치단체가 1.8%를 학부모가 3.5%를 기업체가 부담 | 1)공교육비부담구분 국가47.9%,지방부담 52.1% 2)자주지출교육비를 기초로한,국가,도도부현,시정촌 3자의 부담구분은 국가 35%,도도부현40% 시정촌 25% | 1)교육,학예에 관한 경비-특별부과금, 수수료,사용료,기타 재산수입,지방교육재정교부금,지방교육양여금 및 지방단체의 전입금으로 충당,교원보수및경비-국가,지방자치단체가부담 |
| 자주적 재정의 확보 | 1)교육구교위는 토지,기타 재산을 기증,중여,교부할 수 있음 2)일반지방행정 단위와는 별개로 독립하여교육에 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음 | 1)예산은 교육전문위와 재산전문위의 합의에 의해 작성하고,참사회의 승인을 득한 후,교위는 재정의 독립성을 가지고 집행함 | 1)공립학교의 물적 조건의 설치.유지.정비.관리를 위한 경비는 각각 설치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 2)중앙정부는 초등 및 사범학교교원의 인건비부담.건물유지비지급,빈곤한 시정촌 보조를 함 | 1)재산취득및 처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행함 2)교위 소관 예산편성.집행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행함.단 교위의 의견을 들어야함 3)지방자치단체장의 이와같은 권한은 敎委會 위임할 수 있음 | 1)교육재정과 관련된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등은 교육감의 판장 사무로 되어 있음 단 교육감이 주민의 재정적 부담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조례안과 지방단체의 일반회계에 관한 사항을 교위에 제출때는 시.도 지사와 협의 |

6. 先行研究의 考察

해방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 교육자치제에 대한 史的 考察과 문헌연구 및 實態를 분석하여 교육자치제의 改善方向이나 發展方案 및 지방교육 재정과 기능 배분에 관한 논문이 여러 편 나왔다. 그 중에서 본 연구와 關聯되어 考察된 대표적인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용채는 “教育自治制에 대한 敎師의 意見調査 研究”⁵¹⁾에서 교육자치제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 후 그 示唆點을 추출한 뒤 교사의 의견을 收斂해 보고 교사의 입장에서 본 바람직한 교육자치제의 實現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

51) 김용채, ‘교육자치제도에 대한 교사의 의견조사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pp. 64-66

방분권적 측면, 주민자치적 측면, 분리독립적 측면, 전문적 측면의 4개 측면으로 나누어 교사의 입장에서 보다 나은 자치제의 발전 방안을 摸索하였다.

오태웅은 “**教育自治制 실시에 대한 敎員의 意見調査 分析**”⁵²⁾에서 서울 및 경기도 지역의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교육자치제 실시 대상 지역 및 인사관리 교육위원회 성격, 교육위원 선출, 교육장 및 부교육장 선출, 지방교육 재정 등으로 구분하여 바람직한 發展方案을 모색하였다.

최태진은 “**教育自治制度에 대한 敎師의 認識**”⁵³⁾에서 교육자치제의 기본원리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교육자치제의 변천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검토하여 그 특징을 알아보고 나아가 부분적으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현행 교육자치제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사 입장에서 보다 바람직한 교육자치제 실현에 요구되는 기본원칙을 제시하였다.

임동원은 “**教育自治制度에 대한 初等敎員 集團들의 理解程度 및 見解調査 分析**”⁵⁴⁾에서 교육자치제도에 대한 교원집단의 올바른 이해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이라는 교육자치제의 본질을 구현하기 위해 교육자치제도에 대한 관련 문헌의 분석을 통하여 교육자치제도의 성립과정과 법적 측면을 고찰하고 교육자치제도에 대한 교육대학생, 교사 교육관리직의 이해 정도와 견해를 조사 분석하여 우리나라 교육자치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시하였다.

신용우는 “**地方教育自治 實施에 따른 敎師의 役割에 대한 認識度 연구**”⁵⁵⁾

52) 오태웅, ‘교육자치제 실시에 대한 교원의 의견조사 분석’,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pp. 68-71

53) 최태진, ‘교육자치제도에 대한 교사의 인식’,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pp. 66-68

54) 임동원, ‘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초등교원집단들의 이해정도 및 견해조사 분석’,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pp. 52-55

에서 지방교육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교육의 主體者로서 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교사들의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한 認識을 조사 분석하여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실시에 따른 교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과 研修의 方向에 대한 바람직한 方案을 모색하였다.

정병술은 “**教育自治에 관한 教育行政家の 認識度 調査研究**”⁵⁶⁾에서 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을 추출하고, 교육자치제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교육행정 담당자들의 견해를 조사, 분석한 후 바람직한 교육자치제의 모형을 설정하여 봄으로써 교육자치제의 확대 실시를 위한 정책 연구에 시사점을 얻고자하였다.

전성덕은 “**教育自治制의 實態와 發展 方向**”⁵⁷⁾에서 교육자치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교육위원회의 성격 및 구조와 조직,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 교육행정의 전문성, 교육재정으로 구분하여 앞으로 실시될 교육자치제도의 발전방향과 대안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오경자는 “**韓國教育自治制度에 관한 基礎的 研究**”⁵⁸⁾에서 일반행정에서의 자치제도에 대한 理論的 背景을 考察해 봄으로써 교육자치제도의 理念과 實際의 문제점을 制度的인 面과 運營的인 面에서 考察하여 개선점을 찾아보고 地方分權과 一般行政으로부터의 分離 獨立을 實現할 수 있는 기틀을 模索하고 現實的으로 우리나라 實情에 맞는 教育自治制度 方案을 提示하였다. 이상에서 考察한 선행연구의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점을 示唆 받을 수 있었다.

55)신용우, ‘지방교육자치 실시에 따른 교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도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pp. 79-82

56)정병술, ‘교육자치에 관한 교육행정가의 인식도 조사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pp. 77-79

57)전성덕, ‘교육자치제의 실태와 발전방향’, 부산대학교 행정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pp. 58-59

58)오경자, ‘한국교육자치제도에 관한 기초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pp. 72-75

첫째, 教育自治의 궁극적인 목적이 민주적인 학교경영을 위한 것에 있다고 볼 때 責務性을 갖는 敎師의 전문적 役割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둘째, 制度的, 外樣的인 변화가 아닌 內的인 변화를 위한 敎師의 認識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교육 관련 集團들 상호간의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III. 研究의 方法 및 節次

1. 研究의 方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 연구를 통해 교육자치제도의 개념과 원리,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이론을 살폈으며 외국의 교육자치제도와 한국 교육자치제도를 비교 분석하였고 질문지를 사용한 조사연구를 통해 서울과 경기 북부의 공립과 사립 초등학교사들의 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인식과 교육자치제의 실시에 따른 초등학교사로서의 역할을 조사, 분석하였다.

2. 調査 對象 및 標集

본 연구를 위하여 제작된 설문지를 서울특별시와 경기 북부 지역의 공. 사립 국민학교를 대상으로 총 380부를 배부하였으며 그 중 서울시내는 220명, 경기 북부지역 160명, 총 380부를 표집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의 배부 및 회수율은 <표 6>과 같다.

<표 6> 설문지의 배부 및 회수 현황

| 대상 | 배부수 | 회수부수 | 회수율 | 사용부수 |
|------|-----|------|---------|------|
| 초등교사 | 380 | 354 | 93.15 % | 350 |

3. 道具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도구는 '교육자치제도에 관한 설문지'이다. 동 설문지는 한국교육자치에 대한 참고 문헌과 관련논문 그리고 지도교수의 지도

하에 질문지를 작성하였으며 설문지의 내용은 한국교육자치제의 실시에 대한 초등교사들의 반응, 한국교육자치제도의 연수실태와 방향, 한국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초등교사들의 인식정도, 한국교육자치제도의 실시에 따른 교사의 참여와 역할, 주민참여의 범위, 단위학교 자치에 대한 견해, 한국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전망 등 8개 영역 27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의 설문 방식은 1개의 등위식 문항을 제외하고는 多支 選擇刑 으로 하였으며 설문지의 영역별 내용구성은 <표 7>과 같다.

<표 7> 설문지의 영역별 내용구성

| 영역 | 문항수 | 문장 번호 |
|-----------------------|-----|-----------|
| 교육자치제 실시에 대한 초등교사의 반응 | 5 | 1번 - 5번 |
| 교육자치제의 연수실태와 방향 | 3 | 6번 - 8번 |
| 교육자치제에 대한 교사의 인식정도 | 11 | 9번 - 19번 |
| 교육자치제의 실시에 따른 교사의 참여 | 1 | 20번 |
| 교육자치제의 실시에 따른 교사의 역할 | 4 | 21번 - 24번 |
| 주민참여의 범위 | 1 | 25번 |
| 단위학교 자치에 대한 견해 | 1 | 26번 |
| 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 | 1 | 27번 |

4. 資料의 處理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각 문항에 대한 반응 분포를 알아 보기위해 본 조사연구의 독립변인인 응답자의 성별, 연령, 직위, 경력, 설립별 근무지별로 각 문항에 대한 반응의 빈도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각 문항에 대한 각 변인별 반응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Chi-square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유의도 검증은 5% 수준과 1%, 0.1% 수준을 기준으로 하였다.

IV. 結果 및 解釋

본 연구의 분석은 연구의 특성상 배경변인에 따른 문항분석을 하였다.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을 증점적으로 분석하여 해석하려고 한다.

1. 教育自治制의 實施에 대한 初等敎師들의 反應

1) 教育自治制의 實施 이후 教育現場에서의 變化與否

교육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교육현장에서의 변화에 대한 반응 여부를 초등 교사들을 대상으로 알아본 결과 분석은 <표 8>과 같다.

<표 8>에 의하면 교육자치제의 실시 이후 교육현장에서의 변화 여부에 대하여 '변화를 느낄 수 없음' 37.6%, '실시는 알았으나 교육현장에서의 변화가 없음' 36.3%, '제도로만 알고 있음' 17.5%, '제도 실시로 교사의 역할에 관심' 8.6%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의 설립별 조사에 있어서는 실제로 얻어진 χ^2 의 값은 8.225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사립 모두 73.9%가 변화를 느낄 수 없거나 실시는 알았으나 현장에서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자치제의 실시에 대하여 교육현장에서의 느낌이 매우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교육자치제의 실시로 교사의 역할에 관심을 가졌다'의 반응은 8.7%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8〉 교육자치제의 실시 이후 교육현장에서의 변화여부 ()%

| 문항 | | 제도변화로만 알고 있음 | 변화를 느낄수 없음 | 제도실시로 교사역할에 관심 | 실시 알았으나 현장 변화없음 | 계 |
|-----|---------|-------------------|------------|----------------|-----------------|-------------|
| 성 별 | 남 | 15(4.36) | 55(15.99) | 10(2.91) | 40(11.63) | 120(34.88) |
| | 여 | 46(13.37) | 73(21.22) | 20(5.81) | 85(24.71) | 224(65.12) |
| | 계 | 61(17.73) | 128(37.21) | 30(8.72) | 125(36.34) | 344(100.00) |
| | | $\chi^2 = 7.018$ | | df = 3 | | p > 0.05 |
| 연령별 | 30세미만 | 12(3.46) | 28(8.07) | 3(0.86) | 17(4.90) | 60(17.29) |
| | 40세미만 | 31(8.93) | 58(16.71) | 10(2.88) | 60(17.29) | 159(45.82) |
| | 50세미만 | 12(3.46) | 26(7.49) | 10(2.88) | 39(11.24) | 87(25.07) |
| | 50세이상 | 6(1.73) | 19(5.48) | 7(2.02) | 9(2.59) | 41(11.81) |
| | 계 | 61(17.58) | 131(37.75) | 30(8.65) | 125(36.02) | 347(100.00) |
| | | $\chi^2 = 17.761$ | | df = 12 | | p > 0.05 |
| 직위별 | 교사 | 51(14.78) | 106(30.72) | 22(6.38) | 96(27.83) | 275(79.71) |
| | 주임교사 | 9(2.61) | 25(7.25) | 8(2.32) | 28(8.10) | 70(20.29) |
| | 계 | 60(17.39) | 131(37.97) | 30(8.70) | 124(35.94) | 345(100.00) |
| | | $\chi^2 = 2.313$ | | df = 3 | | p > 0.05 |
| 경력별 | 1- 10년 | 15(4.31) | 36(10.34) | 5(1.44) | 40(11.49) | 96(27.59) |
| | 11- 20년 | 33(9.48) | 54(15.52) | 13(3.74) | 54(15.52) | 154(44.25) |
| | 21- 30년 | 9(2.59) | 27(7.76) | 7(2.01) | 23(6.61) | 66(18.97) |
| | 31년이상 | 4(1.15) | 14(4.02) | 5(1.44) | 9(2.59) | 32(9.20) |
| | 계 | 61(17.53) | 131(37.64) | 30(8.62) | 126(36.21) | 348(100.00) |
| | | $\chi^2 = 8.225$ | | df = 9 | | p > 0.05 |
| 설립별 | 공립 | 49(14.16) | 104(30.06) | 28(8.09) | 88(25.43) | 269(77.75) |
| | 사립 | 12(3.47) | 26(7.51) | 2(0.58) | 37(10.68) | 77(22.25) |
| | 계 | 61(17.63) | 130(37.57) | 30(8.67) | 125(36.13) | 346(100.00) |
| | | $\chi^2 = 8.728$ | | df = 3 | | p < 0.05 |
| 근무지 | 대도시 | 40(11.49) | 70(20.11) | 16(4.60) | 80(22.99) | 206(59.29) |
| | 중소도시 | 21(6.03) | 61(17.53) | 14(4.02) | 46(13.22) | 142(40.80) |
| | 계 | 61(17.53) | 131(37.64) | 30(8.62) | 126(36.21) | 348(100.00) |
| | | $\chi^2 = 4.217$ | | df = 3 | | p > 0.05 |

이러한 반응으로 보아 교사들은 교육자치제도의 실시 이후로 교육현장에서 느끼는 변화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제도 실시로 교사로서의 어떠한 역할을 가져야 되느냐에 별 관심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2) 教育自治制를 알게된 動機

교육자치제의 실시를 알게된 동기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교육자치제의 실시를 알게된 동기 ()%

| 문항 | | 매스컴 보도를 통하여 | 공문서 발신처 변화를 통하여 | 교육위원 선출 문제에 접하며 | 법률이 통과되면서 | 계 |
|-----|---------|-------------------|-----------------|-----------------|-----------|-------------|
| 성 별 | 남 | 85(24.85) | 8(2.34) | 13(3.80) | 13(3.80) | 119(34.80) |
| | 여 | 150(43.86) | 20(5.85) | 33(9.65) | 20(5.85) | 223(65.20) |
| 계 | | 235(68.71) | 28(8.19) | 46(13.45) | 33(9.65) | 342(100.00) |
| | | $\chi^2 = 1.847$ | | df = 3 | p > 0.05 | |
| 연령별 | 30세미만 | 47(13.62) | 4(1.16) | 3(0.87) | 6(1.74) | 60(17.39) |
| | 40세미만 | 117(33.91) | 9(2.61) | 20(5.80) | 12(3.48) | 158(45.80) |
| | 50세미만 | 53(15.36) | 9(2.61) | 11(3.19) | 13(3.77) | 86(24.93) |
| | 50세이상 | 21(6.09) | 6(1.74) | 12(3.48) | 2(0.58) | 41(11.88) |
| | 계 | 238(68.99) | 28(8.12) | 46(13.34) | 33(9.59) | 354(100.00) |
| | | $\chi^2 = 27.828$ | | df = 12 | p < 0.05 | |
| 직위별 | 교 사 | 194(56.40) | 21(6.10) | 37(10.76) | 22(6.40) | 274(79.65) |
| | 주임교사 | 43(12.50) | 7(2.03) | 9(2.62) | 11(3.20) | 70(20.35) |
| | 계 | 237(68.90) | 28(8.14) | 46(13.37) | 33(9.59) | 344(100.00) |
| | | $\chi^2 = 4.536$ | | df = 3 | p > 0.05 | |
| 경력별 | 1- 10년 | 69(19.94) | 7(2.02) | 9(2.60) | 10(2.89) | 95(27.46) |
| | 11- 20년 | 111(32.08) | 10(2.89) | 18(5.20) | 14(4.05) | 153(44.22) |
| | 21- 30년 | 40(11.56) | 6(1.73) | 13(3.76) | 7(2.02) | 66(19.08) |
| | 31년이상 | 19(5.49) | 5(1.45) | 6(1.73) | 2(0.58) | 32(9.25) |
| | 계 | 239(69.08) | 28(8.09) | 46(13.29) | 33(9.54) | 346(100.00) |
| | | $\chi^2 = 9.034$ | | df = 9 | p > 0.05 | |
| 설립별 | 공 사 | 184(53.49) | 24(6.98) | 34(9.88) | 25(7.27) | 267(77.62) |
| | 립 립 | 54(15.70) | 3(0.87) | 12(3.49) | 8(2.33) | 77(22.38) |
| | 계 | 238(69.19) | 27(7.85) | 46(13.37) | 33(9.59) | 344(100.00) |
| | | $\chi^2 = 2.416$ | | df = 3 | p > 0.05 | |
| 근무지 | 대 도시 | 140(40.46) | 17(4.91) | 27(7.80) | 21(6.07) | 205(59.25) |
| | 중소도시 | 99(28.61) | 11(3.18) | 19(5.49) | 12(3.47) | 141(40.75) |
| | 계 | 239(69.08) | 28(8.09) | 46(13.29) | 33(9.54) | 346(100.00) |
| | | $\chi^2 = 0.338$ | | df = 3 | p > 0.05 | |

<표 9>에 의하면 교육자치제의 실시를 알게된 동기에 대하여 '매스컴의 보도를 통하여'가 69.0% '공문서 발신처의 변화를 통하여' 8.1% '교육위원 선출문제에 접하며' 13.3% '법률이 통과되면서' 9.6% 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 조사하였을 때, 실제로 얻어진 χ^2 의 값은 27.828로서 이는 p = .05 수준에서 요구되는 χ^2 의 값 26.217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령별로 40세 미만 교사의 33.91% 가 교육자치

제 실시를 알게 된 동기를 '매스컴의 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교육에 관계되는 내용에 있어서 어느 연령층보다 시사에 매우 민감함을 알 수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의 정책 변화를 느끼기 보다는 매스컴 보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 교육에 관계되는 정책적인 문제에 관하여 실제 교육현장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3) 教育自治制의 實施 區域 範圍

교육자치제의 실시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10>과 같다.

<표10>에 의하면 교육자치제의 실시에 대한 의견으로 '재정자립도에 따라 실시' 31.2%, '기초단위부터 해야 한다' 29.8%, '인구비율과 지역에 따라' 23.7% '현행대로 광역단위가 좋다' 15.3%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근무지별 조사에 있어서는 실제로 얻어진 χ^2 의 값은 9.219로서 이는 $p = .05$ 수준에서 요구되는 χ^2 의 값 7.815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행대로 광역단위가 좋다' 라는 반응이 근무지별에서 대도시가 9.3% 중소도시가 6.1% 로 대도시가 중소도시 보다 3.2% 더 높게 나타났고, '기초단위부터 실시해야 한다' 가 대도시 14.2% 중소도시 15.6%로 중소도시가 대도시보다 1.4% 더 높게 나타났다. '재정자립도에 따라 실시' 해야 한다는 반응이 대도시 20.5%, 중소도시 10.7%로 대도시가 중소도시보다 9.8%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인구 비율과 지역에 따라 실시' 반응이 대도시가 15.6%, 중소도시 9.1% 로 대도시가 중소도시보다 7.5% 더 높게 나타났다.

<표10> 교육자치제의 실시 구역 범위

()%

| 문항 | | 현행대로 광역 | 기초단위부터 | 재정자립도에 | 인구비율과 | 계 |
|------|---------|------------------|------------|------------|------------|-------------|
| 배경변인 | | 단위가 좋다 | 해야 한다 | 따라 실시 | 지역에 따라 | |
| 성 별 | 남 | 22(6.43) | 40(11.70) | 37(10.82) | 21(6.14) | 120(35.09) |
| | 여 | 31(9.06) | 60(17.54) | 71(20.76) | 60(17.54) | 222(64.91) |
| 계 | | 53(15.50) | 100(29.24) | 108(31.58) | 81(23.68) | 342(100.00) |
| | | $\chi^2 = 5.037$ | | df = 3 | p > 0.05 | |
| 연령별 | 30세미만 | 8(2.32) | 20(5.80) | 20(5.80) | 12(3.48) | 60(17.39) |
| | 40세미만 | 23(6.67) | 46(13.33) | 49(14.29) | 39(11.30) | 157(45.51) |
| | 50세미만 | 15(4.35) | 22(6.38) | 29(8.41) | 20(5.80) | 86(24.93) |
| | 50세이상 | 7(2.03) | 15(4.35) | 10(2.90) | 10(2.90) | 42(12.17) |
| | 계 | 53(15.36) | 103(29.74) | 108(31.30) | 81(23.48) | 345(100.00) |
| | | $\chi^2 = 5.236$ | | df = 12 | p > 0.05 | |
| 직위별 | 교 사 | 36(10.50) | 85(24.78) | 88(25.66) | 64(18.66) | 273(79.59) |
| | 주임교사 | 16(4.66) | 17(4.96) | 19(5.54) | 18(5.25) | 70(20.41) |
| 계 | | 52(15.16) | 102(29.74) | 107(31.20) | 82(23.91) | 343(100.00) |
| | | $\chi^2 = 4.899$ | | df = 3 | p > 0.05 | |
| 경력별 | 1- 10년 | 13(3.76) | 24(6.94) | 39(11.27) | 20(5.78) | 96(27.75) |
| | 11- 20년 | 21(6.07) | 48(13.87) | 46(13.29) | 36(10.40) | 151(43.64) |
| | 21- 30년 | 14(4.05) | 18(5.20) | 16(4.62) | 18(5.20) | 66(19.08) |
| | 31년이상 | 5(1.45) | 13(3.76) | 7(2.02) | 8(2.31) | 33(9.54) |
| | 계 | 53(15.32) | 103(29.77) | 108(31.22) | 82(23.70) | 346(100.00) |
| | | $\chi^2 = 9.527$ | | df = 9 | p > 0.05 | |
| 설립별 | 공 사 | 41(11.92) | 85(24.71) | 80(23.26) | 62(18.02) | 268(77.91) |
| | 립립 | 12(3.49) | 17(4.94) | 27(7.85) | 20(5.810) | 76(22.09) |
| 계 | | 53(15.41) | 103(29.77) | 108(31.21) | 82(23.70) | 346(100.00) |
| | | $\chi^2 = 2.619$ | | df = 3 | p > 0.05 | |
| 근무지 | 대 도시 | 32(9.25) | 49(14.16) | 71(20.52) | 54(15.61) | 206(59.54) |
| | 중소도시 | 21(6.07) | 54(15.61) | 37(10.69) | 28(8.09) | 140(40.46) |
| 계 | | 53(15.32) | 103(29.77) | 108(31.21) | 82(23.70) | 346(100.00) |
| | | $\chi^2 = 9.219$ | | df = 3 | p < 0.05 | |

이러한 반응으로 보아 교육자치를 실시할 구역 범위를 정하는 데는 지방의 재정자립 능력을 고려하여 기초단위부터 실시 해야 하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4) 教育自治에서 強調되어야 할 事項

교육자치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11>과 같다.

〈표11〉 교육자치제에서 강조되어야 할 사항 ()%

| 배경변인 | | 교육의 자주성 | 교육의 전문성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 교육에의 주민 참여 | 계 |
|------|---------|-------------------|-----------|----------------|---------------|-------------|
| 성 별 | 남 | 62(18.02) | 28(8.14) | 24(6.98) | 7(2.03) | 121(35.17) |
| | 여 | 122(35.47) | 71(20.64) | 24(6.98) | 6(1.74) | 223(64.83) |
| | 계 | 184(53.49) | 99(28.78) | 48(13.95) | 13(3.78) | 344(100.00) |
| | | $\chi^2 = 8.853$ | | df = 3 | p < 0.05 | |
| 연령별 | 30세미만 | 24(6.92) | 20(5.76) | 14(4.04) | 1(0.29) | 59(17.000) |
| | 40세미만 | 94(27.09) | 38(10.95) | 20(5.76) | 7(2.02) | 159(45.82) |
| | 50세미만 | 50(14.41) | 25(7.20) | 8(2.31) | 4(1.15) | 87(25.07) |
| | 50세이상 | 19(5.48) | 15(4.32) | 6(1.74) | 2(0.58) | 42(12.11) |
| | 계 | 187(53.89) | 98(28.24) | 48(13.85) | 14(4.03) | 347(100.00) |
| | | $\chi^2 = 14.867$ | | df = 12 | p > 0.05 | |
| 직위별 | 교 사 | 151(43.77) | 81(23.48) | 33(9.57) | 10(2.90) | 275(79.71) |
| | 주임교사 | 35(10.14) | 17(4.93) | 14(4.06) | 4(1.16) | 70(20.29) |
| | 계 | 186(53.91) | 98(28.41) | 47(13.62) | 14(4.06) | 345(100.00) |
| | | $\chi^2 = 3.989$ | | df = 3 | p > 0.05 | |
| 경력별 | 1- 10년 | 54(15.52) | 27(7.76) | 12(3.45) | 3(0.86) | 96(27.59) |
| | 11- 20년 | 87(25.00) | 37(10.63) | 22(6.32) | 7(2.01) | 153(43.97) |
| | 21- 30년 | 34(9.77) | 23(6.61) | 7(2.01) | 2(0.57) | 66(18.97) |
| | 31년이상 | 12(3.45) | 12(3.45) | 7(2.01) | 2(0.57) | 33(9.48) |
| | 계 | 187(53.74) | 99(28.45) | 48(13.79) | 14(4.02) | 348(100.00) |
| | | $\chi^2 = 7.732$ | | df = 9 | p > 0.05 | |
| 설립별 | 공 사 | 138(39.88) | 82(23.70) | 41(11.85) | 8(2.31) | 269(77.25) |
| | 립립 | 47(13.58) | 17(4.91) | 7(2.02) | 6(1.73) | 77(22.25) |
| | 계 | 185(53.47) | 99(28.61) | 48(13.87) | 14(4.05) | 346(100.00) |
| | | $\chi^2 = 7.607$ | | df = 3 | p > 0.05 | |
| 근무지 | 대 도시 | 118(33.91) | 61(17.53) | 16(4.60) | 10(2.87) | 205(58.91) |
| | 중소도시 | 69(19.83) | 38(10.92) | 32(9.20) | 4(1.15) | 143(41.09) |
| | 계 | 187(53.74) | 99(28.45) | 48(13.79) | 14(4.02) | 348(100.00) |
| | | $\chi^2 = 15.535$ | | df = 3 | p < 0.01 | |

〈표11〉에서 보여 주듯이 교육자치제에서 강조되어야 할 사항으로 ‘교육의 자주성이’ 53.7% , ‘교육의 전문성’ 28.5%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13.8% , ‘교육에의 주민 참여’ 4.1% 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성별 조사에 있어서는 실제로 얻어진 χ^2 의 값은 8.853으로서 이는 p = .05 수준에서 요구되는 χ^2 의 값 7.815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근무지별 조사에 있어서는 실제로 얻어진 χ^2 의 값도 15.535 로서 이는 p = .01 수준에서 요구되는 χ^2 의 값 11.345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각 변인별 모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교육자치제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사항으로 '교육의 자주성'을 꼽은 것으로 보아 교육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는 현재에도 초등교육 현장에서 느끼는 교사들의 반응은 '교육의 자주성'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특이한 것은 초등교사들은 '교육에의 주민참여'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5) 教育自治制度에 대한 見解

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초등교사들의 견해를 분석한 결과는 <표12>와 같다. <표12>에 의하면 교육자치제도에 대한 견해로 '교육의 전문성 확보에 꼭 필요'가 47.4% , '교육환경 열악으로 부적절' 25.2% , '기초단체부터 실시' 20.5% , '고등교육 편중으로 실효 불투명' 6.9% 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근무지별 조사에서 교육자치제도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교육 전문성확보에 꼭 필요하다는 반응이 대도시가 33.14% , 중소도시가 14.29% 로 대도시가 18.85%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교육환경 열악으로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대도시 8.86% , 중소도시 16.29% 로 중소도시가 7.43% 더 높게 나타나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반응으로 보아 초등교사 집단에서는 교육자치제를 교육의 자주성 보장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임을 알 수 있다.

<표12> 교육자치제도에 대한 견해

()%

| 문항 | | 교육전문성 확보에 꼭필요 | 교육환경열악으로 부적절 | 기초단체부터 교육자치 실시 | 고등교육편중 실효성불투명 | 계 |
|-----|---------|-------------------|--------------|----------------|---------------|-------------|
| 성 별 | 남 | 64(18.50) | 29(8.38) | 23(6.65) | 5(1.45) | 121(34.97) |
| | 여 | 99(28.61) | 58(16.76) | 49(14.16) | 19(5.49) | 225(65.03) |
| | 계 | 163(47.11) | 87(25.14) | 72(20.81) | 24(6.94) | 346(100.00) |
| | | $\chi^2 = 3.823$ | | df = 3 | | p > 0.05 |
| 연령별 | 30세미만 | 18(5.16) | 23(6.590) | 14(4.010) | 5(1.43) | 60(17.19) |
| | 40세미만 | 77(22.06) | 32(9.17) | 41(11.75) | 10(2.87) | 160(45.85) |
| | 50세미만 | 47(13.47) | 18(5.44) | 14(4.01) | 7(2.01) | 87(24.93) |
| | 50세이상 | 23(6.59) | 14(4.01) | 3(0.86) | 2(0.57) | 42(12.04) |
| | 계 | 165(47.28) | 88(25.21) | 72(20.63) | 24(6.88) | 349(100.00) |
| | | $\chi^2 = 20.855$ | | df = 12 | | p > 0.05 |
| 직위별 | 교 사 | 125(36.02) | 71(20.46) | 61(17.58) | 20(5.76) | 277(79.83) |
| | 주임교사 | 38(10.95) | 17(4.90) | 11(3.17) | 4(1.15) | 70(20.17) |
| | 계 | 163(46.97) | 88(25.36) | 72(20.75) | 24(6.92) | 347(100.00) |
| | | $\chi^2 = 2.292$ | | df = 3 | | p > 0.05 |
| 경력별 | 1- 10년 | 39(11.14) | 20(5.71) | 30(8.57) | 8(2.29) | 97(27.71) |
| | 11- 20년 | 76(27.71) | 38(10.86) | 29(8.29) | 11(3.14) | 154(44.00) |
| | 21- 30년 | 32(9.14) | 20(5.71) | 11(3.14) | 3(0.86) | 66(18.86) |
| | 31년이상 | 19(5.43) | 10(2.86) | 2(0.57) | 2(0.57) | 33(9.43) |
| | 계 | 166(47.43) | 88(25.14) | 72(20.57) | 24(6.86) | 350(100.00) |
| | | $\chi^2 = 13.758$ | | df = 9 | | p > 0.05 |
| 설립별 | 공 립 | 125(35.92) | 76(21.84) | 54(15.52) | 16(4.60) | 271(77.87) |
| | 사 립 | 39(11.21) | 12(3.45) | 18(5.17) | 8(2.30) | 77(22.13) |
| | 계 | 164(47.13) | 88(25.29) | 72(20.69) | 24(6.90) | 348(100.00) |
| | | $\chi^2 = 6.036$ | | df = 3 | | p > 0.05 |
| 근무지 | 대 도시 | 116(33.14) | 31(8.86) | 44(12.57) | 16(4.57) | 207(59.14) |
| | 중소도시 | 50(14.29) | 57(16.29) | 28(8.00) | 8(2.29) | 143(40.86) |
| | 계 | 166(47.43) | 88(25.14) | 72(20.57) | 24(6.86) | 350(100.00) |
| | | $\chi^2 = 29.426$ | | df = 3 | | p < 0.001 |

2. 教育自治制度 研修의 實態와 方向

1) 教育自治制의 實施 以後 關聯 研修 實態와 方向

교육자치제의 실시 이후 교육현장에서의 관련 연수실태를 분석한 결과는 <표13>과 같다.

<표13>에 의하면 교육자치제가 실시되면서 현장에서 교육자치제에 대한 자체 연수 실태에 대하여 '교내연수가 전혀 없었다' 51.2% , '연수는 없었으나

유인물 받음' 28.6 % , '전혀 관심 없다' 12.1 % , '여러번 있었다' 8.2 % 의 순
으로 응답을 보이고 있다.

<표13> 교육자치제의 실시 이후 관련 연수 실태 ()%

| 문항 | | 여러번 있었다 | 교내연수가 전 혀 없었다 | 연수는 없었으 나 유인물받음 | 전혀 관심없다 | 계 |
|--------|---------|--------------------|------------------|--------------------|-----------|-------------|
| 성 별 | 남 | 4(1.18) | 72(21.30) | 26(7.69) | 14(4.14) | 116(34.32) |
| | 여 | 23(6.80) | 103(30.47) | 69(20.41) | 27(7.99) | 222(65.68) |
| | 계 | 27(7.99) | 175(51.78) | 95(28.11) | 41(12.13) | 338(100.00) |
| | | $\chi^2 = 10.208$ | | df = 3 | p < 0.05 | |
| 연령별 | 30세미만 | 3(0.88) | 37(10.85) | 9(2.64) | 8(2.35) | 57(16.72) |
| | 40세미만 | 15(4.40) | 83(23.34) | 49(14.37) | 10(2.93) | 157(46.04) |
| | 50세미만 | 3(0.88) | 42(12.02) | 26(7.62) | 16(4.69) | 86(25.22) |
| | 50세이상 | 7(2.05) | 14(4.10) | 13(3.81) | 7(2.05) | 41(12.02) |
| | 계 | 28(8.21) | 175(51.31) | 97(28.45) | 41(12.02) | 341(100.00) |
| | | $\chi^2 = 25.9666$ | | df = 12 | p < 0.05 | |
| 직위별 | 교 사 | 25(7.37) | 134(39.53) | 80(23.60) | 31(9.14) | 270(79.65) |
| | 주임교사 | 2(0.59) | 39(11.50) | 18(5.31) | 10(2.95) | 69(20.35) |
| | 계 | 27(7.96) | 173(51.03) | 98(28.91) | 41(12.09) | 339(100.00) |
| | | $\chi^2 = 39.54$ | | df = 3 | p > 0.05 | |
| 경력별 | 1- 10년 | 5(1.46) | 56(16.37) | 23(6.73) | 10(2.92) | 94(27.49) |
| | 11- 20년 | 13(3.80) | 77(22.51) | 49(14.33) | 12(3.51) | 151(44.15) |
| | 21- 30년 | 3(0.88) | 30(8.77) | 16(4.68) | 16(4.68) | 65(19.01) |
| | 31년이상 | 7(2.05) | 12(3.51) | 10(2.92) | 3(0.88) | 32(9.36) |
| | 계 | 28(8.19) | 175(51.17) | 98(28.65) | 41(11.99) | 342(100.00) |
| | | $\chi^2 = 24.907$ | | df = 9 | p < 0.01 | |
| 설립별 | 공 사 | 24(7.04) | 134(39.30) | 81(23.75) | 27(7.92) | 266(78.01) |
| | 립 사 | 4(1.17) | 40(11.73) | 17(4.99) | 14(4.11) | 75(21.99) |
| | 계 | 28(8.21) | 174(51.03) | 98(28.74) | 41(12.02) | 341(100.00) |
| | | $\chi^2 = 5.833$ | | df = 3 | p > 0.05 | |
| 근무지 | 대 도시 | 18(5.26) | 110(32.16) | 45(13.16) | 27(7.89) | 200(58.48) |
| | 중소도시 | 10(2.92) | 65(19.01) | 53(15.49) | 14(4.09) | 142(41.52) |
| | 계 | 28(8.19) | 175(51.17) | 98(28.65) | 41(11.99) | 342(100.00) |
| | | $\chi^2 = 9.056$ | | df = 3 | p < 0.05 | |

'연수는 없었으나 유인물 받음'에서 성별로 남자가 7.69 % 여자가 20.41 %
로 여자가 12.81 % 더 높게 나타나 p = .05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
내었고 연령별로 40세 미만이 14.37 % , 30세 미만이 2.54 % 로 40세 미만이
11.73 % 더 높게 나타나 p = .05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교내연수가 전혀 없었다'에서 경력별로 11 - 20년 이하가 22.51 % , 31년 이

상이 3.5 %로 11 - 20년 이하가 19.1% 더 높게 나타나 $p = .01$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변인별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의 교사들이 교육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교육자치에 대한 교내 연수가 전혀 없거나 유인물로 대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반응으로 보아 교육자치제의 실시 이후 교육자치제에 대한 교사의 연수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2) 教育自治制度에 대한 研修

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연수에 대하여 교사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는 <표14>과 같다.

<표14>에 의하면 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연수에 대하여 '교사양성기관의 정규과정으로 채택' 29.4% , '교원연수시 필수로 채택' 28.8 % , '교내 연수로도 충분' 23.6 % , '제도적 내용으로 연수 불필요' 18.2% 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교사양성기관 정규과정 채택'의 반응에서 설립별로 공립이 21.64%, 사립이 7.31%로 공립이 사립보다 14.33% 더 높게 나타나 $p = .05$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있으며 '연수시 필수로 채택'에서 연령별로 40세 미만이 16.34% 50세 이상이 2.92%로 40세 미만이 13.42% 더 높게 나타나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교내 연수로만 충분'에서 성별로 남자 5% 여자 18.83% 로 여자가 13.83% 더 높게 나타나 $p = .05$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반응으로 보아 교육자치제에 대한 연수가 필요하며 교사 양성기관의 정규 교육과정이나 교원연수시 필수과목으로 채택하기를 바라는 교사의

반응이 58.2%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초등교사들은 교육자치제도에 대한

<표14> 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연수 ()%

| 배경변인 | | 문항 | 교내연수로 충분 | 제도적 내용으 로 연수불필요 | 교사양성기관 정규과정채택 | 교원연수 시 필수로 채택 | 계 |
|------|---------|-----------|-------------------|--------------------|------------------|------------------|-------------|
| 성 별 | 남 | | 17(5.00) | 23(6.76) | 44(12.94) | 37(10.88) | 121(35.59) |
| | | 여 | 63(18.53) | 39(11.47) | 56(16.47) | 61(17.94) | 219(64.41) |
| | 계 | 80(23.53) | 62(18.24) | 100(29.41) | 98(28.82) | 340(100.00) | |
| | | | $\chi^2 = 10.524$ | | df = 3 | | p < 0.05 |
| 연령별 | 30세미만 | | 13(3.79) | 8(2.33) | 28(8.16) | 11(3.21) | 60(17.49) |
| | 40세미만 | | 39(11.37) | 19(5.54) | 40(11.66) | 56(16.34) | 154(44.90) |
| | 50세미만 | | 22(6.41) | 19(5.54) | 24(7.00) | 22(6.41) | 87(25.36) |
| | 50세이상 | | 9(2.62) | 15(4.37) | 8(2.33) | 10(2.92) | 42(12.24) |
| | 계 | | 83(24.20) | 61(17.78) | 100(29.15) | 99(28.86) | 343(100.00) |
| | | | $\chi^2 = 29.407$ | | df = 12 | | p < 0.01 |
| 직위별 | 교 사 | | 70(20.53) | 47(13.78) | 78(22.87) | 76(22.29) | 271(79.47) |
| | 주임교사 | | 11(3.23) | 14(4.110) | 22(6.45) | 23(6.74) | 70(20.53) |
| | 계 | | 81(23.75) | 61(17.89) | 100(29.33) | 99(29.03) | 341(100.00) |
| | | | $\chi^2 = 3.193$ | | df = 3 | | p > 0.05 |
| 경력별 | 1- 10년 | | 19(5.52) | 12(3.49) | 34(9.88) | 32(9.30) | 97(28.20) |
| | 11- 20년 | | 42(12.21) | 24(6.98) | 41(11.92) | 41(11.92) | 148(43.02) |
| | 21- 30년 | | 15(4.36) | 17(4.94) | 16(4.65) | 18(5.23) | 66(19.19) |
| | 31년이상 | | 7(2.03) | 9(2.62) | 9(2.62) | 8(2.33) | 33(9.59) |
| | 계 | | 83(24.13) | 62(18.02) | 100(29.07) | 99(28.78) | 344(100.00) |
| | | | $\chi^2 = 10.651$ | | df = 9 | | p > 0.05 |
| 설립별 | 공 사 | | 73(21.35) | 50(14.62) | 74(21.64) | 69(20.18) | 266(77.78) |
| | 립 립 | | 10(2.92) | 12(3.51) | 25(7.31) | 29(8.48) | 76(22.22) |
| | 계 | | 83(24.27) | 62(18.13) | 99(28.95) | 98(28.65) | 342(100.00) |
| | | | $\chi^2 = 8.871$ | | df = 3 | | p < 0.05 |
| 근무지 | 대 도시 | | 48(13.95) | 32(9.30) | 57(16.57) | 68(19.77) | 205(59.59) |
| | 중소도시 | | 35(10.17) | 20(8.72) | 43(12.50) | 31(9.01) | 139(40.41) |
| | 계 | | 83(24.13) | 62(18.02) | 100(29.07) | 99(28.78) | 344(100.00) |
| | | | $\chi^2 = 5.426$ | | df = 3 | | p > 0.05 |

연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수를 담당하는 기관에서는 체계적인 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연수가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3) 教育自治制에 대한 研修內容

교육자치제도의 연수내용에 대한 교사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는 <표15>와 같다.

<표15> 교육자치제에 대한 중점적 연수내용 ()%

| 배경변인 | | 문항 | 제도에 대한 안내 | 교육현장에서 교사의 역할 | 제도실시 따른 문제점, 개선점 | 실질적인 교사 주민참여 문제 | 계 |
|------|---------|----|-------------------|---------------|------------------|-----------------|-------------|
| 성 별 | 남 | | 11(3.35) | 39(11.53) | 26(7.69) | 41(12.13) | 117(34.62) |
| | 여 | | 15(4.44) | 83(24.56) | 58(17.16) | 65(19.23) | 221(65.38) |
| | 계 | | 26(7.69) | 122(36.09) | 84(24.85) | 106(31.36) | 338(100.00) |
| | | | $\chi^2 = 2.239$ | | df = 3 | | p > 0.05 |
| 연령별 | 30세미만 | | 6(1.76) | 26(7.62) | 9(2.64) | 18(5.28) | 59(17.30) |
| | 40세미만 | | 15(4.40) | 58(17.01) | 34(9.97) | 48(14.08) | 155(45.45) |
| | 50세미만 | | 6(1.76) | 25(7.33) | 23(6.74) | 32(9.38) | 86(25.22) |
| | 50세이상 | | 2(0.59) | 13(3.81) | 17(4.98) | 9(2.64) | 41(12.02) |
| | 계 | | 29(8.50) | 122(35.78) | 83(23.34) | 107(31.78) | 341(100.00) |
| | | | $\chi^2 = 15.380$ | | df = 12 | | p > 0.05 |
| 직위별 | 교사 | | 24(7.08) | 96(28.22) | 68(20.06) | 82(24.19) | 270(79.65) |
| | 주임교사 | | 4(1.18) | 24(7.08) | 16(4.72) | 25(7.37) | 69(20.35) |
| | 계 | | 28(8.26) | 120(35.40) | 84(24.78) | 107(31.56) | 339(100.00) |
| | | | $\chi^2 = 1.332$ | | df = 3 | | p > 0.05 |
| 경력별 | 1- 10년 | | 10(2.92) | 34(9.94) | 16(4.68) | 36(10.53) | 96(28.07) |
| | 11- 20년 | | 14(4.09) | 53(15.50) | 34(9.94) | 48(14.04) | 149(43.57) |
| | 21- 30년 | | 3(0.88) | 23(6.73) | 21(6.14) | 18(5.26) | 65(19.01) |
| | 31년이상 | | 2(0.58) | 12(3.51) | 13(3.80) | 5(1.46) | 32(9.36) |
| | 계 | | 29(8.48) | 122(35.67) | 84(25.56) | 107(31.29) | 342(100.00) |
| | | | $\chi^2 = 13.511$ | | df = 9 | | p > 0.05 |
| 설립별 | 공립 | | 21(6.18) | 108(31.76) | 64(18.82) | 71(20.88) | 264(77.65) |
| | 사립 | | 8(2.35) | 14(4.12) | 20(5.88) | 34(10.00) | 76(22.35) |
| | 계 | | 29(8.53) | 122(35.88) | 84(24.71) | 105(30.88) | 340(100.00) |
| | | | $\chi^2 = 14.961$ | | df = 3 | | p < 0.01 |
| 근무지 | 대도시 | | 19(5.56) | 56(16.37) | 55(16.08) | 71(20.76) | 201(58.77) |
| | 중소도시 | | 10(2.92) | 66(19.30) | 29(8.48) | 36(10.53) | 141(41.23) |
| | 계 | | 29(8.48) | 122(35.67) | 84(24.56) | 107(31.29) | 342(100.00) |
| | | | $\chi^2 = 12.982$ | | df = 3 | | p < 0.01 |

<표15>에 의하면 교육자치제도의 연수내용으로 '교육현장에서 교사의 역할' 35.7% , '실질적인 교사, 학생 및 주민참여 문제' 31.3% , '제도실시에 따른 문제점 개선점' 24.8% , '제도에 대한 안내' 8.2% 의 순으로 반응을 보였다. '교육현장에서의 교사역할' 에서 설립별로 공립이 31.76% 사립이 4.12%로 공립이 27.64% 더 높게 나타나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실질적인 교사 학생 및 주민참여 문제' 의 반응에서 근무지별로 대도시가 20.76% 중소도시가 10.53% 로 대도시가 10.23% 더 높게 나타나 p = .01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반응으로 보아 교육자치제에 대한 연수내용의 비중은 교육현장에서
의 초등교사들의 역할과 교사, 학생 및 주민 참여문제를 비롯하여 제도 실시
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체계적인 연수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3. 教育自治制度에 대한 初等教師들의 認識程度

1) 教育委員會의 性格에 대한 認識

현행 교육자치제도에서 교육위원회의 성격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표16> 과 같다.

<표16>에 의하면 교육위원회의 성격에 대한 교사의 인식에 대하여 '위임형
의결기구 44.2% , '지방의회 부속기구 28.1% , '독립형 의결기구' 19.1% , '독
립형 집행기관' 8.6% 의 순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위임형 의결기구'에서 성별로 남자가 13.47% 여자가 30.84%로 여자가
17.37% 더 높게 나타나 $p = .05$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고 경력별
로 11 - 20년 이하가 22.78% 31년 이상 3.55% 로 11 - 20년 이하가 19.23%
더 높게 나타나 $p = .05$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반응으로 보아 교육위원회의 성격에 대한 초등교사들의 인식도에서
교육위원회의 성격을 위임형 의결기구로 응답한 교사는 44.2% 밖에 안된다
것은 초등교사들이 교육위원회의 성격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28.1%의 교사가 교육위원회가 지방의회에 예속되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16> 교육위원회 성격에 대한 인식

()%

| 문항 | | 위임형 의결기구 | 독립형 의결기구 | 독립형 집행기관 | 지방의회 부속기구 | 계 |
|-----|---------|-------------------|-------------|-------------|--------------|-------------|
| 성 별 | 남 | 45(13.47) | 29(8.68) | 5(1.50) | 39(11.68) | 118(35.33) |
| | 여 | 103(30.84) | 39(10.48) | 24(7.19) | 54(16.17) | 216(64.67) |
| | 계 | 148(44.31) | 64(19.16) | 29(8.68) | 93(27.84) | 334(100.00) |
| | | $\chi^2 = 10.291$ | | df = 3 | p < 0.05 | |
| 연령별 | 30세미만 | 16(4.75) | 17(5.04) | 5(1.48) | 19(5.64) | 57(16.91) |
| | 40세미만 | 72(21.36) | 22(6.53) | 17(5.04) | 46(13.65) | 157(46.59) |
| | 50세미만 | 41(12.17) | 14(4.15) | 6(1.78) | 24(7.12) | 85(25.22) |
| | 50세이상 | 19(5.64) | 11(3.26) | 1(0.30) | 7(2.08) | 38(11.28) |
| | 계 | 148(43.92) | 64(19.05) | 29(8.63) | 95(28.27) | 336(100.00) |
| | | $\chi^2 = 17.658$ | | df = 12 | p > 0.05 | |
| 직위별 | 교 사 | 115(34.23) | 51(15.18) | 27(8.04) | 74(24.02) | 267(79.46) |
| | 주임교사 | 33(9.82) | 13(3.87) | 2(0.60) | 21(6.25) | 69(20.54) |
| | 계 | 148(44.05) | 64(19.05) | 29(8.63) | 95(28.27) | 336(100.00) |
| | | $\chi^2 = 3.733$ | | df = 3 | p > 0.05 | |
| 경력별 | 1- 10년 | 27(7.99) | 21(6.21) | 10(2.96) | 35(10.36) | 93(27.51) |
| | 11- 20년 | 77(22.78) | 20(5.92) | 16(4.73) | 38(11.24) | 151(44.67) |
| | 21- 30년 | 33(9.76) | 14(4.14) | 2(0.59) | 16(4.73) | 65(19.23) |
| | 31년이상 | 12(3.55) | 9(2.66) | 1(0.30) | 7(2.07) | 29(8.58) |
| | 계 | 149(44.08) | 64(18.93) | 28(8.58) | 96(28.40) | 338(100.00) |
| | | $\chi^2 = 21.104$ | | df = 9 | p < 0.05 | |
| 설립별 | 공 사 | 114(33.93) | 55(16.37) | 25(7.44) | 67(19.94) | 261(77.68) |
| | 립립 | 35(10.42) | 8(2.38) | 4(1.19) | 28(8.33) | 75(22.32) |
| | 계 | 149(44.35) | 63(18.75) | 29(8.63) | 95(28.27) | 336(100.00) |
| | | $\chi^2 = 7.501$ | | df = 3 | p > 0.05 | |
| 근무지 | 대 도시 | 88(26.04) | 31(9.17) | 14(4.14) | 65(19.23) | 198(58.58) |
| | 중소도시 | 61(18.05) | 33(9.76) | 15(4.44) | 31(9.17) | 140(41.42) |
| | 계 | 149(44.08) | 64(18.93) | 29(8.58) | 96(28.40) | 338(100.00) |
| | | $\chi^2 = 7.293$ | | df = 3 | p > 0.05 | |

2) 豫. 決算 등 一部事項의 地方議會에서의 最終議決에 대한 意見

현행 교육자치제도에서 시.도 교육청이 예산 결산 및 특별 부과금 등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의 최종 의결권을 지방의회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의견을 조사 분석한 결과는 <표17>과 같다.

<표17> 예.결산 등 일부사항의 지방의회에서의 최종의결에 대한 의견()%

| 문항 | | 헌법재판계류 | 지방의회정치 | 지방의회는 동 | 교위에 심의 | 계 |
|------|---------|-------------------|-----------|-----------|------------|-------------|
| 배경변인 | | 증 관 결정남 | 색 관여 우려 | 의권만 부여 | 의결권 부여 | |
| 성 별 | 남 | 4(1.19) | 23(6.85) | 34(10.12) | 57(16.96) | 118(35.12) |
| | 여 | 5(1.49) | 34(10.12) | 58(17.26) | 121(36.01) | 218(64.88) |
| | 계 | 9(2.68) | 57(16.96) | 92(27.38) | 178(52.98) | 336(100.00) |
| | | $\chi^2 = 1.914$ | | df = 3 | p > 0.05 | |
| 연령별 | 30세미만 | 2(0.59) | 11(3.24) | 19(5.60) | 24(7.08) | 56(16.52) |
| | 40세미만 | 9(2.65) | 21(6.19) | 41(12.09) | 85(25.07) | 156(46.02) |
| | 50세미만 | 1(0.29) | 14(4.13) | 22(6.49) | 49(11.45) | 86(25.37) |
| | 50세이상 | 0(0.00) | 11(3.24) | 9(2.65) | 21(6.19) | 41(12.09) |
| | 계 | 12(3.54) | 57(16.81) | 91(26.84) | 171(52.80) | 329(100.00) |
| | | $\chi^2 = 15.660$ | | df = 12 | p > 0.05 | |
| 직위별 | 교 사 | 10(2.95) | 41(12.09) | 74(21.83) | 144(42.48) | 269(79.35) |
| | 주임교사 | 1(0.29) | 16(4.72) | 18(5.31) | 35(10.32) | 70(20.65) |
| | 계 | 11(3.24) | 57(16.81) | 92(27.14) | 179(52.80) | 339(100.00) |
| | | $\chi^2 = 3.010$ | | df = 3 | p > 0.05 | |
| 경력별 | 1- 10년 | 3(0.88) | 14(4.12) | 28(8.24) | 47(13.82) | 92(27.06) |
| | 11- 20년 | 7(2.06) | 21(6.18) | 39(11.47) | 84(24.71) | 151(44.41) |
| | 21- 30년 | 2(0.59) | 15(4.41) | 14(4.12) | 34(10.00) | 65(19.12) |
| | 31년이상 | 0(0.00) | 7(2.06) | 11(3.24) | 14(4.12) | 32(9.41) |
| | 계 | 12(3.53) | 57(16.76) | 92(27.06) | 179(52.65) | 340(100.00) |
| | | $\chi^2 = 7.237$ | | df = 9 | p > 0.05 | |
| 설립별 | 공 사 | 9(2.66) | 48(14.20) | 77(22.78) | 129(38.17) | 263(77.81) |
| | 립 립 | 3(0.89) | 9(2.66) | 15(4.44) | 48(14.20) | 75(22.19) |
| | 계 | 12(3.55) | 57(16.86) | 92(27.22) | 177(52.37) | 338(100.00) |
| | | $\chi^2 = 5.743$ | | df = 3 | p > 0.05 | |
| 근무지 | 대 도시 | 8(2.35) | 27(7.94) | 38(11.18) | 126(37.06) | 199(58.53) |
| | 중소도시 | 4(1.18) | 30(8.82) | 54(15.88) | 53(15.59) | 141(41.47) |
| | 계 | 12(3.53) | 57(16.76) | 92(27.06) | 179(52.65) | 340(100.00) |
| | | $\chi^2 = 24.875$ | | df = 3 | p < 0.001 | |

<표17>에 의하면 예산 결산 등 일부 사항의 지방의회에서의 최종의결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교육 학예에 관한 사항은 전적으로 교위에 심사 의결권을 주어야 한다' 52.7% , '지방의회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동의권만 부여' 27.3% , '지방의회는 정당 추천인으로 구성되어 정치적인 관여 우려' 16.7% '헌법재판소에 계류증 관 결정남' 3.3% 의 순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다.

'敎委에 심의 의결권 부여'에서 근무지별로 대도시 37.06% 중소도시

15.59%로 대도시가 21.47% 더 높게 나타나 $p = .001$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반응으로 보아 시·도 교육청의 예산 결산 및 특별 부과금 등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의 최종 의결권 등 교육, 학예에 관한 사항은 전적으로 교육위원회에 심의 의결권을 주어야 함을 알 수 있다.

3) 教育委員 候補의 資格要件에 대한 見解

교육위원 후보의 자격요건에 대한 교사의 의견을 조사 분석한 결과는 <표 18>과 같다.

<표18>에 의하면 교육위원 후보의 자격요건에 대한 교사의 의견에 대하여 '현직 교사도 참여 자격 부여'가 43.3% , '직능별로 여러 직종 전문가로 구성' 25.8% , '모두 교육경력 혹은 교육행정 경력자' 25.8% , '교육과 이권이 무관한 사람' 12.2% 의 순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직교사도 참여 자격 부여'에서 연령별로 50세 미만 11.92% 50세 이상 3.49%로 50세 미만이 8.43% 더 높게 나타나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근무지별에서도 대도시 28.12% 중소도시 15.36% 로 대도시가 12.76% 더 높게 나타나 $p = .01$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반응으로 보아 교육위원 후보의 자격 요건에 대한 초등교사들의 견해는 교육위원 후보의 자격 요건에 실질적인 교육문제를 다루는 만큼 현직교사도 참여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18〉 교육위원 후보의 자격요건에 대한 견해 ()%

| 배경변인 | | 문항 | 현직교사도 참여자격 부여 | 교육과 이권이 무관한 사람 | 모두 교육및교 육행정 경력자 | 직능별로 여러 직종 전문가 | 계 |
|------|---------|------------|-------------------|-------------------|--------------------|-------------------|-------------|
| 성 별 | 남 여 | | 45(13.20) | 18(5.28) | 27(7.92) | 30(8.80) | 120(35.19) |
| | | | 101(29.62) | 24(7.04) | 37(10.85) | 59(17.30) | 221(64.81) |
| | 계 | 146(42.82) | 42(12.32) | 64(18.77) | 89(26.10) | 341(100.00) | |
| | | | $\chi^2 = 3.764$ | | df = 3 | p > 0.05 | |
| 연령별 | 30세미만 | | 25(7.27) | 13(3.78) | 6(1.74) | 14(4.07) | 58(16.86) |
| | 40세미만 | | 72(10.93) | 16(4.65) | 24(6.98) | 46(13.37) | 158(45.93) |
| | 50세미만 | | 41(11.92) | 7(2.03) | 18(5.23) | 21(6.10) | 87(25.29) |
| | 50세이상 | | 12(3.49) | 6(1.74) | 16(4.65) | 40(11.63) | 40(11.63) |
| | 계 | | 150(43.60) | 42(12.21) | 64(18.60) | 88(25.58) | 344(100.00) |
| | | | $\chi^2 = 26.369$ | | df = 12 | p < 0.01 | |
| 직위별 | 교 사 | | 119(34.80) | 31(9.06) | 51(14.91) | 71(20.76) | 272(79.53) |
| | 주임교사 | | 30(8.77) | 10(2.92) | 13(3.80) | 17(4.97) | 70(20.47) |
| | 계 | | 149(43.57) | 41(11.99) | 64(18.71) | 88(25.73) | 342(100.00) |
| | | | $\chi^2 = 0.470$ | | df = 3 | p > 0.05 | |
| 경력별 | 1- 10년 | | 46(13.33) | 14(4.06) | 8(2.32) | 26(7.54) | 94(27.25) |
| | 11- 20년 | | 67(19.42) | 16(4.64) | 30(8.70) | 40(11.59) | 153(44.35) |
| | 21- 30년 | | 27(7.83) | 6(1.74) | 15(4.35) | 17(4.93) | 65(18.84) |
| | 31년이상 | | 10(2.90) | 6(1.74) | 11(3.19) | 6(1.74) | 33(9.57) |
| | 계 | | 150(43.48) | 42(12.17) | 64(18.55) | 89(25.80) | 345(100.00) |
| | | | $\chi^2 = 15.087$ | | df = 9 | p > 0.05 | |
| 설립별 | 공 사 | | 116(33.82) | 37(10.79) | 48(13.99) | 65(18.95) | 266(77.55) |
| | 립립 | | 33(9.62) | 5(1.46) | 16(4.66) | 33(9.62) | 77(22.45) |
| | 계 | | 149(43.44) | 42(12.24) | 64(18.66) | 88(25.66) | 343(100.00) |
| | | | $\chi^2 = 3.617$ | | df = 3 | p > 0.05 | |
| 근무지 | 대 도시 | | 97(28.12) | 10(2.90) | 34(9.86) | 55(15.84) | 206(59.71) |
| | 중소도시 | | 53(15.36) | 32(9.28) | 30(8.70) | 24(6.96) | 139(40.29) |
| | 계 | | 150(43.48) | 42(12.17) | 64(18.55) | 89(25.80) | 345(100.00) |
| | | | $\chi^2 = 31.754$ | | df = 3 | p < 0.01 | |

4) 教育委員會 活動에 대한 住民 및 教育現場에서의 認識程度

교육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주민 및 교육현장에서의 인식정도를 조사 분석한 결과는 〈표19〉와 같다.

〈표19〉에 의하면 교육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주민 및 교육현장에서의 인식 정도에 대하여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어 활동내용을 알 수 없다'가 40.5% , '전혀 관심없다' 31.6% , '비교적 홍보되나 관심 적다' 25.6% , '회기 및 기타 활동에 관심 크다' 2.3% 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19> 교육위원회 활동에 대한 주민 및 교육현장의 인식정도 ()%

| 문항 | | 전혀관심 없다 | 비교적 홍보되 나 관심적다 | 회기및 기타활 동에 관심크다 | 전혀 알려지지 않아 활동모름 | 계 |
|-----|---------|-------------------|-------------------|--------------------|--------------------|-------------|
| 성 별 | 남 | 46(13.45) | 17(4.97) | 2(0.58) | 54(15.79) | 119(34.80) |
| | 여 | 60(17.54) | 71(20.76) | 6(1.75) | 86(25.15) | 223(65.20) |
| | 계 | 106(30.99) | 88(25.73) | 8(2.34) | 140(40.94) | 342(100.00) |
| | | $\chi^2 = 13.965$ | | df = 3 | p < 0.01 | |
| 연령별 | 30세미만 | 28(8.12) | 4(1.16) | 3(0.87) | 24(6.96) | 59(17.10) |
| | 40세미만 | 46(13.33) | 43(12.46) | 4(1.16) | 65(18.84) | 158(45.80) |
| | 50세미만 | 26(7.54) | 23(6.67) | 0(0.00) | 38(11.01) | 87(25.22) |
| | 50세이상 | 10(2.90) | 18(5.22) | 1(0.29) | 12(3.48) | 41(11.88) |
| | 계 | 110(31.88) | 88(25.51) | 8(2.32) | 139(40.29) | 345(100.00) |
| | | $\chi^2 = 27.830$ | | df = 12 | p < 0.01 | |
| 직위별 | 교 사 | 87(25.36) | 73(25.18) | 7(2.04) | 107(31.20) | 274(79.88) |
| | 주임교사 | 22(6.41) | 15(4.37) | 1(0.29) | 31(9.04) | 69(20.12) |
| | 계 | 109(31.78) | 88(25.66) | 8(2.33) | 138(40.23) | 343(100.00) |
| | | $\chi^2 = 1.279$ | | df = 3 | p > 0.05 | |
| 경력별 | 1- 10년 | 32(9.25) | 14(4.05) | 3(0.87) | 47(13.58) | 96(27.75) |
| | 11- 20년 | 51(14.74) | 43(12.43) | 4(1.16) | 54(15.61) | 152(43.93) |
| | 21- 30년 | 17(4.91) | 17(4.91) | 0(0.00) | 32(9.25) | 62(12.08) |
| | 31년이상 | 10(2.89) | 14(4.05) | 1(0.29) | 7(2.02) | 32(9.25) |
| | 계 | 110(31.79) | 88(25.43) | 8(2.31) | 140(40.46) | 346(100.00) |
| | | $\chi^2 = 18.503$ | | df = 9 | p < 0.05 | |
| 설립별 | 공 사 | 89(25.80) | 71(20.58) | 7(2.03) | 102(29.57) | 269(77.97) |
| | 립립 | 20(5.80) | 17(4.93) | 1(0.29) | 38(11.01) | 76(22.03) |
| | 계 | 109(31.59) | 88(25.51) | 8(2.31) | 140(40.58) | 345(100.00) |
| | | $\chi^2 = 3.791$ | | df = 3 | p > 0.05 | |
| 근무지 | 대 도시 | 57(16.47) | 49(14.16) | 5(1.45) | 95(27.46) | 206(59.54) |
| | 중소도시 | 53(15.32) | 39(11.27) | 3(0.87) | 45(13.01) | 140(40.46) |
| | 계 | 110(31.79) | 88(25.43) | 8(2.31) | 140(40.46) | 346(100.00) |
| | | $\chi^2 = 7.316$ | | df = 3 | p > 0.05 | |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어 활동내용을 알 수 없다’에서 성별로 남자가 15.79% 여자가 25.10% 로 여자가 9.31% 더 높게 나타나 p = .01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고 연령별로 40세 미만이 18.84% 50세 이상이 3.48% 로 40세 미만이 15.36% 더 높게 나타나 p = .01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며 경력별 11 - 20년 이하 15.61% 31년 이상 2.02% 로 11 - 20년 이하가 13.59% 더 높게 나타나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반응으로 보아 교육위원회의 활동에 대하여 초등교사들과 지역 주민들이 활동내용을 전혀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것이 72.1%로 나타나 교육위

원회의 홍보 부족으로 활동내용을 교사들이나 주민들이 잘 알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5) 教育委員會의 住民 請願 處理 機能에 대한 住民 反應에 대한 見解

교육위원회의 주민 청원에 대한 처리 기능에 대한 초등교사들의 견해를 조사 분석한 결과는 <표20>과 같다.

<표20>교위의 주민청원 처리기능에 대한 주민 반응에 대한 견해 (%)

| 문항 | | 주민권리주장 약한 편임 | 적극적이며 청 원창구 원할함 | 주민 청원 사 항을 잘 모름 | 교위 기능에 대해 잘 모름 | 계 |
|-----|---------|-------------------|--------------------|--------------------|-------------------|-------------|
| 성 별 | 남 | 27(7.96) | 19(5.60) | 12(3.54) | 59(17.40) | 117(34.51) |
| | 여 | 51(15.04) | 22(6.49) | 32(9.44) | 117(34.51) | 222(65.49) |
| | 계 | 78(23.01) | 41(12.09) | 44(12.98) | 176(51.92) | 339(100.00) |
| | | $\chi^2 = 3.635$ | | df = 3 | p > 0.05 | |
| 연령별 | 30세미만 | 10(2.92) | 15(4.39) | 5(1.16) | 27(7.89) | 57(16.67) |
| | 40세미만 | 32(9.36) | 15(4.39) | 23(6.73) | 88(25.73) | 158(46.20) |
| | 50세미만 | 27(7.89) | 5(1.46) | 8(2.34) | 47(13.74) | 87(15.44) |
| | 50세이상 | 12(3.51) | 6(1.75) | 8(2.34) | 14(4.09) | 40(11.69) |
| | 계 | 82(23.68) | 41(11.99) | 44(12.87) | 39(51.46) | 342(100.00) |
| | | $\chi^2 = 27.479$ | | df = 12 | p < 0.01 | |
| 직위별 | 교 사 | 66(19.41) | 29(8.54) | 36(10.59) | 140(40.18) | 271(79.71) |
| | 주임교사 | 13(3.82) | 12(3.53) | 8(2.35) | 36(10.59) | 69(20.29) |
| | 계 | 79(23.24) | 41(12.06) | 44(12.94) | 176(51.76) | 340(100.00) |
| | | $\chi^2 = 2.885$ | | df = 3 | p > 0.05 | |
| 경력별 | 1- 10년 | 16(4.66) | 12(3.50) | 10(2.92) | 56(16.33) | 94(27.41) |
| | 11- 20년 | 35(10.20) | 15(4.37) | 20(5.83) | 82(23.91) | 152(44.31) |
| | 21- 30년 | 22(6.41) | 7(2.04) | 8(2.33) | 29(8.45) | 66(19.24) |
| | 31년이상 | 8(2.33) | 7(2.04) | 6(1.75) | 10(2.92) | 31(9.04) |
| | 계 | 81(23.62) | 41(11.95) | 44(12.83) | 177(51.60) | 343(100.00) |
| | | $\chi^2 = 13.828$ | | df = 9 | p > 0.05 | |
| 설립별 | 공 사 | 64(18.77) | 39(11.44) | 35(10.26) | 129(37.83) | 267(78.30) |
| | 립 사 | 16(4.69) | 2(0.59) | 9(2.64) | 47(13.78) | 74(21.70) |
| | 계 | 80(23.46) | 41(12.02) | 44(12.90) | 176(51.61) | 341(100.00) |
| | | $\chi^2 = 9.599$ | | df = 3 | p < 0.05 | |
| 근무지 | 대 도시 | 49(14.29) | 12(3.50) | 25(7.29) | 116(33.82) | 202(58.89) |
| | 중소도시 | 32(9.33) | 29(8.45) | 19(5.54) | 61(17.78) | 141(41.11) |
| | 계 | 81(23.62) | 41(11.95) | 44(12.83) | 177(51.60) | 343(100.00) |
| | | $\chi^2 = 18.254$ | | df = 3 | p < 0.01 | |

<표20>에 의하면 교육위원회의 주민 청원 처리 기능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

을 교사들의 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교육위원회 기능에 대해 잘 모름'이 51.7% , '주민 권리 주장이 약한 편' 23.4% , '주민 청원사항 잘 모름' , 12.9% '적극적이며 청원창구 원활함' 12.0% 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위원회 기능에 대해 잘 모름'에서 연령별로 40세 미만 25.73% 50세 이상 4.09% 로 40세 미만이 21.64% 더 높게 나타나 $p = .01$ 수준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으며 근무지별로 대도시가 33.82% 중소도시 17.78%로 대도시가 16.04% 더 높게 나타나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반응으로 보아 교육위원회의 주민 청원 처리 기능에 대하여 주민들의 반응에 대한 초등교사 대다수의 응답자가 교육위원회가 대의기관으로서의 주민 청원의 처리 기능에 대하여 인식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6) 教育委員 選出에 있어서 二重 間選制에 대한 認識

교육위원 선출이 기초단위 의회의 추천으로 광역 자치단체에서 선출되는 이중 간선제에 대한 초등교사들의 인식을 조사 분석한 결과는 <표21> 과 같다.

<표21>에 의하면 교육위원 선출방식에 대하여 '순수 교사들만이 직선으로 선출'이 44.0% , '주민 직선으로 바꾸어야 한다' 34.2% , '적절한 제도이다' 11.0% , '의회 추천으로 단체장이 임명' 10.8% 의 순으로 나타났다.

'순수 교사들만이 직선으로 선출'에서 성별로 남자 12.12% 여자 31.52%로 여자가 19.4% 더 높게 나타나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주민 직선으로 바꾸어야 한다'에서 근무지별로 대도시 16.17% 중소도시 17.96%로 중소도시가 1.79% 더 높게 나타나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표21> 교육위원 선출에 있어서 이중 간선제에 대한 인식 ()%

| 배경변인 | | 문항 | 적절한 제도 이다 | 주민직선으로 바꾸어야 한다 | 순수 교사들이 직선으로 선출 | 의회 추천으로 단체장 임명 | 계 |
|------|--------------|-----------|-------------------|-------------------|--------------------|-------------------|-------------|
| 성 별 | 남 여 | | 9(2.73) | 58(17.58) | 40(12.12) | 6(1.82) | 113(33.24) |
| | | | 28(8.48) | 56(16.97) | 104(31.52) | 29(8.79) | 217(65.76) |
| | 계 | 37(11.21) | 114(34.55) | 144(43.64) | 35(10.61) | 330(100.00) | |
| | | | $\chi^2 = 22.844$ | df = 3 | p < 0.01 | | |
| 연령별 | 30세미만 | | 8(2.40) | 24(7.21) | 15(4.50) | 8(2.40) | 55(16.52) |
| | 40세미만 | | 17(5.11) | 46(13.81) | 75(25.52) | 16(4.80) | 154(46.25) |
| | 50세미만 | | 7(2.10) | 28(8.41) | 39(11.71) | 10(3.00) | 84(25.23) |
| | 50세이상 | | 5(1.50) | 16(4.80) | 18(5.41) | 1(0.30) | 40(12.01) |
| | 계 | | 37(11.11) | 114(34.23) | 147(44.14) | 35(10.51) | 333(100.00) |
| | | | $\chi^2 = 19.774$ | df = 12 | p > 0.05 | | |
| 직위별 | 교 사 주임교사 | | 32(9.67) | 83(25.08) | 119(35.95) | 31(9.37) | 265(80.06) |
| | | | 4(1.31) | 31(9.37) | 26(7.85) | 5(1.51) | 66(19.94) |
| | 계 | 36(10.88) | 114(34.13) | 147(44.01) | 36(10.78) | 334(100.00) | |
| | | | $\chi^2 = 6.707$ | df = 3 | p > 0.05 | | |
| 경력별 | 1- 10년 | | 12(3.59) | 33(9.88) | 35(10.48) | 12(3.59) | 92(27.54) |
| | 11- 20년 | | 15(4.49) | 42(12.57) | 76(22.75) | 15(4.49) | 148(44.31) |
| | 21- 30년 | | 9(2.69) | 23(6.89) | 24(7.19) | 7(2.10) | 63(18.86) |
| | 31년이상 | | 1(0.30) | 16(4.79) | 12(3.59) | 2(0.60) | 31(9.28) |
| | 계 | | 37(11.08) | 114(34.13) | 147(44.01) | 36(10.78) | 334(100.00) |
| | | | $\chi^2 = 11.441$ | df = 9 | p > 0.05 | | |
| 설립별 | 공 사 립 립 | | 31(9.34) | 96(28.92) | 107(32.23) | 26(7.83) | 260(78.31) |
| | | | 5(1.51) | 17(5.12) | 40(12.05) | 10(3.01) | 72(21.69) |
| | 계 | 36(10.84) | 113(34.04) | 147(44.28) | 36(10.84) | 332(100.00) | |
| | | | $\chi^2 = 7.652$ | df = 3 | p > 0.05 | | |
| 근무지 | 대 도시 중소도시 | | 21(6.29) | 54(16.17) | 98(29.34) | 23(6.89) | 196(58.68) |
| | | | 16(4.79) | 60(17.96) | 49(14.67) | 13(3.89) | 138(41.32) |
| | 계 | 37(11.08) | 114(34.13) | 147(44.01) | 36(10.78) | 334(100.00) | |
| | | | $\chi^2 = 10.343$ | df = 3 | p < 0.05 | | |

이러한 반응으로 보아 교육위원 선출방식에 대한 초등교사들 대부분은 순수 교사들만이 직접 선출로 교육위원을 뽑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주민직선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그 이유로는 교육문제에 관하여는 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교육위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과 주민들의 의사가 지방교육행정에 받아들여 질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기 때문으로 사려된다.

7) 教育委員會에 대한 市.道議會의 監査 調査 與否

교육위원회의 감사 조사 결과를 시.도의회에 보고하고 특정사안에 대해 시.도의회 자체 의결로 감사 조사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교사의 의견을 조사 분석한 결과는 <표22>와 같다.

<표22> 교육위원회에 대한 시.도의회 감사 조사 여부 ()%

| 문항 | | 특정사안에 한 | 여러번하면 좋 | 중복은 교위에 | 政黨성으로 정 | 계 |
|------|---------|-------------------|-----------|-----------|------------|-------------|
| 배경변인 | | 하므로 필요함 | 으므로 괜찮음 | 대한 권한침해 | 치적통제 우려 | |
| 성 별 | 남 | 38(11.21) | 8(2.36) | 30(8.85) | 42(12.39) | 118(34.81) |
| | 여 | 60(17.70) | 24(7.08) | 57(16.81) | 80(23.60) | 221(65.19) |
| | 계 | 98(28.91) | 32(9.44) | 87(25.66) | 122(35.99) | 339(100.00) |
| | | $\chi^2 = 2.048$ | | df = 3 | p > 0.05 | |
| 연령별 | 30세미만 | 18(5.26) | 2(0.58) | 15(4.39) | 24(7.02) | 59(17.25) |
| | 40세미만 | 46(13.45) | 16(4.68) | 35(10.23) | 60(17.54) | 157(45.91) |
| | 50세미만 | 27(7.89) | 6(1.75) | 22(6.43) | 30(8.77) | 85(24.85) |
| | 50세이상 | 7(2.04) | 9(2.63) | 14(4.09) | 11(3.22) | 41(11.99) |
| | 계 | 98(28.65) | 33(9.65) | 86(25.15) | 125(36.55) | 342(100.00) |
| | | $\chi^2 = 18.754$ | | df = 12 | p > 0.05 | |
| 직위별 | 교 사 | 78(22.87) | 25(7.33) | 74(21.70) | 96(28.15) | 273(80.06) |
| | 주임교사 | 19(5.57) | 7(2.05) | 13(3.83) | 29(8.50) | 68(11.94) |
| | 계 | 97(28.45) | 32(9.38) | 87(25.51) | 125(33.66) | 341(100.00) |
| | | $\chi^2 = 2.276$ | | df = 3 | p > 0.05 | |
| 경력별 | 1- 10년 | 29(8.45) | 5(1.46) | 23(6.71) | 38(11.08) | 95(27.70) |
| | 11- 20년 | 44(12.83) | 16(4.66) | 37(10.79) | 54(15.74) | 151(44.02) |
| | 21- 30년 | 19(5.54) | 6(1.75) | 17(4.96) | 23(6.71) | 65(18.95) |
| | 31년이상 | 6(1.75) | 6(1.75) | 10(2.92) | 10(2.92) | 32(9.33) |
| | 계 | 98(28.57) | 33(9.62) | 86(25.36) | 125(36.44) | 343(100.00) |
| | | $\chi^2 = 7.194$ | | df = 9 | p > 0.05 | |
| 설립별 | 공 사 | 73(19.83) | 26(7.62) | 67(19.65) | 99(29.03) | 265(77.71) |
| | 립 사 | 24(7.04) | 7(2.05) | 19(5.57) | 26(7.62) | 76(22.29) |
| | 계 | 97(28.45) | 33(9.68) | 86(25.22) | 125(36.66) | 341(100.00) |
| | | $\chi^2 = 0.521$ | | df = 3 | p > 0.05 | |
| 근무지 | 대 도시 | 68(19.83) | 18(5.25) | 58(16.91) | 59(17.20) | 203(59.18) |
| | 중소도시 | 30(8.75) | 15(4.37) | 29(8.45) | 66(19.24) | 140(40.82) |
| | 계 | 98(28.57) | 33(9.62) | 87(85.36) | 125(36.44) | 343(100.00) |
| | | $\chi^2 = 13.966$ | | df = 3 | p < 0.01 | |

<표22>에 의하면 '政黨성으로 정치적 통제가 우려된다' 36.4% , '특정사안에 한하므로 필요함' 28.6% , '중복은 교위에 대한 권한 침해' 25.4% , '여러번 하면 좋으므로 괜찮음' 9.6% 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의회 政黨성으로 정치적 통제가 우려된다' 에서 근무지별로 대도시

가 17.20% 중소도시 19.24% 로 중소도시가 2.04% 더 높게 나타나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반응으로 보아 교육위원회의 감사 조사 결과를 시.도 의회에 보고하고 특정 사안에 대해 시.도 의회 자체 의결로 감사 조사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초등교사들은 대체로 시.도 의회 의원들이 政黨성을 띠고 있으므로 정치적 간섭이 우려된다는 의견과 함께 중복 감사는 교육위원회에 대한 권한 침해라는 의견이 대부분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육적 사안이 정치적 간섭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함께 교육에 대한 권한 침해에 따른 교사들의 걱정의 목소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8) 敎育監의 選出 方法에 대한 意見

교육감의 선출제도에 대하여 초등교사들의 반응을 조사 분석한 결과는 <표 23>과 같다.

<표23>에 의하면 교육감의 선출 제도에 관하여 '교원들이 직접 선출'이 47.3% , '학교급별 대의원이 간접선거' 27.1% , '학교급별 대의원과 기초의회의원들이 선출' 22.1% , '기초의회의원들만 선출' 3.5% 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원들이 직접 선출'에서 성별로 남자 18.77% 여자 28.45% 로 여자가 9.68% 더 높게 나타나 $p = .01$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반응으로 보아 교육감의 선출제도에 대한 초등교사의 대다수가 교육문제를 지휘.감독하는 교육감 선출방법에 대하여 교사들이 직접 선출에 의해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이 보장될 수 있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23〉 교육감의 선출방법에 관한 의견

()%

| 배경변인 | | 문항 | 교원들이 직접 선출 | 학교급별 대위 원이 간접선거 | 학교별대위원, 기초의원 선출 | 기초의회 의원 들만 선출 | 계 |
|------|---------|------------|-------------------|--------------------|--------------------|------------------|-------------|
| 성 별 | 남 여 | | 64(18.77) | 23(6.74) | 21(6.16) | 9(2.64) | 117(34.31) |
| | | | 97(28.45) | 70(20.53) | 54(15.84) | 3(0.88) | 224(65.69) |
| | 계 | 161(47.21) | 93(27.27) | 75(21.99) | 12(3.52) | 341(100.00) | |
| | | | $\chi^2 = 16.041$ | | df = 3 | p < 0.01 | |
| 연령별 | 30세미만 | | 35(10.17) | 13(3.78) | 12(3.49) | 0(0.00) | 60(17.44) |
| | 40세미만 | | 82(23.84) | 39(11.34) | 31(9.01) | 5(1.45) | 157(45.64) |
| | 50세미만 | | 34(9.88) | 24(6.98) | 23(6.69) | 6(1.74) | 87(25.29) |
| | 50세이상 | | 13(3.78) | 17(4.94) | 9(2.62) | 1(0.29) | 40(11.63) |
| | 계 | | 164(47.67) | 93(27.03) | 75(21.80) | 12(3.49) | 344(100.00) |
| | | | $\chi^2 = 18.002$ | | df = 12 | p > 0.05 | |
| 직위별 | 교 사 | | 127(37.13) | 79(23.10) | 59(17.25) | 8(2.34) | 273(79.82) |
| | 주임교사 | | 34(9.94) | 14(4.09) | 17(4.97) | 4(1.17) | 69(20.18) |
| | 계 | | 161(47.08) | 93(27.19) | 76(22.22) | 12(3.51) | 342(100.00) |
| | | | $\chi^2 = 3.121$ | | df = 3 | p > 0.05 | |
| 경력별 | 1- 10년 | | 49(14.20) | 24(6.96) | 22(6.38) | 1(0.29) | 96(27.83) |
| | 11- 20년 | | 77(22.32) | 38(11.01) | 31(8.99) | 6(1.74) | 152(44.06) |
| | 21- 30년 | | 26(7.54) | 22(6.38) | 14(4.06) | 4(1.16) | 66(19.13) |
| | 31년이상 | | 12(3.48) | 9(2.61) | 9(2.61) | 1(0.29) | 81(8.98) |
| | 계 | | 164(47.54) | 93(26.96) | 76(22.03) | 12(3.48) | 345(100.00) |
| | | | $\chi^2 = 7.320$ | | df = 9 | p > 0.05 | |
| 설립별 | 공 사 | | 128(37.32) | 70(20.41) | 62(18.08) | 8(2.33) | 268(78.13) |
| | 립 사 | | 34(9.91) | 23(6.71) | 14(4.08) | 4(1.17) | 75(21.87) |
| | 계 | | 162(47.23) | 93(27.11) | 76(22.16) | 12(3.50) | 343(100.00) |
| | | | $\chi^2 = 1.972$ | | df = 3 | p > 0.05 | |
| 근무지 | 대 도시 | | 92(26.67) | 53(15.36) | 52(15.07) | 7(2.03) | 203(59.13) |
| | 중소도시 | | 72(20.87) | 40(11.59) | 24(6.96) | 5(1.45) | 141(40.87) |
| | 계 | | 164(47.54) | 93(26.96) | 76(22.03) | 12(3.48) | 345(100.00) |
| | | | $\chi^2 = 3.518$ | | df = 3 | p > 0.318 | |

9) 副教育監 制度에 대한 意見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제도에 대한 초등교사들의 의견을 조사 분석한 결과는 〈표24〉와 같다.

〈표24〉에 의하면 부교육감 제도를 설치한 것에 대하여 '교원단체의 추천과 교육위원 투표로 선출'이 36.8% , '불필요한 제도로 재정의 낭비' 31.2% , '보좌기능은 특별위원회로 가능' 25.6% , '국가공무원 자격은 자치권 침해' 6.4%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24> 부 교육감 제도에 대한 의견 ()%

| 배경변인 | | 문항 | 불필요한제도 재정의 낭비 | 국가공무원자 격, 자치권침해 | 교원단체추천, 교육위원투표 | 보좌기능, 특별 위원회로 가능 | 계 |
|------|---------|-----|-------------------|--------------------|-------------------|---------------------|-------------|
| 성 별 | 남 | | 40(11.76) | 6(1.76) | 37(10.88) | 33(9.71) | 116(34.12) |
| | 여 | | 65(19.12) | 16(4.71) | 89(26.18) | 54(15.88) | 224(65.88) |
| | | 계 | 105(30.88) | 22(6.47) | 126(37.06) | 87(25.59) | 340(100.00) |
| | | | $\chi^2 = 3.027$ | | df = 3 | p > 0.05 | |
| 연령별 | 30세미만 | | 27(7.87) | 1(0.29) | 16(4.66) | 14(4.08) | 58(16.91) |
| | 40세미만 | | 42(12.24) | 17(4.96) | 56(16.33) | 43(12.54) | 158(46.06) |
| | 50세미만 | | 26(7.58) | 1(0.29) | 35(10.20) | 24(7.00) | 86(25.07) |
| | 50세이상 | | 13(3.79) | 3(0.87) | 18(5.25) | 7(2.04) | 41(11.95) |
| | 계 | | 108(31.49) | 22(6.41) | 125(36.44) | 88(25.66) | 343(100.00) |
| | | | $\chi^2 = 21.977$ | | df = 12 | p < 0.05 | |
| 직위별 | 교 사 | | 84(24.63) | 16(4.69) | 102(29.91) | 71(20.82) | 273(80.06) |
| | 주임교사 | | 22(6.45) | 6(1.76) | 23(6.74) | 17(4.99) | 68(19.94) |
| | 계 | | 106(31.09) | 22(6.45) | 125(36.66) | 88(25.81) | 341(100.00) |
| | | | $\chi^2 = 0.992$ | | df = 3 | p > 0.05 | |
| 경력별 | 1- 10년 | | 32(9.30) | 4(1.16) | 34(9.88) | 25(7.27) | 95(27.62) |
| | 11- 20년 | | 40(11.63) | 14(4.07) | 58(16.86) | 40(11.63) | 152(44.19) |
| | 21- 30년 | | 22(6.40) | 1(0.29) | 23(6.69) | 19(5.52) | 65(18.90) |
| | 31년이상 | | 14(4.07) | 3(0.87) | 11(3.20) | 4(1.16) | 32(9.30) |
| | 계 | | 108(31.40) | 22(6.40) | 126(36.63) | 88(25.58) | 344(100.00) |
| | | | $\chi^2 = 11.241$ | | df = 9 | p > 0.05 | |
| 설립별 | 공 사 | 립 립 | 98(28.65) | 15(4.39) | 97(28.36) | 57(16.67) | 267(78.07) |
| | 사 립 | 립 립 | 9(2.63) | 7(2.05) | 29(8.48) | 30(8.77) | 75(21.93) |
| | 계 | | 107(31.29) | 22(6.43) | 126(36.84) | 87(25.44) | 342(100.00) |
| | | | $\chi^2 = 20.772$ | | df = 3 | p < 0.01 | |
| 근무지 | 대 도시 | | 43(12.50) | 12(3.49) | 79(22.97) | 68(19.77) | 202(58.72) |
| | 중소도시 | | 65(18.90) | 10(2.91) | 47(13.66) | 20(5.81) | 142(41.28) |
| | 계 | | 108(31.40) | 22(6.40) | 126(36.63) | 88(25.58) | 344(100.00) |
| | | | $\chi^2 = 29.401$ | | df = 3 | p < 0.01 | |

‘교원단체 추천과 교육위원 투표로 선출’에서 연령별로 40세 미만 16.33% 50세 이상 5.25% 로 40세 미만이 11.08% 더 높게 나타나 p = .05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설립별로 공립 28.36% 사립 8.48%로 공립이 19.88% 더 높게 나타나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근무지별로 대도시 22.97% 중소도시 13.66% 로 대도시가 9.31% 더 높게 나타나 p = .01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반응으로 보아 부교육감 제도에 대하여 초등교사의 대부분은 필요

하면 교원단체의 추천과 교육위원의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부교육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함은 교육의 전문성 확보와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도 부당하며 불필요한 제도로 재정의 낭비로 생각하여 부교육감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10) 教育委員會와 地方議會의 二重的 構造로 財政支援이 遲延되는 事例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의 이중적 구조로 인해 교육현장의 재정적 지원이 지연되어 교육활동에 정상적인 운영이 늦어지는 사태에 대한 초등교사들의 의견을 조사 분석한 결과는 <표25>와 같다.

<표25>에 의하면 교육현장에 재정적 지원이 지연되어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차질을 빚는 것에 대한 인식으로 '예상된 사항으로 교육재정을 최우선으로 집행' 64.3% , '일시적 현상으로 곧 개선' 25.8% , '부득이한 현상으로 어쩔 수 없다' 6.5% , '관심없다' 3.4% 의 순으로 나타났다.

'예상된 사항으로 교육재정 최우선 집행'에서 경력별로 11 - 20년 이하 29.18% 31년이상 6.09% 로 11 - 20년 이하가 23.09% 더 높게 나타나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설립별 조사에서도 공립 48.40% 사립 15.74% 로 공립이 32.66% 더 높게 나타나 $p = .05$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반응으로 보아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의 이중적 구조로 인한 교육현장의 재정지원이 지연되어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피해가 높게 됨을 인식하고 교육활동에 필요한 재정을 최우선 배정 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을 알 수 있다.

<표25>교위와지방의회의원 이중적구조로 재정지원이 지연되는 사례 ()%

| 배경변인 | | 문항 | 관심이 없다 | 부득이한 현상 | 예상된사항 교육재정 집행 | 일시적 현상으 로 끝 개선 | 계 |
|------|---------|-----------|-------------------|------------|------------------|-------------------|------------|
| 성 별 | 남 | | 6(1.76) | 3(0.88) | 79(23.17) | 32(9.38) | 120(35.19) |
| | | | 6(1.76) | 17(4.99) | 142(41.64) | 56(16.42) | 221(64.81) |
| | 계 | 12(3.52) | 20(5.87) | 221(64.81) | 88(25.81) | 341(100.00) | |
| | | | $\chi^2 = 4.812$ | | df = 3 | | p > 0.05 |
| 연령별 | 30세미만 | | 4(1.16) | 3(0.87) | 39(11.34) | 12(3.49) | 58(16.86) |
| | 40세미만 | | 6(1.74) | 9(2.62) | 102(29.65) | 42(11.92) | 158(45.93) |
| | 50세미만 | | 0(0.00) | 6(1.74) | 56(16.28) | 25(7.27) | 87(25.29) |
| | 50세이상 | | 2(0.58) | 5(1.45) | 24(6.98) | 10(2.91) | 41(11.92) |
| | 계 | 12(3.49) | 23(6.69) | 221(64.24) | 88(25.58) | 344(100.00) | |
| | | | $\chi^2 = 9.548$ | | df = 12 | | p > 0.05 |
| 직위별 | 교 사 | | 11(3.22) | 19(5.56) | 174(50.88) | 68(19.88) | 272(79.53) |
| | 주임교사 | | 1(0.29) | 3(0.88) | 46(13.45) | 20(5.85) | 70(20.47) |
| | 계 | 12(3.51) | 22(6.43) | 220(64.33) | 88(25.73) | 342(100.00) | |
| | | | $\chi^2 = 2.018$ | | df = 3 | | p > 0.05 |
| 경력별 | 1- 10년 | | 4(1.16) | 1(0.29) | 63(18.26) | 26(7.54) | 94(27.25) |
| | 11- 20년 | | 6(1.74) | 13(3.77) | 101(29.18) | 33(9.57) | 153(43.35) |
| | 21- 30년 | | 0(0.00) | 4(1.16) | 36(10.43) | 26(7.54) | 66(19.13) |
| | 31년이상 | | 2(0.58) | 5(1.45) | 21(6.09) | 4(1.16) | 32(9.28) |
| | 계 | 12(3.48) | 23(6.67) | 221(64.06) | 89(25.80) | 345(100.00) | |
| | | | $\chi^2 = 21.610$ | | df = 9 | | p < 0.01 |
| 설립별 | 공 립 | | 7(2.04) | 23(6.71) | 166(48.40) | 71(20.70) | 267(77.84) |
| | 사 립 | | 4(1.17) | 0(0.00) | 54(15.74) | 18(5.25) | 76(22.16) |
| | 계 | 11(3.21) | 23(6.71) | 220(64.14) | 89(25.95) | 343(100.00) | |
| | | | $\chi^2 = 8.754$ | | df = 3 | | p < 0.05 |
| 근무지 | 대 도시 | | 9(2.61) | 6(1.74) | 132(38.26) | 56(16.23) | 203(58.84) |
| | 중소도시 | | 3(0.87) | 17(4.93) | 89(25.80) | 33(9.57) | 142(41.16) |
| | 계 | 12(3.48) | 23(6.67) | 221(64.06) | 89(25.80) | 345(100.00) | |
| | | | $\chi^2 = 12.166$ | | df = 3 | | p < 0.01 |

11) 教育財政 調達 財源으로 地方教育稅 新設에 대한 意見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의 조달을 위해 지방교육세 신설에 대한 초등교사들의 의견을 조사 분석한 결과는 <표26>과 같다.

<표29>에 의하면 교육재정 조달재원으로 지방교육세 신설에 대한 의견으로 '국세로서 교육세 범위 확대' 42.5% , '지방세 신설이 바람직한 일이다' 21.7% '지방간 격차로 실효성 의문' 20.6% , '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확대' 15.2% 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세로서 교육세 범위 확대'에서 성별로 남자가

<표26> 교육재정 조달 재원으로 지방교육세 신설에 대한 의견 ()%

| 문항 | | 바람직한 일이 | 자치단체의 일 | 국세로서 교육 | 지방간 격차로 | 계 |
|------|---------|-------------------|-----------|------------|-----------|-------------|
| 배경변인 | | 다 | 반회계의 필요 | 세 범위확대 | 실효성 의문 | |
| 성 별 | 남 | 31(9.12) | 16(4.71) | 57(16.76) | 14(4.12) | 118(34.71) |
| | 여 | 41(12.06) | 36(10.59) | 89(26.18) | 56(16.47) | 222(65.29) |
| | 계 | 72(21.18) | 52(15.30) | 146(42.94) | 70(20.59) | 340(100.00) |
| | | $\chi^2 = 10.462$ | | df = 3 | p < 0.05 | |
| 연령별 | 30세미만 | 9(2.62) | 9(2.62) | 33(9.62) | 6(1.75) | 57(16.62) |
| | 40세미만 | 36(10.50) | 26(7.58) | 59(17.20) | 37(10.79) | 158(46.06) |
| | 50세미만 | 18(5.25) | 11(3.21) | 37(10.79) | 21(6.12) | 87(25.36) |
| | 50세이상 | 12(3.50) | 6(1.75) | 17(4.96) | 6(1.75) | 41(11.95) |
| | 계 | 75(21.87) | 52(15.16) | 146(42.57) | 70(20.41) | 343(100.00) |
| | | $\chi^2 = 14.541$ | | df = 12 | p > 0.05 | |
| 직위별 | 교 사 | 57(16.72) | 42(12.32) | 112(32.84) | 60(17.60) | 271(79.47) |
| | 주임교사 | 18(5.28) | 9(2.64) | 33(9.68) | 10(2.93) | 70(20.53) |
| | 계 | 75(21.99) | 51(14.96) | 145(42.52) | 70(20.53) | 341(100.00) |
| | | $\chi^2 = 2.928$ | | df = 3 | p > 0.05 | |
| 경력별 | 1- 10년 | 16(4.65) | 15(4.36) | 43(12.50) | 19(5.52) | 93(27.03) |
| | 11- 20년 | 31(9.01) | 22(6.40) | 66(19.19) | 34(9.88) | 153(44.48) |
| | 21- 30년 | 21(6.10) | 10(2.91) | 21(6.10) | 14(4.07) | 66(19.19) |
| | 31년이상 | 7(2.03) | 5(1.45) | 16(4.65) | 4(1.16) | 32(9.30) |
| | 계 | 75(21.80) | 52(15.12) | 146(42.44) | 71(20.64) | 344(100.00) |
| | | $\chi^2 = 7.973$ | | df = 9 | p > 0.05 | |
| 설립별 | 공 립 | 54(15.79) | 40(11.70) | 114(33.33) | 58(16.96) | 266(77.78) |
| | 사 립 | 20(5.85) | 12(3.51) | 31(9.06) | 13(3.80) | 76(22.22) |
| | 계 | 74(21.64) | 52(15.20) | 145(42.40) | 71(20.76) | 342(100.00) |
| | | $\chi^2 = 1.699$ | | df = 3 | p > 0.05 | |
| 근무지 | 대 도시 | 49(14.24) | 38(11.05) | 79(22.97) | 37(10.76) | 203(59.01) |
| | 중소도시 | 26(7.56) | 14(4.07) | 67(19.48) | 34(9.88) | 141(40.99) |
| | 계 | 75(21.80) | 52(15.12) | 146(42.44) | 71(20.64) | 344(100.00) |
| | | $\chi^2 = 8.340$ | | df = 3 | p < 0.05 | |

16.76% 여자 26.18%로 여자가 9.42% 더 높게 나타나 p = .05 수준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으며 근무지별로 대도시 22.97% 중소도시 19.48% 로 대도시가 3.49% 더 높게 나타나 p = .05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반응으로 보아 교사들 대부분은 지방교육세 신설보다는 국세로서 교육세 범위를 확대하여 지방교육양여금을 늘려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教育自治制度의 實施에 따른 初等教師의 參與

1) 教育自治制의 實施에 따른 教師 參與 與否

교육자치제의 실시에 따른 교사 참여에 대한 초등교사의 의견을 조사 분석한 결과는 <표27>과 같다.

<표27> 교육자치제의 실시에 따른 교사 참여 여부 ()%

| 문항 | | 적극참여해야 한다 | 관심없는 일이다 | 교원단체에 일임해야 한다 | 학생지도에 전념해야 한다 | 계 |
|-----|---------|-------------------|-----------|---------------|---------------|-------------|
| 성 별 | 남 | 69(20.35) | 4(1.18) | 40(11.80) | 6(1.77) | 119(35.10) |
| | 여 | 134(39.53) | 12(3.54) | 60(17.70) | 14(4.13) | 220(64.90) |
| | 계 | 203(59.88) | 16(4.72) | 100(29.50) | 20(5.90) | 339(100.00) |
| | | $\chi^2 = 2.109$ | | df = 3 | p > 0.05 | |
| 연령별 | 30세미만 | 32(9.36) | 4(1.17) | 18(5.26) | 2(0.58) | 56(16.37) |
| | 40세미만 | 105(30.70) | 8(2.34) | 36(10.53) | 10(2.92) | 159(46.42) |
| | 50세미만 | 52(15.20) | 2(0.58) | 24(7.02) | 7(2.05) | 85(24.85) |
| | 50세이상 | 18(5.26) | 2(0.58) | 21(6.04) | 1(0.29) | 42(12.23) |
| | 계 | 207(60.53) | 16(4.68) | 99(28.95) | 20(5.85) | 342(100.00) |
| | | $\chi^2 = 17.152$ | | df = 12 | p > 0.05 | |
| 직위별 | 교 사 | 163(47.80) | 14(4.11) | 79(23.17) | 16(4.69) | 272(79.77) |
| | 주임교사 | 43(12.61) | 1(0.29) | 21(6.16) | 4(1.17) | 69(20.230) |
| | 계 | 206(60.41) | 15(4.40) | 100(29.33) | 20(5.87) | 341(100.00) |
| | | $\chi^2 = 1.800$ | | df = 3 | p > 0.05 | |
| 경력별 | 1- 10년 | 60(17.49) | 5(1.46) | 24(7.00) | 3(0.87) | 92(26.82) |
| | 11- 20년 | 99(28.86) | 6(1.75) | 37(10.79) | 11(3.21) | 153(44.61) |
| | 21- 30년 | 35(10.20) | 2(0.58) | 23(6.71) | 5(1.46) | 65(18.95) |
| | 31년이상 | 13(3.79) | 3(0.87) | 16(4.66) | 1(0.29) | 33(9.62) |
| | 계 | 207(60.35) | 16(4.69) | 100(29.33) | 20(5.87) | 341(100.00) |
| | | $\chi^2 = 14.780$ | | df = 9 | p > 0.05 | |
| 설립별 | 공 사 | 149(43.70) | 13(3.81) | 84(24.63) | 19(5.57) | 265(77.71) |
| | 립 사 | 56(16.42) | 3(0.88) | 16(4.69) | 1(0.29) | 76(22.29) |
| | 계 | 205(60.12) | 16(4.69) | 100(29.33) | 20(5.87) | 341(100.00) |
| | | $\chi^2 = 8.843$ | | df = 3 | p < 0.05 | |
| 근무지 | 대 도시 | 145(42.27) | 11(3.21) | 39(11.37) | 9(2.62) | 204(59.48) |
| | 중소도시 | 62(18.08) | 5(1.46) | 61(17.78) | 11(3.21) | 139(40.52) |
| | 계 | 207(60.35) | 16(4.67) | 100(29.15) | 20(5.83) | 343(100.00) |
| | | $\chi^2 = 29.305$ | | df = 3 | p < 0.01 | |

<표27>에 의하면 교육자치제의 실시에 따른 교사의 참여에 대하여 '적극 참여해야 한다' 60.3% , '교원단체에 일임해야 한다' 29.2% , '학생지도에 전념 해야 한다' 5.9% , '관심없는 일이다' 4.6% 의 순으로 나타났다.

‘적극 참여해야 한다’에서 설립별로 공립 43.70% 사립 16.42% 로 공립이 27.28% 더 높게 나타나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근무지별 조사에 있어서는 대도시 42.27% 중소도시 18.08% 로 대도시가 24.19% 더 높게 나타나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반응으로 보아 교육자치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교사들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教育自治制度의 實施에 따른 初等教師의 役割

1) 教育自治制의 實施에 따른 教師의 役割에 대한 意見

교육자치제의 실시에 따른 교사의 역할에 대한 초등교사들의 의견을 조사 분석한 결과는 <표29>과 같다.

<표28>에 의하면 교육자치제의 실시에 따른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매우 크다’ 64.2% , ‘별로 역할이 없다’ 35.8% 의 순으로 나타났다.

‘매우크다’의 반응에서 연령별로 40세 미만 30.32% 50세 이상이 8.16%로 40세 미만이 22.16% 로 높게나타났으며 직위별로 교사의 50.73% 주임교사 13.78% 의 반응으로 교사가 36.95% 더 높게 나타나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별로 역할이 없다’에서는 경력별로 11 -20년 이하 11.62% 31년 이상 2.91% 로 11 - 20년 이하의 경력이 11.62% 더 높게 나타나 $p = .05$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28〉 교육자치제의 실시에 따른 교사의 역할에 대한 의견 ()%

| 문항 | | 매우 크다 | 별로 역할이 없다 | 계 | |
|------|---------|-------------------|------------|-------------|------------|
| 배경변인 | 성 별 | 남 | 71(20.88) | 47(13.82) | 118(34.71) |
| | | 여 | 146(42.94) | 76(22.35) | 222(65.29) |
| | 계 | 217(63.82) | 123(36.18) | 340(100.00) | |
| | | $\chi^2 = 1.045$ | df = 1 | p > 0.05 | |
| 연령별 | 30세미만 | 45(13.12) | 14(4.08) | 59(17.20) | |
| | 40세미만 | 104(30.32) | 53(15.45) | 157(45.77) | |
| | 50세미만 | 44(12.83) | 41(11.95) | 85(24.78) | |
| | 50세이상 | 28(8.16) | 14(4.08) | 42(12.24) | |
| | 계 | 221(64.43) | 122(35.57) | 343(100.00) | |
| | | $\chi^2 = 11.863$ | df = 4 | p < 0.05 | |
| 직위별 | 교 사 | 173(50.73) | 99(29.03) | 272(79.77) | |
| | 주임교사 | 47(13.78) | 22(6.45) | 72(20.23) | |
| | 계 | 220(64.52) | 123(35.76) | 344(100.00) | |
| | | $\chi^2 = 0.490$ | df = 1 | p < 0.05 | |
| 경력별 | 1- 10년 | 66(19.19) | 30(8.72) | 96(27.91) | |
| | 11- 20년 | 101(29.36) | 50(14.53) | 151(43.90) | |
| | 21- 30년 | 31(9.01) | 33(9.59) | 64(18.60) | |
| | 31년이상 | 23(6.69) | 10(2.91) | 33(9.59) | |
| | 계 | 221(64.24) | 123(35.76) | 344(100.00) | |
| | | $\chi^2 = 8.696$ | df = 3 | p < 0.05 | |
| 설립별 | 공 립 | 164(47.95) | 101(29.53) | 265(77.49) | |
| | 사 립 | 55(16.08) | 22(6.43) | 77(22.51) | |
| | 계 | 219(64.04) | 123(35.96) | 342(100.00) | |
| | | $\chi^2 = 2.359$ | df = 1 | p > 0.05 | |
| 근무지 | 대 도시 | 133(38.66) | 73(20.93) | 205(59.59) | |
| | 중소도시 | 88(25.58) | 51(14.83) | 139(40.41) | |
| | 계 | 221(64.24) | 123(35.76) | 344(100.00) | |
| | | $\chi^2 = 0.089$ | df = 1 | p > 0.05 | |

이러한 반응으로 보아 교육자치제에서 교사들이 여러 방면으로 참여하여 많은 역할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教師의 役割이 큰 理由에 대한 意見

교육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교사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응답한 초등교사 중에서 응답한 이유에 대한 의견을 조사 분석한 결과는 〈표29〉와 같다.

<표29> 교사의 역할이 큰 이유에 대한 의견 ()%

| 문항 | | 전문성이 강조 교사역할 크다 | 학교자치가 교 육자치 첫단계 | 민주적 학교운 영이 요구되기 | 지역특성살리 는일 적극참여 | 계 |
|-----|---------|--------------------|--------------------|--------------------|-------------------|-------------|
| 성 별 | 남 | 20(8.51) | 11(4.68) | 32(13.62) | 18(7.66) | 81(34.47) |
| | 여 | 54(22.98) | 33(14.04) | 48(20.43) | 19(8.09) | 154(65.53) |
| 계 | | 74(31.49) | 44(18.72) | 80(34.04) | 37(15.74) | 235(100.00) |
| | | $\chi^2 = 7.938$ | | df = 3 | p < 0.05 | |
| 연령별 | 30세미만 | 12(5.02) | 7(2.93) | 22(9.21) | 7(2.93) | 48(20.08) |
| | 40세미만 | 28(11.72) | 32(13.39) | 36(15.06) | 17(7.11) | 113(47.28) |
| | 50세미만 | 18(7.53) | 6(2.51) | 13(5.44) | 11(4.60) | 48(20.08) |
| | 50세이상 | 16(6.69) | 2(0.84) | 10(4.18) | 2(0.84) | 30(12.55) |
| | 계 | 74(30.96) | 47(19.67) | 81(33.89) | 35(15.48) | 239(100.00) |
| | | $\chi^2 = 22.298$ | | df = 9 | p < 0.01 | |
| 직위별 | 교 사 | 57(24.05) | 39(16.46) | 63(26.58) | 29(12.24) | 188(79.32) |
| | 주임교사 | 16(6.75) | 8(3.38) | 18(7.59) | 7(2.95) | 49(20.68) |
| 계 | | 73(30.80) | 47(19.84) | 81(34.18) | 36(15.19) | 237(100.00) |
| | | $\chi^2 = 0.603$ | | df = 3 | p > 0.05 | |
| 경력별 | 1- 10년 | 17(7.11) | 13(5.44) | 26(10.88) | 12(5.02) | 68(28.45) |
| | 11- 20년 | 29(12.13) | 27(11.30) | 37(15.48) | 17(7.11) | 110(46.03) |
| | 21- 30년 | 13(5.44) | 5(2.09) | 10(4.18) | 7(2.93) | 35(14.64) |
| | 31년이상 | 15(6.28) | 2(0.84) | 8(3.35) | 1(0.42) | 26(10.88) |
| | 계 | 74(30.96) | 47(19.67) | 81(33.89) | 37(15.48) | 239(100.00) |
| | | $\chi^2 = 15.406$ | | df = 9 | p > 0.05 | |
| 설립별 | 공 사 | 59(24.89) | 39(16.46) | 60(25.32) | 22(9.28) | 180(75.95) |
| | 립 사 | 14(5.91) | 8(3.38) | 21(8.86) | 14(5.91) | 57(24.05) |
| 계 | | 73(30.80) | 47(19.83) | 81(34.18) | 36(15.19) | 237(100.00) |
| | | $\chi^2 = 6.715$ | | df = 3 | p > 0.05 | |
| 근무지 | 대 도시 | 52(21.76) | 26(10.88) | 38(15.90) | 26(10.88) | 142(59.41) |
| | 중소도시 | 22(9.21) | 21(8.79) | 43(17.99) | 11(4.60) | 97(40.59) |
| 계 | | 74(30.96) | 47(19.67) | 81(33.89) | 37(15.49) | 239(100.00) |
| | | $\chi^2 = 11.001$ | | df = 3 | p < 0.05 | |

<표29>에 의하면 교사의 역할이 큰 이유에 대하여 '민주적 학교 운영이 요구되기 때문' 34.0% , '전문성이 강조되어 교사의 역할이 크다' 31.0% , '학교 자치가 교육자치의 첫단계이므로' 19.6% , '지역특성 살리는 일에 적극 참여' 15.4%의 순으로 나타났다.

'민주적 학교운영이 요구되기 때문'에서 성별로 남자 13.62% 여자 20.43%로 여자가 6.81% 더 높게 나타나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전문성이 강조되어 교사의 역할이 크다'에서연령별로 30세 미만이 5.02%

40세 미만은 11.72% 로 40세 미만이 6.70% 더 높게 나타나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무지별로 대도시 21.76% 중소도시 9.21% 로 대도시가 12.55% 더 높게 나타나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반응으로 보아 교육자치제의 실시에 따른 교사의 역할이 큰 이유는 민주적 학교 운영의 요구와 전문성이 강조되어야 하므로 전문가인 교사의 역할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教師의 役割이 별로 없다는 理由

교육자치제 실시에 따른 교사의 역할이 별로 없다고 응답한 초등교사 중에서 응답한 이유에 대한 의견을 조사 분석한 결과는 <표30>과 같다.

<표30>에 의하면 교사의 역할이 별로 없다는 이유에 대하여 '광역자치로 파급효과가 미약' 43.7% , '교육과정에만 충실해야 한다' 20.8% , '기초단위 교육자치 미실시로 의미부족' 19.6% , '교위 기능이 지방의회 통제하에 있기 때문' 15.9% 의 순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로 파급효과가 미약'에서 연령별로 40세 미만 16.56% 50세 이상 4.29% 로 40세 미만이 12.27% 더 높게 나타나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경력별로 11 - 20년 이하가 15.85% 31년 이상 2.44% 로 경력 11 - 20년 이하가 13.41% 더 높게 나타나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30> 교사의 역할이 별로 없다는 이유

()%

| 배경변인 | | 교육과정에만 충실해야한다 | 교위기능이 지방의회 통제하 | 광역자치로 파급효과가 미약 | 기초단위 미실시로 의미부족 | 계 |
|------|---------|-------------------|----------------|----------------|----------------|-------------|
| 성 별 | 남 | 9(5.59) | 7(4.35) | 36(22.36) | 11(6.83) | 63(39.13) |
| | 여 | 25(15.53) | 18(11.18) | 34(21.12) | 21(13.04) | 98(60.87) |
| 계 | | 34(21.12) | 25(15.53) | 70(43.48) | 32(19.88) | 161(100.00) |
| | | $\chi^2 = 8.337$ | | df = 3 | p > 0.05 | |
| 연령별 | 30세미만 | 2(1.23) | 0(0.00) | 20(12.27) | 2(1.23) | 24(14.72) |
| | 40세미만 | 10(6.13) | 13(7.98) | 27(16.56) | 18(11.04) | 68(41.72) |
| | 50세미만 | 14(8.59) | 7(4.29) | 16(9.82) | 11(6.75) | 48(29.45) |
| | 50세이상 | 8(4.91) | 7(4.29) | 7(4.29) | 1(0.61) | 23(14.11) |
| | 계 | 34(20.86) | 27(16.56) | 70(47.94) | 32(19.63) | 163(100.00) |
| | | $\chi^2 = 33.507$ | | df = 12 | p < 0.01 | |
| 직위별 | 교사 | 27(16.46) | 22(13.41) | 54(32.93) | 26(15.85) | 129(78.66) |
| | 주임교사 | 7(4.27) | 6(3.66) | 16(9.76) | 6(3.66) | 35(21.34) |
| | 계 | 34(20.73) | 28(17.07) | 70(42.68) | 32(19.51) | 164(100.00) |
| | | $\chi^2 = 0.235$ | | df = 3 | p > 0.05 | |
| 경력별 | 1- 10년 | 4(2.44) | 1(0.61) | 22(13.41) | 14(25.00) | 34(20.73) |
| | 11- 20년 | 12(7.32) | 16(9.76) | 26(15.85) | 10(6.10) | 28(17.07) |
| | 21- 30년 | 12(7.32) | 6(3.66) | 18(10.98) | 7(4.27) | 70(42.68) |
| | 31년이상 | 6(3.66) | 5(3.05) | 4(2.44) | 1(0.61) | 32(19.51) |
| | 계 | 34(20.73) | 28(17.07) | 70(42.68) | 32(19.51) | 164(100.00) |
| | | $\chi^2 = 24.436$ | | df = 9 | p < 0.01 | |
| 설립별 | 공립 | 32(19.51) | 24(14.63) | 58(35.37) | 28(17.07) | 142(86.59) |
| | 립립 | 2(1.22) | 4(2.44) | 12(7.32) | 4(2.44) | 22(13.41) |
| | 계 | 34(20.73) | 28(17.07) | 70(42.68) | 32(19.51) | 164(100.00) |
| | | $\chi^2 = 2.540$ | | df = 3 | p > 0.05 | |
| 근무지 | 대도시 | 20(12.20) | 8(4.88) | 33(20.12) | 14(8.54) | 75(45.73) |
| | 중소도시 | 14(8.54) | 20(12.20) | 37(20.16) | 18(10.98) | 89(54.27) |
| | 계 | 34(20.73) | 28(17.07) | 70(42.68) | 32(19.51) | 164(100.00) |
| | | $\chi^2 = 5.777$ | | df = 3 | p > 0.05 | |

이러한 반응으로 보아 교육자치제의 실시에 따른 교사의 역할이 별로 없다는 이유에 대하여 현행 교육자치제는 광역 자치이므로 그 파급효과가 미약하기 때문에 교사의 역할이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4) 教師의 役割에 대한 重要性 順位

교육자치제의 실시에 따른 교사의 역할에 대한 우선순위 중 1순위에만 응답한 것을 집계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31> 과 같다.

<표31> 교사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 순위 ()%

| 배경변인 | | 교육과정 교과서의 탄력적 운영 | 교육문제 학생, 학부 모 참여유도 | 교무회의 의결기구 화로 단위 자치추진 | 교위전문 기구 및 보조기구 의 참여 | 교위위원 으로 정 책결정에 직접 참여 | 업무경감 과 보수 제도 개선 | 업무담당 자의 의 사결정권 확대 | 교단우위 의 학교운 영을 통한 자율성 | 계 |
|---|---------|---------------------------|-----------------------------|-------------------------------|------------------------------|-------------------------------|-----------------------|----------------------------|-------------------------------|-------------|
| 성별 | 남 | 39(11.27) | 3(0.87) | 19(5.49) | 2(0.58) | 9(2.60) | 11(3.18) | 5(1.45) | 33(9.54) | 121(34.97) |
| | 여 | 72(20.81) | 8(2.31) | 20(5.78) | 2(0.58) | 16(4.62) | 27(7.80) | 8(2.31) | 72(20.81) | 225(65.03) |
| 계 | | 111(32.08) | 11(3.18) | 39(11.27) | 4(1.16) | 25(7.23) | 38(10.98) | 13(3.76) | 105(30.35) | 346(100.00) |
| $\chi^2 = 5.193$ $df = 7$ $p > 0.05$ | | | | | | | | | | |
| 연령별 | 30세 미만 | 15(4.30) | 1(0.29) | 9(2.58) | 1(0.29) | 13(3.72) | 4(1.15) | 2(0.57) | 15(4.30) | 60(17.19) |
| | 40세 미만 | 48(13.75) | 4(1.15) | 20(5.73) | 1(0.29) | 5(1.43) | 17(4.87) | 9(2.58) | 56(16.05) | 160(45.85) |
| | 50세 미만 | 32(9.17) | 5(1.43) | 4(1.15) | 0(0.00) | 3(0.86) | 13(3.72) | 1(0.29) | 29(8.31) | 87(24.93) |
| | 50세 이상 | 16(4.58) | 1(0.29) | 6(1.72) | 2(0.57) | 4(1.15) | 7(2.01) | 1(0.29) | 5(1.43) | 42(12.03) |
| | 계 | 111(31.81) | 11(3.15) | 39(11.17) | 4(1.15) | 25(7.16) | 41(11.75) | 13(3.72) | 105(30.09) | 349(100.00) |
| $\chi^2 = 52.312$ $df = 21$ $p < 0.001$ | | | | | | | | | | |
| 직위별 | 교사 | 87(25.07) | 8(2.31) | 32(9.22) | 3(0.86) | 17(4.90) | 32(9.22) | 12(3.46) | 86(24.78) | 277(79.83) |
| | 주임교사 | 21(6.05) | 3(0.86) | 7(2.02) | 2(0.58) | 8(2.31) | 9(2.59) | 1(0.29) | 19(5.48) | 70(20.17) |
| 계 | | 108(31.12) | 11(3.17) | 39(11.24) | 5(1.44) | 25(7.20) | 41(11.82) | 13(3.75) | 105(30.26) | 347(100.00) |
| $\chi^2 = 5.511$ $df = 7$ $p > 0.05$ | | | | | | | | | | |
| 경력별 | 1- 10년 | 30(8.57) | 2(0.57) | 8(2.29) | 2(0.57) | 13(3.71) | 4(1.14) | 5(1.43) | 33(9.43) | 97(27.71) |
| | 11- 20년 | 46(13.14) | 6(1.71) | 20(5.71) | 0(0.00) | 5(1.43) | 22(6.29) | 6(1.71) | 49(14.00) | 154(44.00) |
| | 21- 30년 | 25(7.14) | 2(0.57) | 5(1.43) | 1(0.29) | 3(0.86) | 11(3.14) | 1(0.29) | 18(5.14) | 66(18.86) |
| | 31년 이상 | 10(2.86) | 1(0.29) | 6(1.71) | 2(0.57) | 4(1.14) | 4(1.14) | 1(0.29) | 5(1.43) | 33(9.43) |
| | 계 | 111(31.71) | 11(3.14) | 39(11.14) | 5(1.43) | 25(7.14) | 41(11.71) | 13(3.71) | 105(30.00) | 350(100.00) |
| $\chi^2 = 34.617$ $df = 21$ $p < 0.05$ | | | | | | | | | | |
| 설립별 | 공립 | 86(24.71) | 8(2.30) | 32(9.20) | 5(1.44) | 24(6.90) | 32(9.20) | 9(2.59) | 75(21.55) | 271(77.87) |
| | 립 | 25(7.18) | 3(0.86) | 6(1.72) | 0(0.00) | 0(0.00) | 9(2.59) | 4(1.15) | 30(8.62) | 77(22.13) |
| 계 | | 111(31.90) | 11(3.16) | 38(10.92) | 5(1.44) | 24(6.90) | 41(11.78) | 13(3.74) | 105(30.17) | 348(100.00) |
| $\chi^2 = 12.400$ $df = 7$ $p > 0.05$ | | | | | | | | | | |
| 근무지 | 대도시 | 73(20.86) | 4(1.14) | 23(6.57) | 2(0.57) | 9(2.57) | 22(6.29) | 9(2.57) | 65(18.57) | 207(59.14) |
| | 중소도시 | 38(10.86) | 7(2.00) | 16(4.57) | 3(0.86) | 16(4.57) | 19(5.43) | 4(1.14) | 40(11.43) | 143(40.86) |
| 계 | | 111(31.71) | 11(3.14) | 39(11.14) | 5(1.43) | 25(7.14) | 41(11.71) | 13(3.71) | 105(30.00) | 350(100.00) |
| $\chi^2 = 12.066$ $df = 7$ $p > 0.05$ | | | | | | | | | | |

<표31>에 의하면 교육자치제의 실시에 따른 교사의 역할 중 중요하게 생각되는 점에 대한 우선순위로 '교육과정, 교과서의 탄력적 운영'이 31.7% , '교단우위의 학교운영을 통한 자율성' 30.3% , '업무경감과 보수제도 개선' 11.6% , '교무회의 의결기구화로 단위자치 추진' 11.2% , '敎委 위원으로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 7.1% , '업무담당자의 의사결정권 확대' 3.7% , '교위 전문기구 및 보조기구의 참여' 1.3% 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교육과정, 교과서의 탄력적 운영'에서 연령별로 40세 미만 13.75% 30세 미

만 4.30% 로 40세 미만이 9.45% 더 높게 나타나 $p = .001$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교단우위 학교운영을 통한 자율성'에서 경력별로 11 - 20년 이하 14.00% 31년 이상 1.43% 로 11 - 20년 이상이 12.57% 더 높게 나타나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교육자치의 실시에 따른 교사의 역할 중 초등교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탄력적 운영과 교단중심, 교단우위의 전문적인 학교운영을 통한 자율성 신장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어 교사의 자율성 신장을 위해서 꾸준한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자율성 확보에 많은 역할을 해야 함을 알 수 있다.

6. 住民參與의 範圍

1) 教育自治制의 實施에 따른 住民參與 範圍

교육자치제의 실시에 따른 교육행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범위에 대한 교사의 의견을 조사 분석한 결과는 <표32>와 같다.

<표32>에 의하면 교육자치제의 실시에 따른 주민참여의 범위에 대하여 '기초단위 학교 발전위원회 구성이 필요함'이 40.0% , '학교단위 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한다' 36.8% , '기초단위 교육청에 관련창구 상설' 18.2% , '敎委가 대의기구로 협의체 불필요' 5.0% 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초단위 학교발전위원회 구성이 필요함'에서 연령별로 40세 미만이 20.23% 50세 이상 3.52% 로 40세 이상이 16.71% 더 높게 나타나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학교단위 협의체 구성'에서는 경력별로 11 - 20년 이하가 14.62% 30년 이상이 2.34% 로 경력11 - 20년 이하

<표32> 교육자치제의 실시에 따른 주민참여 범위 ()%

| 배경변인 | | 문항 | 학교단위협의 체 구성되어야 | 기초단위학교발전 위원회구성필요함 | 기초단위교육청 관련 창구 상설 | 교위가 대의기구 로 협의체불필요 | 계 |
|------|---------|------------|-------------------|----------------------|---------------------|----------------------|-------------|
| 성 별 | 남 여 | | 43(12.72) | 45(13.31) | 26(7.69) | 3(0.89) | 117(34.62) |
| | | | 82(24.26) | 90(26.63) | 35(10.36) | 14(4.14) | 221(65.38) |
| | 계 | 125(36.98) | 135(39.94) | 61(18.05) | 17(5.03) | 338(100.00) | |
| | | | $\chi^2 = 3.991$ | | df = 3 | p > 0.05 | |
| 연령별 | 30세미만 | | 19(5.57) | 22(6.45) | 18(5.28) | 1(0.29) | 60(17.60) |
| | 40세미만 | | 55(16.13) | 69(20.23) | 28(8.21) | 4(1.17) | 156(45.75) |
| | 50세미만 | | 37(10.85) | 33(9.68) | 9(2.64) | 6(1.76) | 85(24.93) |
| | 50세이상 | | 15(4.40) | 12(3.52) | 7(2.05) | 6(1.76) | 40(11.73) |
| | 계 | | 126(36.95) | 136(39.88) | 62(18.18) | 17(4.99) | 341(100.00) |
| | | | $\chi^2 = 24.683$ | | df = 12 | p < 0.05 | |
| 직위별 | 교 사 | | 95(28.02) | 114(33.63) | 48(14.16) | 15(4.42) | 272(80.24) |
| | 주임교사 | | 28(8.26) | 23(6.78) | 14(4.13) | 2(0.59) | 67(19.76) |
| | 계 | | 123(36.28) | 137(40.41) | 62(18.29) | 17(5.01) | 339(100.00) |
| | | | $\chi^2 = 2.459$ | | df = 3 | p > 0.05 | |
| 경력별 | 1- 10년 | | 34(9.94) | 40(11.70) | 19(5.56) | 3(0.88) | 96(28.07) |
| | 11- 20년 | | 50(14.62) | 66(19.30) | 27(7.89) | 7(2.05) | 150(43.86) |
| | 21- 30년 | | 34(9.94) | 20(5.85) | 9(2.63) | 2(0.58) | 65(19.01) |
| | 31년이상 | | 8(2.34) | 11(3.22) | 7(2.05) | 5(1.46) | 31(9.06) |
| | 계 | | 126(36.84) | 137(40.06) | 62(18.13) | 17(4.97) | 342(100.00) |
| | | | $\chi^2 = 18.069$ | | df = 9 | p < 0.05 | |
| 설립별 | 공 사 | 립 | 91(26.69) | 102(29.91) | 56(16.42) | 16(4.69) | 265(77.71) |
| | 사 | 립 | 35(10.26) | 34(9.97) | 6(1.76) | 1(0.29) | 76(22.29) |
| | 계 | | 126(36.95) | 136(39.88) | 62(18.18) | 17(4.99) | 341(100.00) |
| | | | $\chi^2 = 11.104$ | | df = 3 | p < 0.05 | |
| 근무지 | 대 도시 | | 79(23.10) | 86(25.15) | 23(6.73) | 13(3.80) | 201(58.77) |
| | 중소도시 | | 47(13.74) | 51(14.91) | 39(11.40) | 4(1.17) | 141(41.23) |
| | 계 | | 126(36.84) | 137(40.06) | 62(18.13) | 17(4.97) | 342(100.00) |
| | | | $\chi^2 = 15.926$ | | df = 3 | p < 0.01 | |

가 12.28% 로 더 높게 나타났으며 설립별로 공립이 26.69% 사립이 10.26% 로 공립이 16.43% 더 높게 나타나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반응으로 보아 교육자치제의 실시에 따른 주민참여의 범위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은 기초단위 학교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주민들과의 교육문제를 협의하기 원함을 알 수 있다.

7. 單位學校 自治에 대한 見解

1) 單位學校의 自治에 대한 意見

단위학교 자치에 대한 초등교사들의 의견을 조사 분석한 결과는 <표33>과 같다.

<표33> 단위학교의 자치에 대한 의견 ()%

| 문항 | | 자치가 불필요하다 |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해야 한다 | 계 |
|-----|---------|-------------------|----------------|-------------------|-------------|
| 성 별 | 남 | 3(0.89) | 64(18.93) | 52(15.38) | 119(35.21) |
| | 여 | 14(4.14) | 128(37.87) | 77(22.78) | 219(64.79) |
| | 계 | 17(5.03) | 192(56.80) | 129(38.17) | 338(100.00) |
| | | $\chi^2 = 4.066$ | | df = 2 | p > 0.05 |
| 연령별 | 30세미만 | 3(0.88) | 32(9.38) | 25(7.33) | 60(17.60) |
| | 40세미만 | 6(1.76) | 103(30.21) | 46(13.49) | 155(45.45) |
| | 50세미만 | 5(1.47) | 38(11.14) | 43(12.61) | 86(25.22) |
| | 50세이상 | 3(0.88) | 22(6.45) | 15(4.40) | 40(11.73) |
| | 계 | 17(4.99) | 195(57.18) | 129(37.83) | 341(100.00) |
| | | $\chi^2 = 30.921$ | | df = 8 | p < 0.01 |
| 직위별 | 교 사 | 13(3.83) | 162(47.79) | 96(28.32) | 271(79.94) |
| | 주임교사 | 3(0.88) | 32(9.44) | 33(9.73) | 68(20.06) |
| | 계 | 16(4.72) | 194(57.23) | 129(38.05) | 339(100.00) |
| | | $\chi^2 = 4.007$ | | df = 2 | p > 0.05 |
| 경력별 | 1- 10년 | 3(0.88) | 55(16.08) | 38(11.11) | 96(28.07) |
| | 11- 20년 | 6(1.75) | 95(27.78) | 48(11.04) | 149(43.57) |
| | 21- 30년 | 6(1.75) | 23(6.73) | 37(10.82) | 66(19.30) |
| | 31년이상 | 2(0.58) | 22(6.43) | 7(2.05) | 31(9.06) |
| | 계 | 17(4.97) | 195(57.02) | 130(38.01) | 342(100.00) |
| | | $\chi^2 = 20.229$ | | df = 6 | p < 0.01 |
| 설립별 | 공 사 | 17(4.99) | 162(47.51) | 87(25.51) | 266(78.01) |
| | 립 립 | 0(0.00) | 33(9.68) | 42(12.32) | 75(21.99) |
| | 계 | 17(4.99) | 195(57.18) | 129(37.83) | 341(100.00) |
| | | $\chi^2 = 16.107$ | | df = 2 | p < 0.01 |
| 근무지 | 대 도시 | 11(3.22) | 110(32.16) | 79(23.10) | 200(58.48) |
| | 중소도시 | 6(1.75) | 85(24.85) | 51(14.91) | 142(41.52) |
| | 계 | 17(4.97) | 195(57.02) | 130(38.01) | 342(100.00) |
| | | $\chi^2 = 0.896$ | | df = 2 | p > 0.05 |

<표33> 에 의하면 단위학교의 자치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 되어야 한다' 57.1% ,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해야 한다' 38.0% , '자치가 불필요하다' 4.9% 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에서 연령별로 40세 미만 30.21% 50세 이상 6.45% 로 40세 미만이 23.76% 더 높게 나타나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경력별로 11 - 20년 이하 27.78% 31년 이상 6.43% 로 11 - 20년 이하가 21.35% 더 높게 나타났으며 설립별로 공립이 47.51% 사립이 9.68% 로 공립이 37.83% 더 높게 나타나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반응으로 보아 초등교사들은 단위학교 자치는 교육의 최일선이므로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8. 教育自治制度의 展望

1) 教育自治制의 實施에 따른 앞으로의 展望

교육자치제의 실시에 따른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을 조사 분석한 결과는 <표34>와 같다.

<표34>에 의하면 교육자치제의 실시에 따른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제도적 개선이 요구됨’ 55.1% , ‘빠른 시일내에 기초교육자치 실시’ 27.9% , ‘교사, 학생, 주민의 다양한 참여’ 14.0% , ‘전망 밝으며 빠른 정착 예상’ 3.0% 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34>에서 보여 주듯이 여섯 변인들이 실제로 얻어진 χ^2 의 값은 $p = .05$ 수준에서 요구되는 χ^2 의 값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다.

<표34> 교육자치제의 실시에 따른 앞으로의 전망 ()%

| 문항 | | 제도적인 개선 | 교사, 학생, 주민 | 전망 밝으며 빠 | 빠른 시일내 기 | 계 |
|------|---------|-------------------|------------|-----------|-----------|-------------|
| 배경변인 | | 요구됨 | 의 다양한 참여 | 른 정착 예상 | 초 교육자치 실시 | |
| 성 별 | 남 | 60(17.80) | 14(4.15) | 4(1.19) | 40(11.87) | 118(35.01) |
| | 여 | 128(37.98) | 31(9.20) | 6(1.78) | 54(16.02) | 219(64.99) |
| | 계 | 188(55.79) | 45(13.35) | 10(2.97) | 94(27.87) | 337(100.00) |
| | | $\chi^2 = 3.552$ | | df = 3 | p > 0.05 | |
| 연령별 | 30세미만 | 27(7.94) | 10(2.94) | 1(0.29) | 20(5.88) | 58(17.06) |
| | 40세미만 | 83(24.41) | 19(5.59) | 6(1.76) | 47(13.82) | 155(45.59) |
| | 50세미만 | 52(15.29) | 14(4.12) | 2(0.59) | 18(5.29) | 86(25.29) |
| | 50세이상 | 25(7.35) | 5(1.47) | 1(0.29) | 10(2.94) | 41(12.05) |
| | 계 | 187(55.00) | 48(14.12) | 10(2.94) | 95(27.94) | 340(100.00) |
| | | $\chi^2 = 13.042$ | | df = 12 | p > 0.05 | |
| 직위별 | 교 사 | 150(44.38) | 39(11.54) | 7(2.07) | 74(21.89) | 270(79.88) |
| | 주임교사 | 35(10.36) | 9(2.66) | 3(0.89) | 21(6.21) | 68(20.12) |
| | 계 | 185(54.73) | 48(14.20) | 10(2.96) | 95(28.11) | 338(100.00) |
| | | $\chi^2 = 1.063$ | | df = 3 | p > 0.05 | |
| 경력별 | 1- 10년 | 50(14.66) | 19(5.59) | 1(0.29) | 24(7.04) | 94(27.57) |
| | 11- 20년 | 83(24.34) | 15(4.40) | 7(2.05) | 44(12.90) | 149(43.70) |
| | 21- 30년 | 37(10.85) | 12(3.52) | 1(0.29) | 16(4.69) | 66(19.35) |
| | 31년이상 | 18(5.28) | 2(0.59) | 1(0.29) | 11(3.23) | 32(9.28) |
| | 계 | 188(55.13) | 48(14.08) | 10(2.93) | 95(27.86) | 341(100.00) |
| | | $\chi^2 = 10.778$ | | df = 9 | p > 0.05 | |
| 설립별 | 공 사 | 144(42.35) | 39(11.47) | 8(2.35) | 74(21.76) | 265(77.94) |
| | 립립 | 43(12.65) | 9(2.65) | 2(0.59) | 21(6.18) | 75(22.06) |
| | 계 | 187(55.00) | 48(14.12) | 10(2.94) | 95(27.94) | 340(100.00) |
| | | $\chi^2 = 0.426$ | | df = 3 | p > 0.05 | |
| 근무지 | 대 도시 | 109(31.96) | 29(8.50) | 8(2.35) | 54(15.84) | 200(58.65) |
| | 중소도시 | 79(23.17) | 19(5.57) | 2(0.59) | 41(12.02) | 141(41.35) |
| | 계 | 188(55.13) | 48(14.07) | 10(2.94) | 95(27.86) | 341(100.00) |
| | | $\chi^2 = 2.104$ | | df = 3 | p > 0.05 | |

이러한 반응으로 보아 전 응답자의 55.1% 의 교사가 '제도적인 개선이 요구됨'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자치제도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빠른 시일내에 개선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V. 要約 및 結論

본 연구는 교육자치제도에 관한 이론을 고찰하고 현행 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초등교사들의 인식정도와 참여의식 및 역할 등에 대한 의견을 조사 분석하여 교육자치제도의 바람직한 발전에 一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설문지는 문헌연구와 각종 토론회의 결과로 수집된 문제점을 검토하여 8개 영역 27개 문항으로 작성하였으며 서울과 경기 북부지역의 공.사립 국민학교를 대상으로 무선 표집한 교사 380 명에게 배부하고 354부를 회수한 후 사용 가능한 350부의 자료를 처리 하였다.

자료의 처리는 각 문항별 반응결과를 백분율에 의하여 환산하고 각 변인별로 χ^2 검증을 하여 유의도를 알아 보았다.

1. 要約

본 연구의 설문조사를 영역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教育自治제의 實施에 대한 初等教師의 反應

첫째: 국민학교 공.사립 73.9% 가 교육자치제의 실시에 대한 교육현장에서의 변화를 느낄 수 없거나 실시는 알았으나 교육현장에서의 변화가 없다고 응답하여 교육자치제의 실시에 대하여 교육현장에서의 認識이 매우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육자치제의 실시를 매스컴의 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응답한 40세 미만 47.54%의 교사가 다른 연령층 보다 신문 방송보도 등에 매우 민감함을 알 수 있다.

둘째: 교육자치를 실시할 구역 범위를 정하는데는 지방의 재정자립 능력을 고려하여 기초단위부터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61.0%로 다수를 나타내고 있다.

셋째: 교육자치에서 강조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교육의 자주성이 지적되고 있다. 교육자치제도가 꼭 필요한 제도라는 점에 대해서는 異見이 거의 없었다.

2) 教育自治制의 研修實態와 方向

첫째: 교육자치제에 대한 연수실태에 대해 79.8% 교사가 교내연수가 전혀 없거나 그저 유인물만 받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자치제에 관한 연수가 부족한 실정임을 알 수 있으며 교육자치제에 대한 연수에 대하여 81.8%의 교사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정규 교육과정으로 채택(29.4%), 교원연수시 필수(28.8%), 교내연수(23.6%)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교육자치제에 대한 연수내용으로는 교육현장에서의 교사의 역할, 교사, 학생 및 주민참여 문제, 제도 실시에 따른 문제점 개선이 91.8%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3) 教育自治制에 대한 教師의 認識程度

첫째: 교육위원회의 성격에 대한 인식도에서 위임형 의결기구로 응답한 교사가 44.2% 밖에 안된다는 것은 교육위원회의 성격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교사가 다수임을 말해주고 있다. 교육위원회 활동에 대한 인식정도는 72.1%의 교사가 활동내용을 알 수 없거나 전혀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현행 교육자치제도에서 시·도 교육청의 예산 결산 및 특별 부과금 등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의 최종 의결권 등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은

전적으로 교육위원회에 심의 의결권을 부여해야 하고 지방의회는 동의권만 부여해야 한다는 반응이 80.0%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교육위원 후보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현직교사에게도 참여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후보 모두 교육 혹은 교육행정 경력자라야 한다는 응답이 69.1%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교육위원 선출제도에 대하여 순수 교사들만이 직선으로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44%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교육위원회의 주민청원 처리기능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응답이 88.0%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교육위원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시.도의회에 보고하고 특정사안에 대해 시.도의회 자체의결로 재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교육위원회에 대한 권한 침해라는 의견이 61.8%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섯째: 부교육감은 교원단체의 추천과 교육위원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36.8%)과 함께 불필요한 제도로 재정의 낭비(31.2%)라는 의견도 나타나고 있어 부교육감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도 보이고 있다.

일곱째: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의 이중적 구조로 재정지원이 지연되는 사례에 대해 교육재정을 독립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64.3%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덟째: 교육재정의 재원으로는 국세로서 교육세 범위 확대(42.5%)와 함께 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확대(15.2%)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4) 敎師의 參與와 役割

첫째: 교육자치제의 실시에 따른 교사의 참여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60.3%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교육자치제의 실시에 있어서 교사의 역할이 매우 크다가 64.2%로 높

게 나타났으며 그 이유로는 34.0%가 민주적 학교운영을, (31.0%)가 교육의 전문성 향상을 지적하고 있다. 교사의 역할이 미약한 이유로는 기초단위 교육자치의 미실시가 63.3%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교사의 역할에서 우선 되어야 할 사항으로서는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탄력적 운영과 함께 교단우위의 학교운영을 통한 자율성의 확보를 지적하고 있다.

5) 住民參與의 範圍

주민참여의 범위에 대해서는 기초단위 학교 발전위원회의 구성과 함께 학교단위협의체의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6.8%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6) 學校單位의 自治에 대한 意見

교육자치제는 단위학교 협의체를 구성해서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95.1%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7) 教育自治制에 대한 展望

교육자치제의 전망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많아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55.1%, 빠른 시일 내에 기초단위 교육자치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27.9%로 나타나고 있다.

2. 結論

1) 教育自治에 대한 初等敎師들의 認識提高

교육자치제에 대한 초등교사들의 전반적인 인식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예로 교육자치 실시 이후 교육현장에서의 변화여부에 대해 73.9%의 교사가 변화를 인식할 수 없거나 실시는 알았으나 현장에서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자치제 실시를 알게된 동기도 학교현장에서 알기 보다는 신문 방송 보도를 통해 알게 되는 것 등으로 볼 때 교육에 관계되는 문제에 대해 교육현장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교육자치에 대한 연수가 꼭 필요하며 교육자치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높여야 함을 알 수 있다.

2) 教育自治에 대한 研修의 必要

교육자치에 대한 연수가 필요하며 연수의 내용으로는 교육현장에서의 교사의 역할, 교사 학생 및 주민참여문제, 제도실시에 따른 문제점 개선에 비중을 두고 교사의 양성과정이나 자격 연수시에 필수과목으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教育委員會의 性格과 活動에 대한 認識

첫째: 태반의 교사가 교육위원회의 성격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바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시·도교육청의 예산 결산 및 특별부과금 등 주민의 권리와 의무사항에 관한 최종 의결권을 지방의회가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짐작된다. 또한 현직교사도 교육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함과 동시에 교사들이 교육위원회의 활동을 알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의 회의 일정

및 주민 청원 처리 절차나 결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4) 教育委員과 教育監 選出 및 副教育監 制度

교육감의 직접 선출은 실효성이 적어 최소한 학교 급별 대의원들에 의한 간접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교육감 역시 현재의 임명제 보다는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을 택하여 民意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5) 地方教育財政

지방교육재정 문제에서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의 이중적 구조로 재정지원이 지연되는 사례에 비추어 교육예산 의결권은 교육위원회에 주어져야 일반행정에서의 예속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며 교육재정의 재원으로는 현재 간접세인 교육세 이외에 재산세, 부가세 등 국세로서의 교육세 범위를 좀 더 확대하고 지방교육양여금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6) 教師의 役割과 單位學校 自治體制의 學校 運營

교육자치가 실시됨에 따라 교사의 참여와 역할에 대한 기대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역할이 큰 이유로는 민주적 학교운영을 통한 교단 우위의 자율성 확보를 들면서 단위학교 자치는 교육의 최일선이므로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제도적 개선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학교운영을 통한 책무성이 수반된 전문적인 교사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사회와 밀접한 협력체제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7) 制度的 改善이 要求되는 教育自治制度

교육자치제는 교육행정의 지방분권을 통하여 주민참여의식을 높이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강구하여 실시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교육자치제도의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에서 바람직한 제도이다. 그러나 지방간의 격차가 크기때문에 조직상의 문제(교육자치의 범위,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 부교육감제도)인사행정의 문제(교육위원, 교육감, 부교육감의 자격요건과 선출방법)교육재정문제(교육위원회의 성격,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권, 지방교육재정의 확보), 교사들의 참여와 역할 등 많은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3. 提言

교육행정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 교육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목전의 이해관계에 집착하기 보다는 역사적인 책임의식과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교육자치제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國內 文獻>

- 김보현外,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법문사, 1982.
- 김종철, 교육자치제의 본질, 「새교육, 372호」, 1985.
- 김종철, 교육행정학신강, 서울:세영사, 1985.
- 김종철, 교육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교육과학사, 1988.
- 법제 연구원, 문교법전, 서울:법제연구원, 1988.
- 서정화外, 교육행정제도개선연구, 서울:한국교육개발원, 1980.
- 서정화外, 주요국가의 교육행정제도, 서울:한국교육개발원, 1980.
- 손재식, 현대지방행정론, 서울:박영사, 1983.
- 유향산, 교육행정원론, 서울:동화문화사, 1978.
- 윤정일 외, 한국의 교육정책, 서울:교육과학사, 1991.
- 이득기, 교육행정과 교육경영, 서울:집문당, 1994.
- 이찬교, 교육자치제도의 변천과 발달, 「한국방송통신대학논문집제14집」
- 이형행, 신교육행정론, 서울:문음사, 1986.
- 조병효, 한국교육자치제도연구, 서울:교육과학사, 1988.

<國內 論文>

- 김용채, 교육자치제도에 대한 교사의 의견조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1988.
- 신용우, 지방교육자치 실시에 따른 교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도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1992.
- 오경자, 한국교육자치제도에 관한 기초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1985.

- 오태웅, 교육자치제 실시에 대한 교원의 의견조사 분석,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1990.
- 임동원, 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초등교원집단들의 이해정도 및 견해조사 분석,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1992.
- 전성덕, 교육자치제의 실태와 발전방향,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1991.
- 정병술, 교육자치에 관한 교육행정가의 인식도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1985.
- 최태진, 교육자치제도에 대한 교사의 인식,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1992.

<外國 文獻>

- 文部省, '各國의 教育行政', 東京:文部省調査局調査課, 1956.
- 上原貞夫, 'アメリカ合衆國州憲法の教育規定', 東京:風間書房, 1981.
- 小山俊也, '教育制度 序説', 東京:明治大學 出版部, 1979.
- Herbert A. Simon, et. al., centralization in organizing the controller's Department, New York: controllership Foundation, Inc., 1954.
- John F. Cramer and George S. Borwne, contemporary Education: A contemporary Study of National Systems, Second Edition, New York: Harcourt, Brace and World, Inc., 1965.
- Thomas J. Landers and Judith G. Myers, Essentials of School Management, Philadelphia: W. B. Saunders, 1977.

부록

교육자치제도에 관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항상 새롭고 높은 뜻으로 교육의 길을 열어 가시느라 수고하시는 선생님께 부탁을 드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설문은 한국 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초등교사들의 인식정도와 교사의 역할을 알아보고 교육자치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얻기 위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2학기초 이어서 분주하시겠지만 선생님께서 평소 생각하시고 또 실제 느끼신 대로 응답해 주시면 본 연구에 커다란 도움이 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을 연구이외의 목적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본 설문지에 의한 연구가 정확한 근거에 입각할 수 있도록 성심껏 기록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994년 9월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육행정 학과
교육행정 전공 장 영 올림

* 다음 각 항의 해당란에 V 표를 해 주십시오.

- | | | | | |
|----------|------------------------|------|------------|------|
| (1) 성 별: | ① 남 | ---- | ② 여 | ---- |
| (2) 연령별: | ① 30세 미만 | ---- | ② 40세 미만 | ---- |
| | ③ 50세 미만 | ---- | ④ 50세 이상 | ---- |
| (3) 직위별: | ① 교사 | ---- | ② 주임 교사 | ---- |
| (4) 경 력: | ① 1 ~ 10년 | ---- | ② 11 ~ 20년 | ---- |
| | ③ 21 ~ 30년 | ---- | ④ 31년 이상 | ---- |
| (5) 설립별: | ① 공 립 | ---- | ② 사 립 | ---- |
| (6) 근무지: | ① 대 도 시 (특별시, 직할시) | ---- | | |
| | ② 중 소 도 시 (시, 군, 읍소재지) | ---- | | |

< 응답요령 >

* 다음 설문들을 읽으신 후 선생님의 의견과 가장 일치 하다고 생각되는 번호앞에 V 표를 해 주십시오.

(1) 교육자치제의 실시 이후 교육현장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

- ① 제도의 변화로만 알고 있었다.
- ② 교육자치제 실시의 변화를 느낄 수 없다.
- ③ 교육자치제의 실시로 교사의 역할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 ④ 교육자치제의 실시를 알았으나 현장에서의 변화는 없었다.

(2) 교육자치제의 실시를 선생님께서 직접적으로 알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

- ① 매스컴의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 ② 공문서 발신처의 변화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 ③ 교육위원 선출시기에 있었던 문제들을 접하면서 알게 되었다.
- ④ 관심을 갖고 있던 사항이므로 법률이 통과되면서 알게 되었다.

(3) 교육자치제의 실시구역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현행대로 광역단위가 좋다.
- ② 시군구의 기초단위부터 해야 한다.
- ③ 재정자립 능력을 고려하여 구역을 나누어서 실시해야 한다.
- ④ 인구의 비율과 지역에 따른 구역을 설정하여 실시해야 한다.

(4) 교육자치제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교육의 자주성
- ② 교육의 전문성
- ③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 ④ 교육에의 주민 참여

(5) 교육자치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교육의 자주성의 보장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이다.
- ② 교육재정의 빈약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상태에서는 시기가 맞지 않는 제도이다.
- ③ 단위학교 혹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부터 교육자치가 우선 실시 정착되어야 한다.
- ④ 고등교육이 편중되어 있고 의무교육만을 관장하는 교육청이 많아 실효성이 불투명한 제도이다.

(6) 교육자치제가 실시되면서 교육자치에 대한 교내 자체 연수가 있었습니까 ?

- ① 여러번 있었다.
- ② 교내 연수가 전혀 없었다.
- ③ 교내 연수는 없었으나 유인물은 받았다.
- ④ 전혀 관심이 없다.

(7) 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연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교내 연수만으로도 충분하다.
- ② 제도적인 내용으로 연수할 필요가 없다.
- ③ 교사 양성기관의 정규 교육과정으로 채택되어야 한다.
- ④ 시.도 교육청의 교원 연수시 필수과목으로 채택되어야 한다.

(8) 교육자치제를 연수한다면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해야 합니까 ?

- ① 제도에 대한 안내
- ② 교육현장에서의 교사의 역할
- ③ 제도실시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
- ④ 실질적인 교사, 학생 및 주민 참여 문제

(9) 현행 교육자치제도에서 교육위원회의 성격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위임형 의결기구이다.
- ② 독립형 의결기구이다.
- ③ 독립형 집행기관이다.
- ④ 지방의회의 부속기구이다.

(10) 현행 교육자치제도에서 시·도 교육청의 예산·결산 및 특별 부과금 등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의 최종 의결권을 지방의회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 하십니까 ?

- ① 헌법재판소에 계류중 이므로 곧 결정이 날것이다.
- ② 지방의회는 정당 추천인으로 구성되어 정치적인 관여가 우려된다.
- ③ 지방의회는 최종 의결 대신 교육위원회의 의결에 대해 동의권만을 부여한다
- ④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은 전적으로 교육위원회에 심의·의결권을 주어야한다

(11) 교육위원 후보의 자격요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현직 교사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교육과 관계된 이권에 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 ③ 모든 교육경력 혹은 교육행정 경력자라야만 한다.
- ④ 교육경력자와 직능별로 비례해서 다양한 직종의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

(12) 교육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주민 및 교육현장에서의 인식정도는 어떠하십니까 ?

- ① 전혀 관심이 없다.
- ② 비교적 홍보는 되고 있으나 관심이 적다.
- ③ 회기내 기타 기간의 활동에 관심이 크다.
- ④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어 활동내용을 알 수 없다.

(13) 교육위원회의 주민 청원에 대한 처리기능에 대해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주민들의 권리 주장이 일반적으로 빈약한 실정이다.
- ②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며 청원 창구를 활용하고 있는 상태이다.
- ③ 교육위원회는 알고 있으나 주민의 청원사항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하다.
- ④ 주민 대다수가 현행 교육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4) 교육위원의 선출이 기초단위 의회의 추천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선출되는 이중 간선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적절한 제도이다.
- ② 주민들의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바꾸어야 한다.
- ③ 순수 교사들만으로 직접 선출해야 한다.
- ④ 기초자치단체의 추천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제로 해야한다.

(15) 교육위원회의 감사 조사 결과를 시.도의회에 보고하고 특정 사안에 대해 시.도 의회의 자체 의결로 감사 조사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특정사안에 한하므로 필요하다.
- ② 감사. 조사는 여러 번 할수록 좋으므로 괜찮다.
- ③ 감사. 조사의 중복으로 교육위원회의 권한 침해이다.
- ④ 시.도의회의원들이 政黨성을 띠고 있으므로 정치적 간섭이 우려된다.

(16) 교육감의 선출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교사들이 직접 선출해야 한다.
- ② 학교급별 대위원에 의한 간접 선출을 해야 한다.
- ③ 학교급별 대위원과 기초의회 의원들이 선출해야 한다.
- ④ 지역주민의 대표인 기초의회 의원들이 선출해야 한다.

(17) 부교육감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불필요한 제도로 재정의 낭비이다.
- ② 국가공무원으로 자격을 둔 것은 자치권의 침해이다.
- ③ 필요하다면 교원단체의 추천과 교육위원의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
- ④ 교육감의 보좌기능은 현직교원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보조기구로 가능하다

(18)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의 이중적 구조로 인해 교육현장의 재정적 지원이 지연되어 교육활동에 정상적 운영이 늦어지는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보수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관심이 없다
- ② 재정 운영상 부득이한 현상이므로 어쩔 수 없다.
- ③ 예상되었던 의사결정 지연 현상으로 교육재정을 최우선 배정 집행해야 한다.
- ④ 교육자치제의 실시기간이 짧아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므로 곧 개선되리라고 본다

(19) 교육재정의 조달을 위해 지방교육세가 신설된다면 선생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① 바람직한 일이다.
- ② 지방교육세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확대되어야 한다.
- ③ 국세로서의 교육세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교육 양여금을 늘려야 한다.
- ④ 좋은 일이나 稅源의 편중으로 지방간의 격차가 클 것이므로 실효성이 적다

(20) 교육자치제의 실시에 따른 교사의 참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적극 참여해야 한다.
- ② 관심 없는 일이다.
- ③ 교원단체에 일임해야 한다.
- ④ 학생지도에만 전념해야 한다.

(21) 교육자치제의 실시에 따른 교사의 역할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크다.

---- ② 별로 역할이 없다.

(22) 교사의 역할이 매우 크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1번 문항의 1번)을 선택하신 선생님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교육은 전문성이 강조되어야 하므로 전문가인 교사의 역할이 매우 크다.

---- ② 학교자치의 실현과 실천이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첫 단계이기 때문이다.

---- ③ 학교장 중심체제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민주적인 학교운영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 ④ 교육자치는 지역사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제도이므로 교육과정의 구성 등에 교사가 적극 참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23) 교사의 역할이 별로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21번 문항의 2번)을 선택하신 선생님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교사는 교육과정에만 충실하면 되기 때문이다.

---- ② 교육위원회의 기능이 지방자치단체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이다.

---- ③ 현행 교육자치제는 광역자치이므로 그 파급효과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 ④ 기초단위의 교육자치가 실시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교육자치이기 때문이다.

(24) 교사의 역할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는 순서대로 ---- 에 번호를 써 주십시오.

---- ①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지역위주의 탄력적 운영

---- ② 교육문제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참여유도

---- ③ 교무회의의 의결기구화로 학교단위의 자율적 경영 추진

---- ④ 교육위원회의 전문 기구 및 교육감 보조 기구의 참여확대.

---- ⑤ 교육위원회의 의원으로 정책결정에 직접적인 참여기회 확대.

---- ⑥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업무경감과 보수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력

---- ⑦ 교장의 독단적 결정권 배제와 업무 담당자의 의사결정권의 확대.

---- ⑧ 교단중심, 교단우위의 전문적인 학교운영을 통한 자율성의 신장.

(25) 교육자치제의 실시에 따른 주민 참여의 범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학교단위 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한다.

---- ② 기초단위의 학교 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 ③ 기초단위 교육청에 학부모 관련 민원창구를 상설화 해야 한다.

---- ④ 대의기구인 교육위원회가 있으므로 학부모협의체는 불필요하다.

(26) 단위학교 자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단위학교는 하급기관이므로 자치가 필요하지 않다.

---- ② 교육의 최일선이므로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 ③ 교사와 학부모,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27) 교육자치제의 실시에 따른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제도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 ② 교사, 학생, 주민 등 다양한 참여가 이루어 질 것이다.

---- ③ 전망이 매우 밝으며 현행 제도가 빠른 시일내에 정착될 것이다.

---- ④ 빠른 시일내에 기초의회 단위의 교육자치가 실시되어야 한다.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國 文 要 約

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초등교사의 인식과 역할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육행정전공 장 영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교육자치제도에 대하여 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2세 교육에 전념하고 있는 초등교사들의 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인식을 확실히 하고 교사의 역할을 활성화하여 지방화 시대를 대비하고자 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초등교사들의 인식실태와 참여의식, 역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자치제도의 실시에 따른 앞으로의 전망을 통하여 교육자치제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참고자료를 제시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쟁점을 분석의 준거로 하여 조사 파악한다.

1. 교육자치의 실시에 대한 초등교사의 반응
2. 교육자치제의 연수 실태와 방향
3. 교육자치제에 대한 교사의 인식정도
4. 교육자치제의 실시에 따른 교사의 참여
5. 교육자치제의 실시에 따른 교사의 역할
6. 주민참여의 범위

7. 단위학교 자치에 대한 견해

8. 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와 조사연구를 병행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북부 지역의 공.사립 국민학교 교사 380명이다.

설문작성은 한국 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참고 문헌과 관련 논문 그리고 지도 교수의 지도하에 작성하여 제시된 주요 쟁점을 8개 영역 27개 문항으로 분석 검토하여 교사의 의견을 묻고 그 응답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자치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높여야 한다.

초등교사들은 전반적으로 현행 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현장에는 직접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어 교육자치제도에 대한 홍보와 함께 교사들의 인식을 높여 교사 스스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둘째: 교육자치제에 대한 적극적인 연수가 필요하다.

교육현장에서 교육자치에 대한 연수가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교사들의 인식도가 낮다. 그러므로 교사 양성과정에서의 정규 교육과정이나 교원의 재교육시 교육자치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여 교육자치가 정착되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셋째: 교육자치에 교사들의 참여와 역할이 요구된다.

교육자치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교사들이 교육위원 혹은 교육감 선출 등 제도권안에 참여하여 교육현실을 대변하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교육자치는 교육행정의 지방분권과 주민참여의식을 높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세워 교육의 자

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전문성을 갖춘 교사들의 참여는 필요하다 하겠다.

넷째: 단위학교 자치체제의 학교 운영이 요구된다.

교육자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최일선인 학교교육의 개선에 있다고 볼 때 민주적 학교운명을 통한 교단우위의 자율성을 확보하여 공개적인 학교 운영을 통하여 학교내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교사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사회와 밀접한 협력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다섯째: 교사는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매개자로서 역할이 요구된다.

교육자치는 교육행정의 분권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각 지방의 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강구.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의 대의기관인 교육위원회의 활동과 기능에 대한 안내, 홍보와 함께 교육에 대한 주민 청원사항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교사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매개자로서의 역할이 요구된다.

ABSTRACT

A Study on the Perception and Role of the Primary School Teacher in the Educational Autonomy System

Chang, Young
Major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Dept.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Han-S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sure the perception on the educational autonomy system of the primary school teachers who exert the greatest effect on education in relation to the educational autonomy system presently enforced and are preoccupied with educating the second growing children, and to present useful materials by collecting the opinions of the primary school teacher on the actual condition of perception, sense of participation and role in the educational autonomy system in preparation of the age of localization through the activation of the teacher's role and by probing the specific plan for the settlement and development of the educational autonomy system through the future prospec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educational autonomy system. For the purpose of attaining this goal, the following main issues were investigated and grasped as the reference of analysis:

1. The response of the primary school teacher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educational autonomy system.

2. The actual condition and direction of the training of the primary school children on the educational autonomy system.

3. The teacher's degree of awareness on the educational autonomy system.

4. The participation of the primary school children in the educational autonomy system.

5. The role of the teacher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educational autonomy system.

6. The scope of residents' participation in the educational autonomy system.

7. The opinion of the autonomy of the unit school.

8. The future prospect for the educational autonomy system.

Both the literature study and the research study were used simultaneously as the method of study. The object of this study was intended for 380 public and private primary school teachers in Seoul and the northern district of Kyonggi Province.

In drawing up the the questionnaire, reference was made to the literature, papers and the advice of the directing professor relative to the educational autonomy system in Korea.

The main issue was classified into eight domains and 27 items, analyzed and examined. The teachers were asked to tell their opinion, and their responses were analyzed .

The findings of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

Firstly, the awareness of the primary school teacher on educational autonomy should be enhanced.

Since it was revealed that the primary school teachers overall had a very low degree of awareness on the current educational autonomy system and thereby did not exert a direct influence on the educational spot, the teachers should be induced to take active part in the educational autonomy system themselves by upgrading their awareness of it as well as making a campaign of publicity for it.

Secondly, it is necessary to train the primary school teacher actively on the educational autonomy system.

The present situation is that the training of the primary school teacher on education autonomy in the educational spot is very lacking and the degree of their awareness of it is low. Therefore, educational autonomy should be allowed to take root on the educational spot by carrying out the training and education of educational autonomy in regular curriculum in the course of producing teachers and at a time of reeducating teachers.

Thirdly, the involvement and role of the teacher in educational autonomy is required.

The teachers endowed with specialty and technicality. should be provided with an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the institutional zone through their election as educational committee and superintendant and to represent the educational reality and carry out its role in order to present the problem

on the educational autonomy system.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educational policy that fits the regional situation by raising the decentralization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the resident's sense of participation in order to activate educational autonomy.

And it is requisite that the teacher armed with educational expertise should be involved in educational autonomy so as to secure the independency, specialization, and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Fourthly, the school is required to operate as the unit school autonomy system.

Seeing that the realization of the ideology of educational autonomy consists in improving schooling, the front-line of education, the teacher should be induced to participate in educational autonomy so that school technicality may be enhanced through open school operations by securing the prevalent authority of the platform through the democratic operations of the school. And the school authority should maintain a close cooperative system with the community.

Fifthly, it is requisite that the teacher should play a part of the mediator between the school and the community.

Educational autonomy raises the resident's sense of participation in the system through the decentralization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To consider and materialize the educational policy that fit the present situation of each locality, especially to settle the problem such as the

petition matters of residents concerning education along with the guidance and publicity of the activity and function of the education board, the representative body of residents, the teacher is required to play a part of the mediator between the school and the community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 connecting the school with the community.